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 간 인증협력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 . 11 . 25 .

연구책임자 : 이용규 (중앙대학교)

연 구 원 : 임현진 (중앙대학교)

연구보조원 : 이보람 (중앙대학교)

요약문

1. 과제명 :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간 인증협력에 관한 연구
 2. 연구기간 : 2011. 04. 11. - 2011. 11. 25.
 3. 연구책임자 : 이용규 중앙대학교 교수
 4. 계획 대진도

가. 월별 추진내용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제도 발전 방안 마련	이용규								
· 수행 주체기관별 장·단점 비교검토									
· 주요선진국 기기별 인증유형 조사 및 제도 개선 사례조사									
· 국내외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통합 조사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이용규 임현진 이보람								
분기별 수행진도(%)		20	50	30					

나. 세부 과제별 추진사항

1) 아세안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 아세안 국가별 인증 제도를 조사하였음
- 아세안 국가별 MRA 체결 현황을 분석하였음
- 아세안 국가별 ICT 관련 경제지표 조사하였다.

2) 국제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 참여방안 마련

- 독점적 인정기구 체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으로 복수 인정기구체제를 제시하였다.
- 신설 인정기구(KCAS 가칭)의 APLAC과 ILAC 참여 방안에 대처할 노력을 기울였다.

3)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제도 발전방안 마련

- 인증업무수행의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 간 장점과 단점을 비교 검토하였음
- 주요 선진국들의 기기별 인증유형과 제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하였음
- 국내외 인증 및 시험기관 지정 요건과 운영 등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였다

5. 연구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제 원동력은 국제 교역에 있다. 따라서 관세와 기술 장벽을 낮추는데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인증제도 및 MRA 체결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라오스는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캄보디아는 시험제도가 부재하였다. 또한 단지 일부 국가만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수준의 시험·인증제도를 완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의 시험과 인증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 간 협력을 통하여 시험·인증분야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기자재 시장 진출도 용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의 정보통신시장의 규모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나, 대체로 신장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시장의 규모는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국가의 시장규모와 시험·인증제도의 분석을 토대로 인정기구 간 혹은 국가 간 MRA를 체결하여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

2) 우리나라는 KOLA가 독점적 인정기구로 존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정 서비스 시장이 독점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복수 인정기구체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시험기관 인정을 특화한 인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신규 인정기구의 설립을 전제로 하여 이 기구가 국제인정기구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PLAC의 경우에는 직접 서명회원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정회원-서명회원으로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 두 방안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명회원으로 직접 진출하는 방안이 MRA 체결 촉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전파연구원의 내·외부 환경에 맞는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전파연구원이 주체가 되어 특화된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인증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원은 인증업무의 수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준수 측면에서는 정부가 우월하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민간이 우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이후에는 기관 및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5)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험·인증기관 지정조건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제재 규정은 다소

보다 많고, 처벌 강도도 높다. 그러나 지정취소를 받은 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규정이 없어, 시험기관이 지정 취소된 이후 바로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대한 개정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미국, 일본, EU 국가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정시험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시험기관을 지정할 때 관련 규정으로 ISO 17025 등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별로 지정요건은 대동소이하였다. 또한 처벌규정도 대체로 유사하였다. 단지, EU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기구여서 집행위원회가 제재를 직접 내리기 어렵고, 해당 시험기관이 속하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방송통신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국의 시험·인증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현재 인정서비스의 시장의 독점에 따른 문제와 이의 해결책으로 복수 인정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파연구원이 인정기구 설립의 전제가 되는 인증업무의 민간화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최종보고서 초록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제원동력은 국제 교역에 있다. 따라서 관세와 기술 장벽을 낮추는데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인증제도 및 MRA 체결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정 서비스 시장이 독점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복수 인정기구체제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분야를 특화한 인정기구가 설립되는 것을 전제로 이 기구가 국제인정기구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파연구원이 주최가 되어 특화된 인정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원은 인증업무의 수행을 분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률의 준수 측면에서는 정부가 우월하며,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민간이 우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이후에는 기관 및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험·인증기관 지정조건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제재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파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처벌규정이 다른 법률보다 많았으며, 처벌 강도도 높았다. 그러나 재지정 제한 규정이 없어 시험기관이 지정 취소된 이후, 바로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였다.

그리고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지정시험 및 인증기관에 인정조건과 재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시험기관을 지정할 때 기준규정으로 ISO 17025 등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별로 지정요건은 대동소이하였다. 또한 처벌규정도 유사하였다. 아울러, EU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기구여서 집행위원회가 제재를 직접 내리기 어렵고, 해당 시험기관이 속하는 국가기관을 통하여 실질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영문 초록

Our country's economic strength is in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work towards lowering tax and technical barriers. In this perspective, an analysis of the 10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member's current status on MRA was taken. Also, noting that KOLAS is the only accreditation body and so, currently monopolizing the accreditation market. This research seeks to address the agenda of the problems derived from a monopolized market and to suggest the foundation of multiple accreditation bodies as a solution. Additionally, this research suggests the prerequisite establishment of a telecommunications area specialized accreditation body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ccreditation Association as a part of the solution. RRA has to seize certification activity. Thus,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government and civilian body in terms of certification

and civilian accreditation methodology was conducted. As a result, the government bodies were more law observant while civilian bodies were more proficient in efficiency.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the government to consign accreditation to civilian bodies while needing to strengthen post-accreditation management. Further analysis of the related law and legislation in domestic accreditation bodies concluded an overall similarity. Contrarily, restrictive regulations had varying differences in designated terms. Examining radio regulation standards, there were more penalty related laws as well as more intensive penalties. However, there were no restrictions on designated cancellations allowing suspended accreditation bodies to reapply for qualifications. Furthermore, more research on the US, Japan and EU member nations was carried out. In result, most accreditation bodies were appointed to follow the ISO 17025 standards and variance among nations was in overall, near identical. In exception, the EU where being an international union prevented it from directly regulating bodies in which case the jurisdictional nation would directly make practical measures.

색인어	한글	아세안, 인정기구, 민간화
	영문	ASEAN, Accreditation Body, Privatization

SUMMARY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2010년도에는 9천억 달러였으며, 2011년도 1조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컴퓨터와 IT제품의 수출은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등의 소비재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 업종의 교역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방송통신분야 진출확대를 위한 아세안 국가 간 인증협력 방안의 구축이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아세안 국가와의 방송통신 분야의 시험·인증협력 체제 구축방안의 틀을 제공하고, 인정기구 신설을 전제로 국제협력기구인 APLAC, ILAC 등에 전파연구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전파연구원이 인정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부와 민간 간의 장점과 단점을 조사하였다.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세미나 실시, 구체적인 차선을 통하여 해외 전문가진단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아세안 국가로 한정하고 아세안 국가별 인증제도 및 협력방안을 조사하였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정기구인 KOLAS 외에 방송통신분야를 특화 한 인정기구 설립 필요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
- 2) 아세안 국가별 인증제도 분석 및 협력 방안 모색
- 3) 신규 인정기구 KCAS(가칭)의 설립을 전제로, 이 기구의 국제인정 기구인 APLAC과 ILAC에 참여 및 입지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 4)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증체계의 민간화방안
- 5) 인정이나 지정요건과 이를 해당 기관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해지는 행정처벌규정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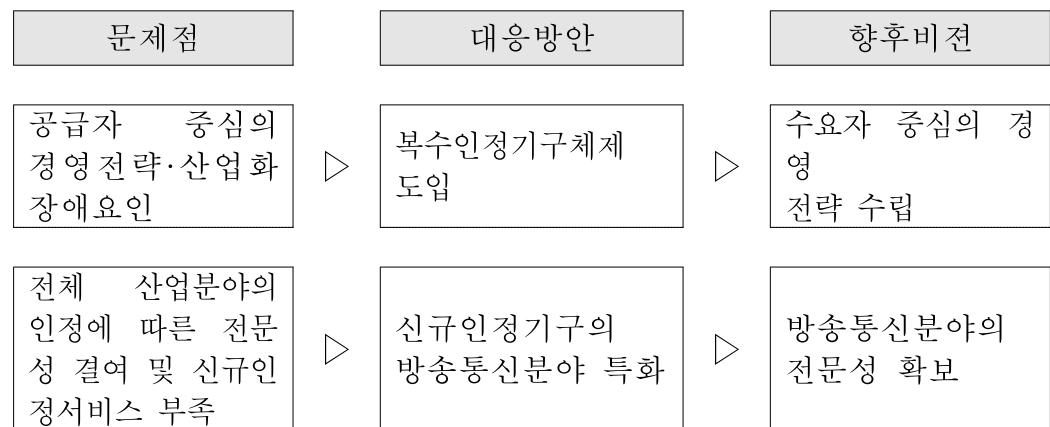
제 2 장 우리나라 인정기구체제의 향후 발전방안

1. 인정기구체제의 현황

우리나라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기구인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가 현재 단독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구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개발 및 지원, 교정 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 독점적 인정기구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우리나라 인정시장이 독점되어 나타나는 문제점, 대응방안 그리고 적합한 대응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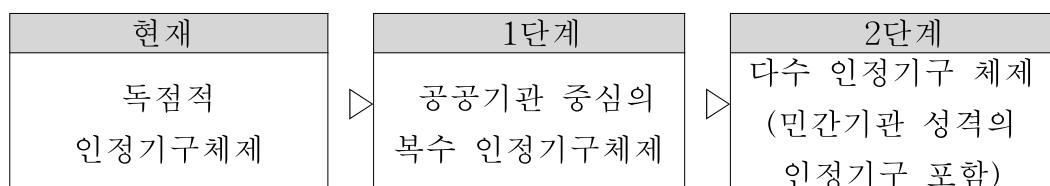


3. 인정기구체제의 발전방안

가. 인정기구체제의 발전단계

인정 서비스 시장의 시장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인정기구체제의 발전단계



나. 복수 인정기구체제의 도입에 대한 법적 가능성 분석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표준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

인정기구체계의 도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민간인정기구의 출현도 가능하다. 다만, 신설되는 인정기구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시행령 16조의 ‘기술표준원’으로 언급된 규정을 ‘기술표준원 등’으로 개정하여 복수의 인정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사항

근거법	현재	개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u>기술표준원</u> 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등’…

4. 국제인정기구 참여 현황과 확대의 필요성

가. 국제인정기구 참여현황

(1) 국제인정기구 한국 참여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즉, 부처별로 담당 업무분야의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있거나 다른 기관에게 위임하여 지정하고 있다. 한편, 인정기관 관련 국제기구에는 ILAC과 APLAC 등이 있다. 2011년 현재 ILAC에는 KOLAS만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APLAC의 경우 KOLAS만이 MRA 서명회원(Full and Signatory APLAC MRA)으로 가입되어 있고, 전파연구원과 한국계량 측정협회, 한국과학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 외국의 국제인정기구 참여현황

외국의 경우 국가에 따라 국제기구 가입 기관의 숫자가 상이하다. 현재 일부 국가는 ILAC과 APLAC에 단일 인정기관만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부분은 복수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인정시장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도

나. 국제인정기구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복수인정기구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인정기구들은 국내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 복수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에서 함께 활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얻어지는 혜택으로는 국제기구에서의 위상 제고, 외국 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촉진, 새로운 인정기관의 경쟁력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복수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적다.

제 3 장 국제 인정기구 참여방안

1. 국제 인정기구협의체에 대한 개관

2011년 현재 APLAC MRA에는 24개국 36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ILAC MRA에는 58개국 71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 성적서를 상호수용하고 있다. ILAC은 지역별로 APLAC, EA 등 5개의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를 지역별로는 APLAC에 속하여 있다.

2. 국제인정기구 참여 현황

가. ILAC 현황

(1) 조직구조

국제시험소인정기구인 ILAC은 다양한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기구로 유럽인정기구협력체인 EA(European Accreditation)와, 아시아·태평양시험소인정협력체인 APLAC, 남아프리카개발인정기구협력체인 SADCA(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Cooperation) 등 지역협력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2) 회원의 종류

ILAC의 회원은 규정에 따라 서명국인 정회원(Full Members)과 서명 전 인정기관 단체인 준회원(Associate Members), 그리고 인정기관 전 단체인 협력회원(Affiliates), 관련기관(Stakeholders)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회원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가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상이한 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나. APLAC 현황

(1) 조직구조

APLAC은 ILAC의 지역 조직체로서 1992년에 포럼의 형태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을 인정해주는 기관들의 단체이다. 하부 조직으로는 교육위원회, 기술 위원회, 숙련도 시험위원회, 홍보위원회, 인사위원회가 있다.

(2) 회원의 종류 및 가입절차

APLAC의 회원은 MRA 서명회원(Full and Signatory to APLAC MRA)과 정회원(Full)·준회원(Associate)으로 나누어진다. APLAC 서명회원 가입은 APLAC MR001(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입을 위해 APLAC 가입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APLAC 사무국에서는 평가반을 구성하고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신청기관이 미흡한 점을 개선한 이후 본 평가를 실시한다. APLAC 상호인정 이사회의 결정 후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된다.

3. 국제인정기구협회에서의 입지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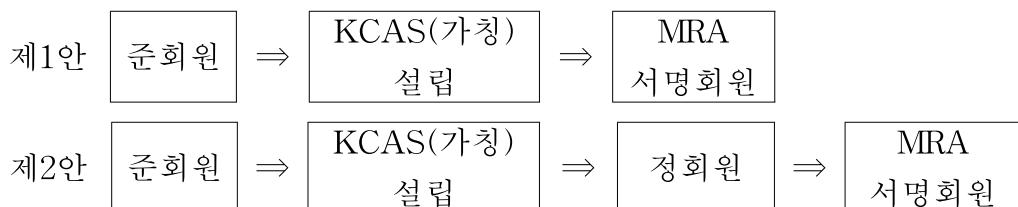
가. ILAC 정회원화 방안

전파연구원(RRA)은 APLAC에만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ILAC에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회원가입 절차는 준회원이나 협력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회원이 될 수도 있으나 준회원 또는 협력회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회원 입회신청도 가능하다. 따라서 전파연구원은 일정조건을 충족하여 준회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정회원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파연구원은 우선적으로 인정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전파연구원이 새로운 인정기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를 분리하여야 한다.

나. APLAC 정회원 혹은 MRA 서명회원 진출방안

최종 MRA 회원 가입방안은 첫째, 현재 준회원이므로 KCAS(가칭)을 설립하고 곧 바로 MRA 서명회원이 되는 방안과 둘째, 준회원이므로 다음 단계에는 정회원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MRA 서명회원이 되는 순차적 MRA 서명회원 진출방안이 있을 수 있다.

APLAC 단계별 진출방안



다. 국제기구 참여 인력 양성과 활동 확대방안

- (1) 국제기구 참여 인력풀 구성
- (2) 전파연구원 소속 직원의 국제기구 보직 진출 확대
- (3) 아세안 국가간 협력 인프라 구축

제 4 장 아세안 국가별 인증제도 분석

	ICT 지표	시험·인증제도 유무		MRA
브루나이	이동통신 이용률 106% (2010)	시험제도	O	* APEC TEL MRA 1단계 (03.12.)
	인터넷 이용률 12% (2010)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0.2% (2006)	인증제도	O	* 싱가포르와 MRA 체결(04. 5.)
	ICT 상품 수입 비중 6.6% (2006)			
캄보디아	이동통신 이용률 73% (2010)	시험제도	X	* ATRC
	인터넷 이용률 1.4% (2010)			* MRA 체결 없음
	ICT 상품 수출 비중 0.1% (2008)	인증제도	O	
	ICT 상품 수입 비중 4.0% (2008)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이용률 69.3% (2009)	시험제도	O	* APEC TEL MRA 1단계 (03.12.)
	인터넷 이용률 17.3% (2009)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5.7% (2009)	인증제도	O	* 싱가포르와 MRA 체결 (04.4)
	ICT 상품 수입 비중 9.7% (2009)			
라오스	이동통신 이용률 53% (2009)	시험제도	X	* ATRC * MRA 체결 없음
	인터넷 이용률 4.9% (2009)	인증제도	X	
	ICT 상품 수출 비중 N/A			

	ICT 지표	시험·인증제도 유무		MRA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이용률 110%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 (06)
	인터넷 이용률 56.6% (2009)	인증제도	0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38% (2009)			* 싱가포르와 MRA 체결(05.1)
	ICT 상품 수입 비중 32% (2009)			
미얀마	이동통신 이용률 1% (2009)	시험제도	0	
	인터넷 이용률 0.2% (2009)	(시험시설 X)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N/A	인증제도	0	* MRA 체결 없음
	ICT 상품 수입 비중 N/A			
필리핀	이동통신 이용률 81%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05) 2단계(06)
	인터넷 이용률 6.5% (2009)	인증제도	0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54% (2009)			* MRA 체결 없음
	ICT 상품 수입 비중 35% (2009)			
싱가포르	이동통신 이용률 140%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 :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99.7)
	인터넷 이용률 73.3% (2009)	인증제도	0	* MRA 2단계 : 일본(02.1) 미국(03.10)
	ICT 상품 수출 비중 35% (2009)			* ATRC
	ICT 상품 수입 비중 28% (2009)			* 인도네시아(04.4), 브루나이(04.5), 말레이시아(05.1)
태국	이동통신 이용률 122%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06)
	인터넷 이용률 25.5% (2009)	인증제도	0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20% (2009)			* MRA 체결 없음
	ICT 상품 수입 비중 18% (2009)			
베트남	이동통신 이용률 100%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인터넷 이용률 27.9% (2009)	인증제도	0	1단계 미국, 한국(05.5)
	ICT 상품 수출 비중 3.8% (2008)			
	ICT 상품 수입 비중 7.1% (2008)			

제 5 장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1. 시험·인증업무 수행 주체기관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

1) 시험·인증업무의 특성 및 현황분석

시험·인증의뢰자는 제품의 조기출시 가능여부 및 소요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험·인증기관을 선정한다. 그러므로 민간 시험·인증기관은 끝임 없이 조직 내외부로부터 최저 수준의 규정준수 유혹과 압력을 받게 되며, 결국에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험·인증시장에서 시험기관이 피 시험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 (captured phenomena)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시험·인증시장에서 시험·인증기관 간 경쟁이 격화될수록 시험·인증기관의 포획현상은 만연되어, 시험·인증기관 간 ‘최저 엄격성 추구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간혹 부적절한 제품이 시장이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제품은 사용자의 안전, 건강, 생명 등을 해치게 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시험·인증시장에서 과다 경쟁과 최저 엄격성 추구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진입규제와 사후관리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2) 시험·인증업무의 민간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시험·인증업무가 민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 지향이론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시험·인증분야에서도 설득력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국가 혹은 인정기구 간 MRA 등 새로운 국제 시험·인증환경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현재 시험·인증분야에서 정부가 담당하고 역할을 재조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셋째,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신기술과 신제품의 수명주기가 과거보다 단축화되었기 때문에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 기관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을 갖어야 한다. 따라서 시험·인증기관은 민간화되는 경향에 맞춰 적합성 평가 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을 갖어야 한다.

장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공공부문은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신속히 시험·인증을 끝내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게는 비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3) 공공서비스 민간화의 내용과 방법

민간화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사무 민간화와 재산 민간화로, 정도에 따라 완전 민간화와 부분 민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와 같이 4개의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분 류		정 도	
		완 전	부 分
대 상	사 무	민간이양	민간위탁
	재 산	민유화	민영화

강제 인증제도분야에서 시험·인증업무의 민간화는 근본적으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파법 58조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험·인증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의 집행 일부 혹은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인증제도의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남아 있다.

4) 민간화의 효용성·문제점 및 성공조건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를 민간화하면, 국가차원에서 인증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민간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인증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전파연구원도 핵심 업무에 인적

첫째, 인증비용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둘째, 사기업이 인증을 담당하게 되면, 인증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인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

셋째, 관련 법률에 국가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인증의 경우, 국가가 원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이를民間에게 위탁한 이후에 인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간화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① 적정 경쟁 체제 유지
- ② 통제 수단의 확보
- ③ 국민의 만족도 증진

5)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수행 주체 간 장·단점 비교분석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수행 주체는 정부 혹은 사기업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수행주체로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상이하다. 여기에서는 행정과 경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설을 토대로 정부나 사기업이 시험업무 수행주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마케팅 단계, 인증업무 집행단계 그리고 자료해석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수행 주체 간 장점과 단점 분석

유형 단계	정부	사기업
마케팅단계	비용전무	비용발생
집행단계	법률준수	법규 및 이익고려
판정단계	엄격한 기준 적용	기준의 유연한 적용

6)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간 위탁방안

식의 결정, 수임 기관의 선정·통제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기능 진단, 기능수행에 대한 사후적인 실태 점검 및 시험기관 등과 같은 연관 기관과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사업무를 밀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전담부서가 직접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간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수탁기관 선정 조직형태에 따른 장단점

	전담부서	위원회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정업무가 신속하게 완결될 가능성이 높음-수탁기관의 수 및 선정기준에 대한 조속한 합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가능-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용이 비교적 용이함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정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선정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수탁기관의 수 및 선정기준에 대한 조속한 합의가 어려움

민간위탁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크게는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방식 중 반드시 하나를 택일하여 선정할 필요성도 없다. 즉, 두 방식을 혼합하여 선정할 수도 있다. 인증업무의 민간화는 직접 순수민간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과 단계적 위탁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위탁가능 기관별 장점과 단점을 예시한 것이다.

위탁 대상기관에 따른 장단점

	현재 시험·인증업무 수행기관	현재 시험업무수행 영리기관	현재 시험업무수행 비영리기관	신설법인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적된 노하우 활용가능 - 인증업무 수행 능력 검증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분야 시험 업무 수행 경험 - 수행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분야 시험업무수행 경험 - 효율성과 준법성 양립추구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분야 인증경험 축적 - 효율성과 준법성 양립추구경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제한적 경험과 노하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 수행 능력 검증 필요 - 효율성 추구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업무 수행 능력 검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신규 투자필요

제 6 장 국내외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관한 동향 조사

1. 국내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대한 동향 조사

1) 법정의무인증제도 개관

법정의무인증제도는 관련 부처별로 운영하는 적합성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법령에서 법정의무 인증제도는 KOLAS 수용 타 입법례와 KOLAS 미수용 타 입법례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KOLAS 미수용 타 입법례라는 것은 KOLAS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도 지정시험 기관 및 검사기관으로 규정된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안전, 품질, 환경, 보건이라는 큰 4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각 주제와 관련이 있는 대상 분야에 대한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법령에 제시된 규정을 살펴보았다. 법률에 따라 시험·인증제도와 관련하

재재 요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법률도 있었고, 몇 개의 조문으로 포괄적으로 서술한 법률도 있었다.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개관은 법정의무 인증제도 현황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해놓은 것과 별책 규정집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2)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규정 현황 분석

법정의무 인증제도는 법령에서 시험·인증 관련 내용이 지정요건과 제재요건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지정요건은 인증 관련 시험·검사에 대한 내용이며, 제재요건은 인증 관련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처벌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이 하위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시·도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장이다.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 혹은 담당 해당 부서의장을 처벌의 주체로 하고 있으며, 일부 법률에서만 하위 지방 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처벌유형은 00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과 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으로 구분된다. 지정기관을 취소하는 조항은 제재요건 중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을 다른 법과 비교해보았을 때, 처벌유형의 강도가 높으나, 재지정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재지정 제한 기간을 명시해둔 법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 받은 직후 바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파법에서 재지정 제한

3. 해외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대한 동향조사

가. 미국

(1) 시험 기관 지정관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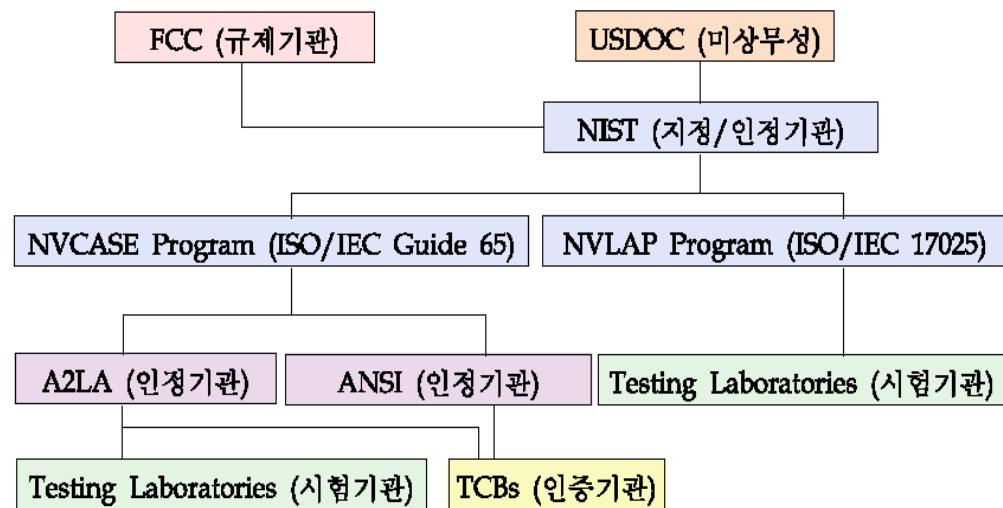
미국의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FCC의 4가지 인증제도인 Verification, SDoC, DoC 및 Certification 등에 따라 상이하다. FCC의 시험기관 지정절차는 Part 2 Section 2.948 및 MRA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FCC에 자국의 시험소를 등록한 나라는 29개이며, 시험기관은 610개에 달한다.

(2) 지정제도

미국의 시험기관 지정제도는 시험기관 지정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이를 재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인증종류	지정 절차
Verification/Certification	Section 2.948에 따른 서류를 FCC의 OET에 제출/검토 후 인정
DoC	미국역내의 시험소의 경우, A2LA 또는 NVLAP에 따라 ISO 17025에 근거하여 지정 역외의 경우 상대국간의 MRA Phase I단계 및 상대국 승인 기관의 규정에 따라 ISO 17025에 근거하여 지정
TCB	미국역내의 경우에는 NIST로부터 NVCASE Program에 따라 A2LA 또는 ANSI로부터 ISO/IEC Guide 65에 따라 지정됨 역외의 경우 MRA Phase II 단계 및 상대국 승인기관의 규정에 따라 ISO/IEC Guide 65에 근거하여 지정
비고. MRA Phase II를 진행하기 위해선 ISO/IEC Guide 65에 따른 별도의 조직이 필요함.	

미국의 시험·인증기관 지정 제도는 MRA 협정 여부에 따라 국내 및 국외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공히 국제규격인 ISO 17025 와 IEC/ISO Guide 65를 준용하고 있다. 인정 관련 기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시험기관 지정 기관별 요건과 재제 조치

(가) NVLAP

① 인정 요건

NVLAP 프로그램은 NIST handbook 150에 의해 인정되며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핸드북 부록 C 참조)

② 운영 지침 위반 시 실질적 제재 조치

NVLAP 매뉴얼 3.11 항에서는 인증의 무효와 소멸에 대해서 다룬다.

(나) NVCASE(National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 Systems Evaluation)

기 위한 규칙에 대한 가이드를 담고 있으며, 아울러 인정기관이 심사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① 인정기관의 자격 요건

시험기관/인증기관/관리감독기관을 임명하는 인정기관은 NVCASE 부록에 나와 있는 인정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② 시험기관의 인정 기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 기관은 ISO/IEC 17025:1999,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or its replacement)을 완벽히 만족시켜야 한다.

③ 후보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후보 인증기관(TCB)은 ISO/IEC Guide 65 -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or its replacement)을 완벽히 만족시켜야 한다.

④ NVCASE 프로그램의 정지 및 취소

NVCASE는 프로그램에 의해 인정받은 시험·인증기관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NVCASE Handbook에 나온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EU

(1) 지정제도 및 현황

EU 각국 정부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Notifying Authority)을 지정하며, 이 인정기관(Notifying Body)이 각개의 인증기관(NB, Notified Body)을 지정한다. 각 EU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지침은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이와 같은 절차 속에서 상호 협력을 위해 인정기관협회(EA :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및 시험기관협회(EUROLAB)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인정기관의 인정

(가) 인정기관의 인정 기준

EU 회원국이 인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유럽공동체에서 2000년에 발행한 “접근방식 및 총괄적 접근방식을 근거로 한 지침의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각국 지침에 기재된 역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구 분	인증기관/기구	시험 기관	검사 기관
인가 기관 기준	EN 45010 EN 45003	EN 45002 EN 45003	EN 45010
인가 및 평가 기준	EN 45010	EN 45002	EN 45010
운영 기준	EN 45011 EN 45012 EN 45013	EN 45001	EN 45004

공인 기관의 역량을 평가를 위한 필수적 규격으로는 EN 45001, 45004, EN 45011 및 EN 45012가 있다.

모듈	해당 EN 45000 규격
Aa1, Aa2	EN 45001(+적합성 평가 및 결정 능력) 또는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B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Cbis1, Cbis2	EN 45001(+적합성 평가 및 결정 능력) 또는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D, Dbis	EN 45012(+지식 관련 제품)
E, Ebis	EN 45012(+지식 관련 제품)
F, Fbis	EN 45001(+적합성 평가 및 결정 능력) 또는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H	EN 45012(+지식 관련 제품)
Hbis	EN 45012 + EN 45004 또는 EN 45011

EN 45000 시리즈에 대한 적합성의 증명은 단지 시리즈에 명시된 지침만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완벽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나) 인정기관의 공인 절차 및 공인 취하

① 공인 절차

회원국은 지침이 채택된 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특정 기관을 공인할 수 있다. 증명서가 지침이 최초로 적용되는 일자로부터 부여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유예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기관은 지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취하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은 각국의 공인 기관의 역량에 관한 불신이 제기될 때 공인 시나 그 이후에 공인의 취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집행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 공인된 기관이 요건이나 그 의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공동체 조약 제227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③ 공인 기관 및 적합성 평가

공인 기관은 필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요건이 해당 지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일관성 있게 기술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

(3) 영국의 인증제도

UKAS 문서 "P16 Assessment of approved and notified body"에 NB의 평가와 인정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다.

(가) 소개

영국에서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써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UKAS를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 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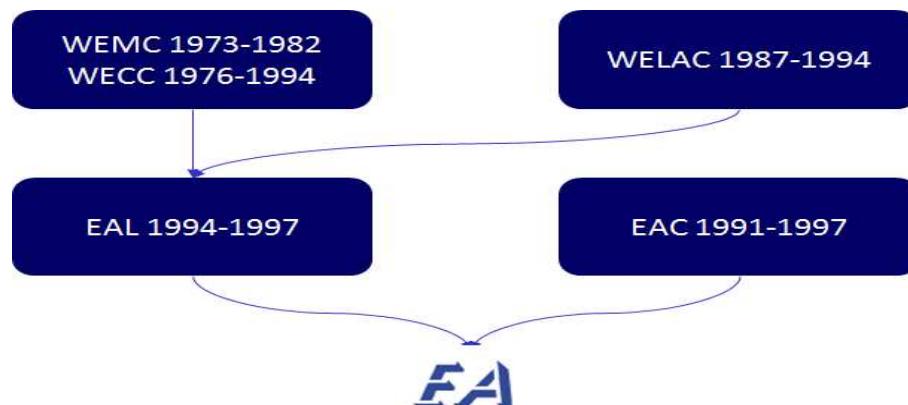
UKAS는 기관에 대한 평가 시 영국 법률 또는 Competent Authority에서 발행한 지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이 판정기준들은 대부분 ISO17000시리즈에 기반한 EN45000 시리즈에 서술되어 있다.

(다) 신청과 평가

UKAS가 지정평가 신청을 받게 되면 UKAS는 신청기관이 관련기준과 정해진 요구사항을 준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종합하여 Competent Authority에 지정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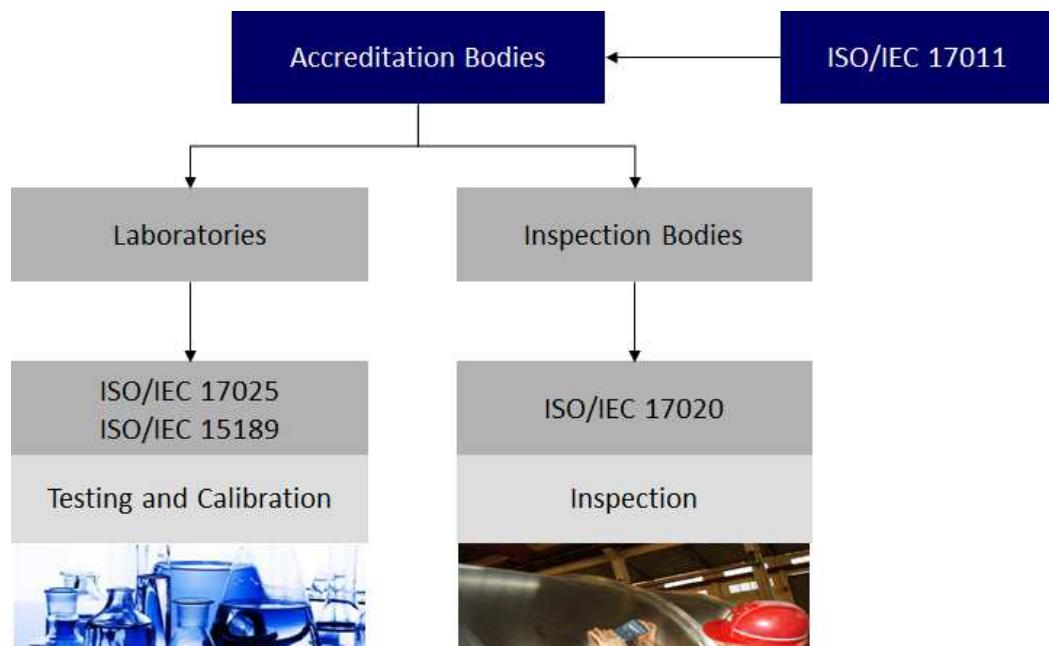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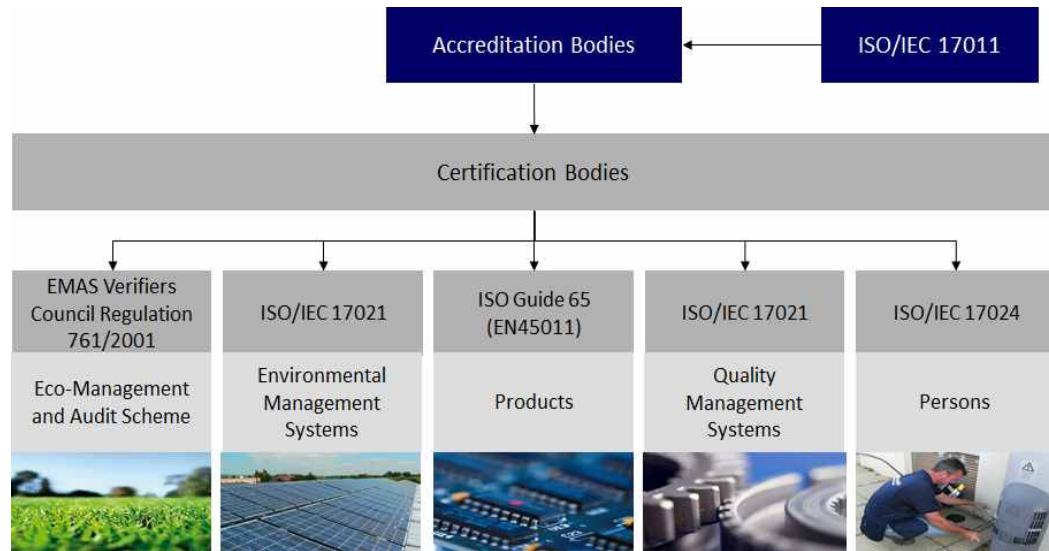
(4) 인정기관 연합(EA :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가) 소개



EA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전신 조직들은 위와 같다. EU 33개

(나) EA에서 지정하는 인증 표준



(다) 회원국 현황

EA는 MRA를 통해 인정 및 인증제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주요 회원국이다.

(5) EUROLAB

(가) 소개

유로랩은 비영리 민간 법인으로써 유럽표준협회(CEN)의 가입국의 시험기관 간 협력과 연구방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가입 조건은 CEN 회원국이면 가능하며 각 국의 한 개 이상의 NB가 이에 참여한다.

(나) 목적

국제 비영리 단체로써 시험기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험방법 연구 및 시험기관의 독립적인 국제적 지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다) 업무

- 측정, 시험, 분석 분야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
- 시험기관의 홍보 및 협력 연구를 촉진. 그리고 과학적 시험 방법에 대한 긴밀한 관련 프로그램 연구
- EN 표준의 개발 및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검사 방법의 개발 및 해석을 위한 협력
- 실험실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유도

(라) 회원 자격

① 정회원 / Associated members

EU 또는 EFTA 회원국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국가의 측정 및 시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원국 법률에 적합하게 설립된 법인은 회원 신청의 자격이 있다.

② 국제 제휴사

측정 및 시험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써 법인이 설립

(마) 입회 절차

회원 자격이 있는 법인이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 정회원의 2/3 찬성을 통해 입회를 승인한다.

(바)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회원이 회원으로써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EUROLAB의 결속을 저해하려는 행동을 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다.

(사) 제명 절차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제명 대상국에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일본

(1) 인정 및 인증제도 현황

일본의 인증제도는 크게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과 제조자 자기적 합선언이 있다.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 인증의 종류로는 JATE, PSE 등이 있고,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에는 기술기준 적합 자기확인제도(SDoC)와 단체 자율인증제도(VCCI)가 있다.

이 모든 규제 및 시험기관의 지정은 경제산업성(METI)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 또한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고 있다.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의 인증기관은 주로 JATE, TELEC, DSPR, Chemitox, JARD 및 TÜV가 있으며,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의 단체 자율 인증제도로 VCCI가 인증기관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에도 크게 기술기준 적합인정과 기술기준 적합증명이 있다. 기술기준 적합인정에는 유선통신기기가, 기술기준 적합증명에는 무선통신기기가 해당된다. 시험기관도 각각 인정시험사업자와 인정점검 사업자로 나뉘어 심사가 되게 된다.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도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시행된다. 하나는 SDoC로 제조자가 직접 자체 또는 외부시험소를 통해서 시험을 시행하고 이

(2) 인정제도 현황

(가) 개관

일본은 위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시험기관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3개 기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 인정기준은 대체로 ISO/IEC 17025를 따르고 있다.

인정제도	인정기준
VLAC	ISO/IEC 17025
JAB	ISO/IEC 17025
IAJapan	ISO/IEC 17025

(나) VLAC

① 개요

VLAC의 설립에 의해 VCCI의 측정 설비 등록제도로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ISO/IEC 17025에 근거해 전자 환경 시험소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주요 업무

사업 내용으로는 국제기준에 근거한 EMC 시험소의 인정, EMC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EMC에 관한 기술·관리 교육, EMC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출판 및 EMC 측정 설비의 심사·등록 사업의 수탁 등이 있다.

③ 인정 요건

- 인정대상 : 단일의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시험장 및 측정설비
- 서류심사 : 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류 심사
- 현지심사 : 품질 메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 상황 및 측정 설비를 포함한 시험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
- 이전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하여 심사·인정

EN55022/EN55024/FCC47/CFR Part15/Part18 등을 적용

④ 관리제도

VLAC의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에 1회씩 갱신하여야 한다. 사후 관리는 인증서 발급 후 1년부터 관리하기 시작하며, 작성한 문서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VLAC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시험소가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시험소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 시험소가 더 이상 가이드 2-1 “측정 시설 관리 지침”을 더 이상 이행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다) JAB

① 개요

일본의 적합성 평가 인증위원회 (JAB)는 민간 비영리 단체이며, 일본 유일하게 적합성평가제도 산하의 모든 인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② 주요업무

JAB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소인정은 ‘시험소’, ‘교정기관’, ‘임상검사실’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인정업무를 수행한다.

구분	세부사항
시험소	전기시험
	기계 · 물리시험
	화학시험
	복합시험
	선박시험
교정기관	전자기량(직류/저주파)
	전자기량(라디오주파/마이크로파)
	기하학량

③ 인정요건

- 인정대상 : 단일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복수시험장(사이트) 및 측정 설비 등
- 서류심사 : 신청서의 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류 심사
- 현지심사 : 품질 메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 상황 및 측정 설비를 포함한 시험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
-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해 심사·인정

④ 관리제도

인정기관(JAB 등)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 즉 JIS Z 9361 (ISO/IEC 안내서 61), "인증/등록기관의 평가 및 인정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은 인정기관이 인정 정지에 대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JAB는 인정 정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인정의 정지 : 인정과 관련된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JAB에서는 '인정 위원회'로 언급되어 있음)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인정 상태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정지의 원인이 해소되고 인정위원회의 회복 승인이 확정된 때에 인정 상태를 회복한다."
- JAB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인정의 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인정 상태에 대한 주장과 인정 마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지만, 활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인증/등록 기관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 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JAB R/T/C/CP213-2001 11.1)

- JAB 인정 절차에 명시된 감독, 개선 평가 또는 재평가 기간 중 JAB의 인정 기준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그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JAB에 대하여 고지/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거짓으로 고지 또는 보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JAB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절, 방해, 기피한 경우 또는 JAB 규정에 기초한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거짓 진

(라) IAJapan

① 개요

일본 인터넷 협회(IAJapan : Internet Association Japan)는 비영리 단체로 일본 전자 네트워크 컨소시엄의 통합에 의해 2001년 4월 1일 설립되었다.

② 주요업무

- 인터넷 최신 기술 및 최신 동향에 관한 각종 세미나 개최
-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등급 시스템의 구축 운용
- 각종 부회 활동으로 인재 육성
- 인터넷 관련 기술의 개발과 실증
- 인터넷 관련 기술의 표준화 추진
- 네트워크 음악 저작권 협의회(NMRC : Network Music Rights Conference)
- 인터넷 핫라인연락 협의회(IHJ : Internet Hotlines in Japan)의 사무국 업무
- W3C, IETF, ISOCICANN, ICRA, APIA, APNG 등의 국제 조직과의 협동

③ 인정요건

- 인정대상 : 단일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복수시험장(사이트) 및 측정 설비 등
- 서류심사 : 신청서의 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충점적으로 서류 심사
- 현지심사 : 품질 매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 상황 및 측정 설비를 포함한 시험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
-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해 심사·인정

④ 관리제도

IAJapn중 JNLA는 자체 기술 문서를 통해 2년에 1회 정기 심사를 진행한다. 또 등록은 4년간 유효하며, 4년 후에는 재심사를 통해 인정을 연장하여야 한다.

목 차

표 목 차	43
그림목차	48
제 1 장 서 론	4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53
제 2 장 우리나라 인정기구체제의 향후 발전방안	55
제 1 절 인정기구체제의 현황	55
제 2 절 독점적 인정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57
제 3 절 국제인정기구 참여 현황과 확대의 필요성	63
제 3 장 국제인정기구 참여방안	77
제 1 절 국제인정기구협의체에 대한 개관	77
제 2 절 국제인정기구 참여 현황	79
제 3 절 국제인정기구협회에서의 입지강화방안	95
제 4 장 아세안 국가별 인증제도 분석	107

제 3 절 인도네시아	126
제 4 절 라오스	139
제 5 절 말레이시아	147
제 6 절 미얀마	164
제 7 절 필리핀	172
제 8 절 싱가포르	185
제 9 절 태국	202
제 10절 베트남	214
제 11절 아세안 국가의 인증제도 등의 비교	227

제 5 장 방송통신분야에서의 시험·인증업무 수행

주체기관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	229
제 1 절 시험·인증업무의 특성 및 현황분석	229
제 2 절 시험·인증업무의 민간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233
제 3 절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내용과 방법	236
제 4 절 민간화의 효용성·문제점 및 성공조건	241
제 5 절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수행 주체 간 업무특성 분석	245
제 6 절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간 위탁방안	248

제 6 장 국내외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관한 동향 조사

제 1 절 국내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253
---------------------------------------	-----

제 2 절 해외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관한 동향조사 272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307

참고문헌 310

부록 1 국내 지정시험기관 지정요건 및 제재규정 313

부록 2 해외 지정시험기관 지정요건 및 제재규정 451

표 목 차

표 1-1 IT 무역수지	50
표 1-2 주요 국가별 IT 수지 실적	51
표 1-3 연구의 절차표	54
표 2-1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	55
표 2-2 KOLAS의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현황	57
표 2-3 문제점 및 대응방안	60
표 2-4 복수인정기구체제 국가의 경제 규모	61
표 2-5 인정기구체제의 발전단계	61
표 2-6 복수인정기구 법적근거조항	62
표 2-7 국제인정기구 한국가입기구 현황	63
표 2-8 일본의 ILAC 및 APLAC 가입현황	65
표 2-9 APLAC 복수인정기구 채택국가표	72
표 3-1 ILAC의 발전 연혁	78
표 3-2 지역별 국제인정기구현황	79
표 3-3 ILAC 회원별 자격요건	81
표 3-4 ILAC 가입국 현황	82
표 3-5 APLAC 회원 유형별 자격요건	90
표 3-6 APLAC 서명회원 가입절차	91
표 3-7 APLAC 가입국 현황	94
표 3-8 ILAC 정회원 등록 인정기구 수	96
표 3-9 ILAC 복수인정기구 핵심규정(2011)	96

표 3-11 정회원 전환 입증사항 및 첨부서류	100
표 3-12 전파연구원 관련 법 조문.....	101
표 3-13 전파법에서의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04
표 3-14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04
표 3-15 아세안 국가별 국제기구 가입현황	105
표 4-1 브루나이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110
표 4-2 브루나이 유선전화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111
표 4-3 브루나이 인터넷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111
표 4-4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11
표 4-5 한국의 對 브루나이 IT제품 수출입 현황	111
표 4-6 캄보디아 방송통신 주요 지표	119
표 4-7 캄보디아 인터넷, DSL 가입자 증가 추이	121
표 4-8 캄보디아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121
표 4-9 캄보디아 유선전화 가입자 수 추이	122
표 4-10 캄보디아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24
표 4-11 한국의 對 캄보디아 IT제품 수출입 현황	124
표 4-12 인도네시아 방송통신 주요 지표	129
표 4-13 인도네시아 유무선 현황	129
표 4-14 인도네시아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36
표 4-15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IT 제품 수출입 현황	136
표 4-16 對 라오스 교역 현황	142
표 4-17 라오스 통신시장 일반 현황	142
표 4-18 라오스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46

표 4-21 말레이시아 방송통신 주요 지표.....	150
표 4-22 말레이시아 디지털 방송전환 추진 계획	154
표 4-23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155
표 4-24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 기술 비중(2009년).....	155
표 4-25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156
표 4-26 말레이시아의 3G 가입자 수 추이	157
표 4-27 말레이시아 유선전화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158
표 4-28 말레이시아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58
표 4-29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IT제품 수출입 현황.....	158
표 4-30 미얀마 주요 통신 지표(2010).....	167
표 4-31 미얀마 모바일 발급 현황.....	167
표 4-32 미얀마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69
표 4-33 한국의 對 미얀마 IT제품 수출입 현황.....	170
표 4-34 필리핀 방송통신 주요 지표	174
표 4-35 필리핀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80
표 4-36 한국의 對 필리핀 IT제품 수출입 현황.....	180
표 4-37 싱가포르 방송통신 주요 지표	187
표 4-38 싱가포르 기술방식별 유선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추이.....	191
표 4-39 싱가포르 ICT 상품 수출입 현황.....	192

표 4-42 ICT 상품 수출입 현황	209
표 4-43 한국의 對 태국 IT제품 수출입 현황	210
표 4-44 베트남 방송통신 주요 지표	216
표 4-45 베트남 ICT 상품 수출입 현황	223
표 4-46 한국의 對 베트남 IT제품 수출입 현황	223
표 4-47 아세안 국가의 인증제도 등의 비교	227
표 5-1 민간화의 유형	237
표 5-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민간위탁의 예	238
표 5-3 민간화 방법 유형	241
표 5-4 업무단계별 수행주체 간 차이점	247
표 5-5 수탁기관선정 조직 형태에 따른 장단점	248
표 5-6 위탁대상기관에 따른 장단점	251
표 6-1 법정의무 인증제도 현황	255
표 6-2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주체에 따른 처벌규정 현황	268
표 6-3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유형에 따른 처벌규정 현황 1	269
표 6-4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유형에 따른 처벌규정 현황 2	270
표 6-5 법정의무 인증제도 재지정 제한 조건 따른 처벌규정 현황	271
표 6-6 미국의 Verification	272
표 6-7 미국의 DoC	272

표 6-10 Section 2.948에 따라 등록된 시험소	274
표 6-11 MRA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274
표 6-12 시험기관 지정제도	275
표 6-13 미국과 MRA 추진 국가 및 기관	277
표 6-14 FCC에 등록된 유럽의 각 국가별 Authority	277
표 6-15 미국과 MRA Phase II를 추진한 국가의 TCB 현황 ·	278
표 6-16 Notified Body와 관련된 EN 45000 규격 시리즈	285
표 6-17 모듈 별 EN 45000 시리즈의 관련 규격	286
표 6-18 일본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 비교	297
표 6-19 일본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비교	298
표 6-20 일본 IT관련 시험소 인정기구별 특징	299
표 6-21 JAB의 시험소인정 범위	303

그 림 목 차

그림 1-1 국내 가구의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복수응답).....	50
그림 3-1 ILAC 지역조직 구조도	80
그림 3-2 APLAC 조직구조도	87
그림 3-4 APLAC 정회원/ MRA 서명회원 진출방안	98
그림 6-1 시험기관 지정제도 관련기관	276
그림 6-2 EU 집행위원회 구조도	284
그림 6-3 인정기관 연합 개요	292
그림 6-4 EA에서 지정하는 인증 표준	293
그림 6-5 MRA 협약에 서명한 국가 현황	294
그림 6-6 일본의 인증제도	296
그림 6-7 VLAC의 인정 절차	301
그림 6-8 VLAC의 관리제도	301
그림 6-9 JAB의 지정 절차	303
그림 6-10 IAJapan의 지정 절차	306
그림 6-11 JNLA의 관리제도	307

제 1 장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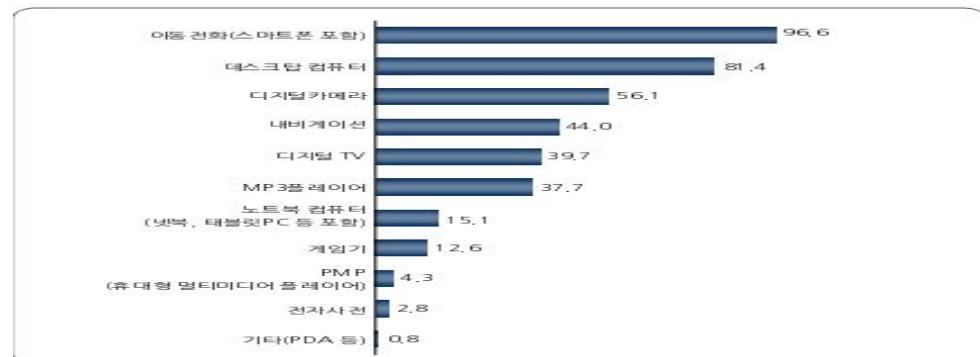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국제교역에 있다. 즉, 수출과 수입의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가장 큰 국가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교역규모는 2010년도에는 9천억 달러였으며, 2011년도 1조 달러에 달하였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한 2,754억 달러, 수입은 26.6% 증가한 2,580억 달러를 기록, 교역액이 5,334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컴퓨터와 IT제품의 수출은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등의 소비재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 업종의 교역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 기자재가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가구의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80%이상이 ‘이동전화(스마트폰 포함 96.6%)’ 또는 ‘데스크 탑 컴퓨터(81.4%)’를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카메라’ 및 ‘내비게이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56.1%, 44.0%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TV’ 보유율 39.7%이며, ‘MP3플레이어’는 37.7%, ‘노트북 컴퓨터(넷북, 태블릿 PC포함)’ 15.1%, ‘게임기’ 12.6% 등으로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그림 1-1> 국내 가구의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복수 응답)

(단위 %)



자료원: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내수시장 이외 국제시장에 있어서도 방송통신 관련 교역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IT 무역수지 분석이다.

<표 1-1> I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0월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IT 전체	153,941	75,619	78,322	13,790	6,723	7,067	63,156

이중 국가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중국(홍콩 포함, 66.0억 달러, 9.8%↑), 중남미(7.2억 달러, 2.5%↑), ASEAN(14.0억 달러, 11.0%↑) 등 개도국 수출은 증가했으나, 일본(6.6억 달러, △6.0%), 미국(15.7억 달러, △18.5%), EU(12.5억 달러, △32.0%) 등 선진국의 이러한 수출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방송통신 기자재 교역 확대를 위한 아세안 국가

<표 1-2> 주요 국가별 IT 수지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2010년			2011년			
				10월 당월			10월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120,949	62,020	58,929	13,790	6,723	7,067	63,156
○ 아시아	73,397	49,174	24,223	9,422	5,330	4,093	33,899
- 중 국	39,344	19,868	19,476	4,894	2,102	2,791	22,327
- 홍 콩	10,802	715	10,087	1,709	51	1,658	13,677
- 일 본	6,617	10,333	-3,716	664	1,036	-371	-3,292
- ASEAN	10,673	11,369	-696	1,397	1,020	376	2,287
· 싱가폴	4,693	5,912	-1,219	506	500	7	160
· 인 니	876	295	581	63	36	27	353
· 말 련	1,963	2,263	-300	165	207	-42	-531
· 태 국	992	1,299	-306	87	115	-29	-354
- 대 만	4,407	6,845	-2,438	567	846	-278	-2,519
- 인 도	1,320	38	1,283	154	3	151	1,387
○ 북미	16,764	6,855	9,909	1,691	821	870	8,596
- 미 국	15,973	6,433	9,540	1,573	786	787	7,957
- 캐나다	631	224	407	93	17	76	617
○ 유럽	18,759	5,029	13,730	1,450	501	949	8,819
- EU	17,037	4,548	12,489	1,255	468	787	7,231
· 영 국	1,718	353	1,365	92	36	55	555
· 독 일	2,910	1,938	972	225	206	19	41
· 프랑스	1,224	731	492	56	44	12	68
· 이탈리아	587	225	362	44	19	25	292
- 러시아	1,071	39	1,033	128	4	124	1,118
○ 중동	3,013	495	2,518	379	24	355	3,534
- 사우디	402	0	402	31	0	31	522
- UAE	873	7	866	97	1	95	1,226
○ 중남미	7,435	363	7,072	719	37	682	6,980
- 브라질	2,008	17	1,991	195	3	192	2,441
- 멕시코	4,897	344	4,553	440	34	406	3,700
- 칠 레	185	0	185	19	0	19	190
○ 대양주	992	92	900	76	10	66	774
- 호 주	906	83	823	69	9	60	697
○ 아프리카	569	11	558	51	1	51	543
○ 브 릴 스	43,744	19,962	23,782	5,370	2,112	3,258	27,273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ASEAN은 회원국 간의 정상회담, 각료회의 등 정치적 문제에 협력하였으나 점차 경제협력 및 정보공유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ASEAN 국가외의 협력 관계 구축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각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세안 방송통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산 기자재가 해당 국가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와 기술 장벽도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관세문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기술 장벽의 문제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의 체결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간 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당국의 국내외 사정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MRA를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MRA를 용이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분야를 특화한 인정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 또한 신설된 기구가 국제인정기구에 진출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MRA 체결이 가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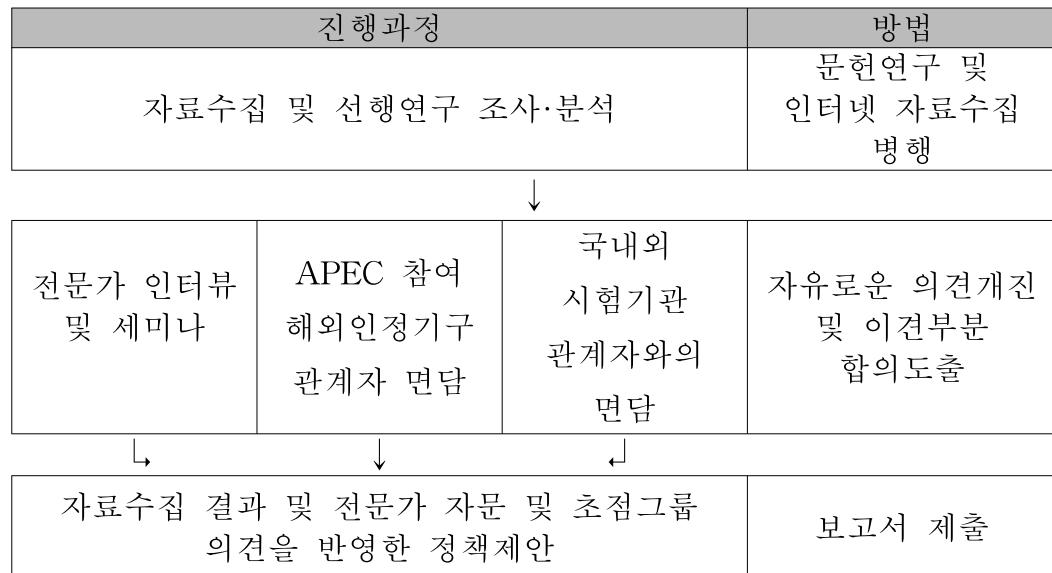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세안 시장의 인정제도를 정확히 분석하여 아세안 방송통신 시장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MRA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틀을 제공하고, 국제협력기구인 APLAC, ILAC 등에 전파연구원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 제시이다. 아울러, 전파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인정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필수적인 인증업무의 이관을 위한 인증업무 민간화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제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전문가 인터뷰 및 세미나 실시 및 국제회의참석을 통한 해외 전문가집단 의견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시험인증기관 종사자, 제조업체 대표자, 법률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자문단이 주체가 되어 진행한 세미나는 6월 15일(장소: 중앙대학교 법학관), 10월 7일(장소: 전파연구원 대회의실) 그리고 11월 3일(장소: EMC 컴플라이언스) 등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아울러, 소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작은 자문회의는 수시로 개최하였다.

연구영역별 방송통신분야 인정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의 개발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인정기구의 국제기구 참여방안은 2011년 9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었던 APEC 국제회의에서 면담한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해외 인정기구 관계자와 APLAC에 참여하였던 공무원과의 면담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국내외 인정기구의 인정요인과 미준수 시처별규정은 인터넷을 통한 문헌조사 그리고 국내외 시험기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APEC TEL 회의 참여시 참가국 대표 전원에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나, 베트남 대표만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따라서 설문지를 재차 APEC TEL 웹사이트에 공지하여 설문작성을 유도하였으나 설문에 추가로 응한 국가는 없었다. 그러므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논의는 APEC 방문 시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 1-3> 연구의 절차표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아세안 국가 10개국으로 한정하고 아세안 국가 별 인증제도 및 협력방안을 조사하였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정기구인 KOLAS 외에 방송통신분야를 특화한 인정기구 설립 필요성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아세안 방송통신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아세안 방송통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별 인증 제도를 분석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셋째,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에 중점을 둔 신규 인정기구 KCAS(가칭)의 설립을 전제로, 이 기구의 국제인정기구인 APLAC과 ILAC에 참여 및 입지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넷째, 전파연구원이 신설 인정기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업무를 분리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증체계의 민간화방안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다섯째, 국내외적으로 인정기구나 지정기관의 인정이나 지정요건과 시험

제 2 장 우리나라 인정기구체제의 향후 발전방안

제 1 절 인정기구체제의 현황

세계 각국은 시험·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기관 인정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체계의 핵심에는 인정기구가 있으며, 국가 상황에 따라 단수 혹은 복수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이하 KOLAS라 칭함)가 현재 유일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기술표준원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KOR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다음 <표 2-1>은 KOLAS의 인정분야별 인정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표 2-1> KOLAS의 시험기관 인정분야

인정구분	인정제품
역학시험	금속 및 관련제품, 섬유 및 관련제품, 시멘트 및 관련제품, 골재 및 관련제품, 목재 및 관련제품, 토질 및 관련제품, 유리와 유리제품, 종이와 관련제품, 고무와 관련제품, 플라스틱 및 관련제품, 가죽 및 관련제품, 기계요소, 물리적 시험측정용 기계기구, 산업용 기계, 건설 및 건자재, 생활용품, 발전, 원자력, 안전장구, 철도차량 및 관련제품, 자동차, 조선, 항공 및 우주
화학시험	철강, 비철, 기타 금속, 광산 및 요업 관련제품, 무기재료 및 제품, 유기재료 및 제품, 방사성물질, 기타재료 및 제품, 무기약품, 유기약품, 기타약품, 가스류, 석유제품, 페인트, 고무, 기타 석유제품, 식품, 화자풀, 농축산물

전기시험	전선, 케이블, 전로용품, 배선기구류, 대전력, 고전압 시험, 전기 재료 및 부품, 계측기 특성시험, 산업용 전기기기, 가정용 전기 기기, 유/무선 통신기기, 조명기기, 의료기기, 전자기적합성, 소프트웨어 시험, 에너지효율, 환경 및 신뢰성
열 및 온도시험	온도 및 습도, 화재, 냉난방기기
비파괴시험	금속 및 관련제품, 비금속 및 관련제품, 고무와 관련제품, 기타 제품
음향 및 진동시험	음향특성, 진동특성, 동적 밸런싱
광학 및 광도시험	광학결상, 복사측정, 분광특성, 광원의 측정, 색체 및 색도, 조명 장치 및 응용기구, 광통신 기기 및 관련제품
의학시험	생체반응시험, 임상화학시험, 임상미생물학시험, 진단혈액학시험, 진단면역혈정학시험, 수혈의학(혈액은행)시험, 약물검사학시험, 임상세포학시험, 진단분자유전학시험, 핵의학(체외검사)시험, 해부병리학시험, 체 유해 전자파시험, 역학시험
법과학시험	규제 물질류, 독물학, 면역혈청학 검사, DNA형 검사, 미세증거물, 충기 및 탄도학, 필적 및 문서감정, 지문흔적, 오디오/비디오/컴퓨터분석, 사고조사, 현장조사, 법의병리학, 곤충학, 법치학
생물학적 시험	약물시험, 미생물시험, 살충효과 및 저항력시험, 육상동물학, 육상식물학, 수중생물학, 유전학, 세포배양 및 GMO

우리나라 인정기구의 출범은 1992년 계량법을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한국교정시험기관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2007년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나 인정영역의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KOLAS는 ISO/IEC 17011의 규정에 따라 1998년 10월 APLAC MRA에 서명한데 이어, 2000년 11월에 ILAC MRA, 2001년 5월에는 교정분야 ILAC MRA에 공식 서명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KOLAS는 교정기관 189기관, 시험기관 443기관, 검사기관 85기관을 인정하고 있다(기술표준원, 2001). 구체적 인정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2> KOLAS의 교정·시험·검사기관 인정현황

	국가/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합계
교정기관	34	20	135	189
시험기관	73	103	267	443
검사기관	0	20	65	85

자료원 : <http://kolas.ats.go.kr/>

제 2 절 독점적 인정기구 체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현재 우리나라는 KOLAS가 유일한 인정기구로서 전체 산업 영역의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을 독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시험기관 인정 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분야로 특화된 인정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 독점적 인정기구 체제의 문제점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민간화를 통하여 민간영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이어져왔다. 아울러 정부만이 존재하는 영역에도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시장화전략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인정분야에 KOLAS가 유일한 인정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¹⁾.

가. 수요자 중심의 경영전략의 미흡

KOLAS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어 준(Quasi)-법률적 독점 형태로 인정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즉, 인정의 공급자는 KOLAS가 유일하나 수요자인 시험기관은 다수인 독점체제이다. 따라서 인정서비스 공급자는 수요자 중심의 경영을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정서비스 수요자인 시험기관 중심의 경영전략 수립이 부족하다.

나. 전체 산업분야 시험기관 인정에 따른 전문성의 결여

KOLAS는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등 11개 세부분야를 인정하는 등 전체 산업분야를 망라하는 방대한 영역을 독자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분야 시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력 풀(pool)의 부족과 교육·훈련이 미흡하여 산업계 전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발전과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방송통신 분야 시험기관 인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다. 인정서비스분야의 개발 여력 부족

KOLAS는 현재 전체 인정영역을 관리유지하고 있어 업무가 과중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 경쟁 인정기관과 비교하여 신규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국내 일부 시험기관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나, 특화된 인정 기구가 부재하다.

라. 단독인정기구는 시험·인증분야 산업화 전략 추진의 장애요인

현재 지식경제부 주도로 시험·인증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과 시험기관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국제적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

인정기구 간의 상호 경쟁도 필요하다. 인정기구 간 서비스 경쟁을 통하여 인정 기구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혜택은 당연히 시험·인증기관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2.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정분야에 대한 대응 방안

앞에서 독점적 인정기구체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체제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결책은 경쟁체제의 도입에서 찾아야 한다. 즉, 정부가 현재 KOLAS에 의해 독점하고 있는 인정서비스 분야에도 복수 서비스 공급자체제를 도입하여 인정서비스 제공창구를 다원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복수 인정기구 체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1단계에서는 공공기관으로만 구성된 인정기구체제를 유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민간 인정기구 설립을 허용하여 민관이 공존하는 인정기구 체제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복수인정기구체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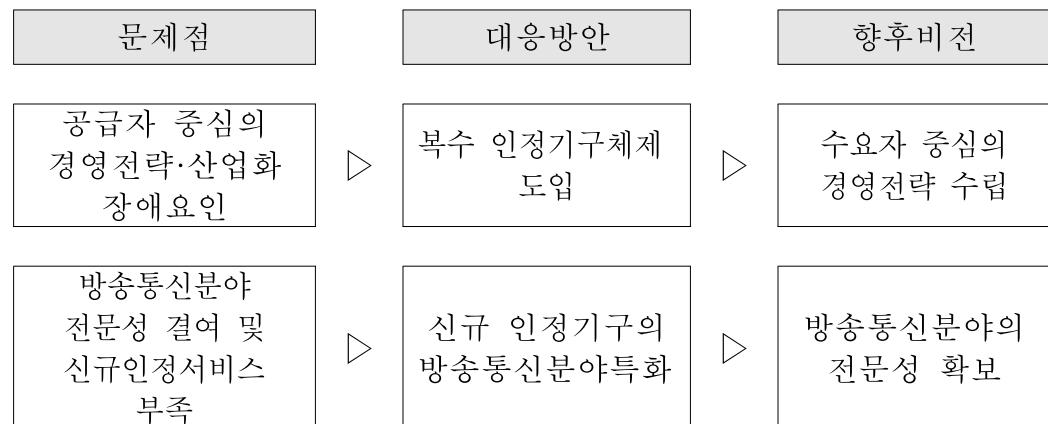
현재 독점적 인정기구체제를 복수 인정기구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특히, 시험·인증분야를 국가전략 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복수 인정기구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즉, 국내 인정기관 간의 경쟁을 통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정기관을 탄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정기관의 탄생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탄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자나 기관에서는 KOLAS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영합리화방안은 독점체제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제규모

개, 일본의 경우 3개, 캐나다의 경우 2개의 복수인정기구가 운영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2011년 현재 국가별로는 하나의 인정기구만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EU라는 단일 경제시장에서 21개의 인정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 과거 EU에서 국가별 복수 인정기구체제를 유지하였다가, 이를 통합하여 단일화하도록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과다경쟁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표 2-3> 문제점 및 대응방안



나. 다수 인정기구체제의 도입

인정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적 성격의 인정기구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성격의 인정기구의 설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순수 민간형태의 인정기구의 도입은 공공기관에 의해 독점되어 있는 인정시장에서의 서비스의 수준, 가격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공기관 성격의 인정기관과 3개의 민간 성격의 인정기구가 인정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체제이다. 즉, 각국의 인정기구체제를 분석하면, 시험·인증시장의 민간화 수준이 높고, 경제 규모가 클수록 복수인정기구체제를

인정체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4>은 EU를 제외하고 현재 국제인정기구에 복수의 인정기구가 가입한 국가에 대한 경제 규모에 대한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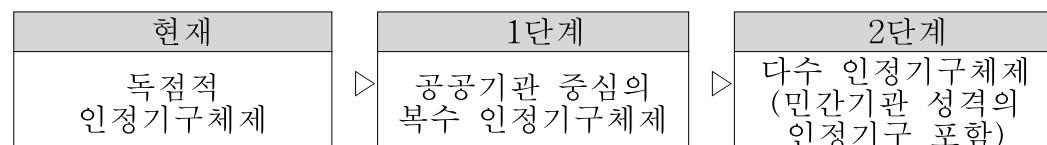
<표 2-4> 복수인정기구체제 국가의 경제 규모

	GDP(2011)		국가경쟁력 지수(2010)		세계경제순위 (2010)		국제인정기구수(2011)	
	\$	순위	득점 (7)	순위	\$	순위	ILAC 정회원	APLAC MRA 서명회원
한국	9,860억	15위	5.02	24위	1,180,000	11위	1	1
캐나다	1조5,740억	9위	5.33	12위	1,165,000	12위	2	2
일본	5조4,590억	3위	5.40	9위	4,220,000	3위	3	3
미국	14조6,580억	1위	5.43	5위	12,980,000	1위	9	7
태국	약 3,000억	N/A	-	-	585,900	21위	3	3

자료: www.weforum.org GDP(2010)-International Monetary Fund

시험·인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수 인정기구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복수인정기구체제를 운영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민간기관도 인정기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민간인정기구를 포함한 다수 인정기관체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공공기관 성격의 인정기구와 민간기관 성격의 인정기구가 활동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방안을 통하여 신설되는 인정기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2-5> 인정기구체제의 발전단계



3. 복수 인정기구체제의 도입에 대한 법적 가능성 분석

복수 인정기구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신설이 필요하다면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에 상당한 시간에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복수인정기구체제의 도입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을 조사하기로 한다. 상기 법률에서 인정기구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표 2-6> 복수인정기구 법적근거조항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시험·검사기관 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인정)
<p>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p>	<p>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을 위한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표준원을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는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기구 및 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표준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는 심의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소속으로 되어

따른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표준기본법의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법적으로 인정 기구를 복수체제의 도입은 가능하다. 아울러 민간인정기구의 출현도 가능하다. 다만, 인정기구 설립이 심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보고사항이어서, 법적 협의 의무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신설되는 인정기구의 위상 확립을 위하여 시행령 16조의 '기술표준원'으로 언급된 규정을 '기술 표준원 등'으로 개정하여 복수의 인정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제 3 절 국제인정기구 참여 현황과 확대의 필요성

1. 국제인정기구 참여현황

인정기구 관련 국제기구는 ILAC과 APLAC 등이다. 2011년 현재 ILAC에는 KOLAS만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APLAC의 경우 KOLAS만이 MRA 서명회원(Full and Signatory APLAC MRA)으로 가입되어 있고, 전파연구원과 한국계량측정협회, 한국과학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표 2-7> 국제인정기구 한국가입기구 현황

기관	분야	ILAC 가입여부 및 지위	APLAC 가입여부 및 지위
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	·역학시험, 화학시험, 전기시험, 열 및 온도시험, 비파괴시험, 음향 및 진동시험, 광학 및 광도시험, 의학시	가입/정회원 (Full Member)	가입/MRA 서명회원 (Full and Signatory Member)

기관	분야	MRA)	
		ILAC 가입여부 및 지위	APLAC 가입여부 및 지위
전파연구원 (RRA)	·차세대 주파수 자원개발, 방송통신 표준 ·융합기술 및 전자파 역기능 방지 연구 및 방송통신기기 품질인증과 방송·통신·전파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관리	미가입	가입/준회원 (Associate Members)
한국계량 측정협회 (KASTO)	·계량산업발전 및 측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지도, 조사 및 홍보 등 ·계량측정산업의 전문기술 인력의 양성 사업 및 단체표준 개발, 보급 ·검사기관의 인정에 관한 사업, 계량측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관련 단체와의 협력증진 ·그 밖에 계량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 또는 지정	미가입	가입/준회원 (Associate Members)
국립환경과학원 (NIER)	·환경정책 수립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환경에 관한 각종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환경영구에 관한 국내·외 자료관리 및 국제공동 연구, 환경관련 교육훈련, 환경기술 연구개발사업 총괄관리 등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와 훈련업무를 관장	미가입	가입/준회원 (Associate Members)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화학, 환경, 농약 신약 등 바이오, 토목 건축, 소재부품, 인증 등의 분야 이외에 전기전자, 전자파 및 정		가입/준회원 (Associate Members)

2. 외국의 국제인정기구 참여 현황

외국의 경우,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국제기구 가입 기관의 숫자가 상이하다. 현재 일부 국가는 ILAC과 APLAC에 단일 인정기관만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부분은 복수 기관이 정회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즉, 인정시장의 규모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복수인정기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모두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정부기구인 독립행정법인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인정센터(IA Japan)와 민간기구인 JAB, JLA, VLAC 등 4개 기구가 활동하고 있고, 이들 중 3개 기관은 ILAC과 APLAC에 각각 정회원과 MRA서명회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단지 JLA만 국제인정기구에서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표 2-8> 일본의 ILAC 및 APLAC 가입현황

기관명	인정분야	ILAC 가입여부 및 지위	APLAC 가입여부 및 지위
IA Japan	시험소 인정 교정기관 인정	가입/ 정회원 (Full Member)	가입/MRA 서명회원 (Full and Signatory APLAC MRA)
JAB	시험소 인정 교정기관 인정	가입/ 정회원 (Full Member)	가입/MRA 서명회원 (Full and Signatory APLAC MRA)
VLAC	시험소 인정 (EMC시험)	가입/ 정회원 (Full Member)	가입/MRA 서명회원 (Full and Signatory APLAC MRA)
JLA	시험소 인정 (화학·식품분야)	가입/관련기관 (Stakeholders)	미가입

캐나다의 경우에는 SCC(The Standards Council of Canada)와 CALA(The Canadi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가 ILAC과 APLAC에 정회원과 서명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CC는 연방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적 성격을 띤 인정기구이며, CALA는 비 영리법인 형태의 인정기구(not-for-profit Canadian laboratory)이다. 미국의 경우, A2LA, ACCLASS, IAS, L-A-B, NVLAP, PJLA, AIHA-LAP, LLC 등이 국제인정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다.

가. 캐나다

(1) SCC(The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는 캐나다 연방정부에 의해 1970년에 설립되었으며, 1980년에는 인증기관을 인정하였고, 1981년에는 시험기관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1996년에는 이사회의 정원을 57명에서 15명으로 감축하였으며, 업무 영역을 환경, 정보 기술, 자연자원 그리고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였다. 국제 무역협정의 표준관련 업무에 대하여 연방정부에 자문하고, 외국과 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SCC는 산업성 장관(the Minister of Industry)을 통해 의회에 보고를 하며, 관련 당사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하여 추밀원(Order-in-Council)에 의하여 임명된다. SCC의 이사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위원회 권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업무처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 SCC는 약 80명의 직원이 있으며, 5개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하부 조직은 다음과 같다.

(1)-1 총무부서(Finance, IM/IT & Administration): 총무부는 SCC의 행정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 부서의 기능은 재정, 행정, 인력관리, 정보서비스 그리고 범역 등이다.

(1)-2 표준화 업무(Standardization)부서: SCC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임을 확인하여 캐나다에서 표준 을 개발할 수 있는 조직임을 인정해 주고 있다. SCC의 인정프로그램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이드와 표준에 기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SCC는 국제적 가장 큰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의 캐나다 참여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국제표준의 도입 및 응용을 독려하고 있다.

(1)-3 적합성 평가부서

SCC는 다음과 같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한다.

- 시험 및 교정기관, 관리 시스템 인증기관
- 인력 인증기관, 제품 및 서비스 인증기관
- 온실 가스 비준 및 확인기구, 검사기관

(1)-4 기업 서비스부서(Corporate Service Division)

기업 서비스 부서는 상설 위원회와 이사회에게 관리 정책과 비서업 무 지원을 제공한다. 이 조직은 캐나다 국민에게 웹사이트, 정보 및 조사 서비스 그리고 기술문서센터를 통하여 캐나다와 세계 각국의 적합성 평가, 기술 규정 및 표준에 관한 최신화되고 가장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5 정책 및 이해관계자 담당부서(Policy and Stakeholder Relations)

정책 및 이해관계자 담당부서는 비정부조직, 산업조직, 연방-주-지역 정부에게 무역 및 규제 정책에서 표준화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주된 업무는 무역과 규제 활동에 있어서 국가 표준시스템의 활용 촉진에 있다.

(2) CALA(Canadi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기준 시험기관 인정 활동을 해왔다. CALA는 현재 APLAC MRA과 ILAC MRA의 회원이며 전세계 40여개 국가에서 인증활동을 하고 있다. CALA는 이사회 아래로 3개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 돼 있다.

(2)-1 하부 조직:

승인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승인 위원회는 인정과정의 최종 결정 및 인증 단계를 담당하며 주로 이메일이나 영상회의를 통해 의사 교환을 한다. 최종 결정은 각 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진다.

(2)-2 자문단(Advisory Panel): 자문단은 승인 위원회의 결정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2)-3 프로그램 위원회(Program Committee): 프로그램 위원회는 CALA 내에서 다양한 부서 간에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CALA는 3가지의 특정한 분야(환경, 광물, 석유)의 실험실을 전문적으로 인증한다. CALA는 평가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험실 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자는 ISO와 캐나다 인증 표준을 숙지한 후 방문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CALA는 외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인증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나. 일본

(1) JAB(Japan Accreditation Board)

JAB는 일본 정부의 승인을 얻은 비영리 기구로, 1993년부터 인정활동을 시작했으며 일본 내에 적합평가제도의 대다수 분야에 대한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JAB의 조직도는 인정 분야 별도로 분리 돼 있으며 모

인정 센터, 지정인증평가부서, 기술 위원회, 인증 위원회, MRA 지정인 증평가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2) IAJapan(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IAJapan은 일본 정부에 의해 설립된 정부인정기관이다. IA Japan의 5가지 인정 프로그램은 MLAP (생화학 관련 검증), JCSS, JLNA, ASNITE (기술 관련 검증), ASNITE/ENERGY STAR이다. 각 프로그램 별 ISO/IEC 기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ISO/IEC 17025와 ISO/IEC 17011를 기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실 자격을 검토한다.

(3) VLAC(Voluntary EMC 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

1985년에 일본 정부의 지도하에 VCCI는 첨단기술 인정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에 VCCI에서 VLAC이 별도의 인정기관으로 분리되었으며, EMC 분야를 특화하고 있다.

다. 미국

(1) A2LA(Americ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A2LA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 돼 있는 인정기관이다. A2LA는 다양한 분야의 실험실 인증을 진행하지만 주로 상품 검사 시험기관과 의료시험기관을 위주로 시험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A2LA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1)-1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이사회는 주로 하위 부서인 인정 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과 기준 위원회(Criteria Council)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Technical Advisory Committee)의 운영을 맡고 있다.

(1)-3 표준 위원회 (Criteria Council): ISO/IEC 17025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인정 위원회를 자문하기도 한다.

(1)-4 기술자문위원회 (Technical Advisory Committee): 실험실/연구소 인증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기존 위원회 이상의 기술적인 지식이 요구되면 일시적으로 인증 과정을 담당할 수 있게 구조 돼 있다.

(2) ACCLASS(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ACCLASS는 비영리 민간기구이다. ACCLASS는 미정부 소유 시험기관/연구소를 인정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NASA Johnson Space Center, U.S Army, USDA, U.S Pharmacopeia가 있다. 미국 외에도 폐루와 캘럼비아와도 교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IAS(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AS는 1975년에 민간 설립된 비영리 인정기구이다. IAS는 자사의 인정에 대해 신뢰성을 통한 마케팅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신속하게 인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L-A-B(Laboratory Accreditation Bureau)

L-A-B는 미국 내에 NACLA와 ILAC를 통해 ISO/IEC 17025를 검토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이다. 또한 미국 내 대표적인 민간 인정기구로 정부기관 인정을 가장 많이 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타 인정기관과 달리 인정 관련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며 인정과정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다.

(5)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Part 285) 기준을 따르고 있다. NVLAP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인정한다.

- 생명과학 & 건강, 건축 & 화재연구, 화학
- 전기 & 전자통신, 에너지, 환경/날씨, IT
- 제조, 재료과학, 수학, 나노기술
- 물리, 공공 안전 & 보안, 퀄리티, 교통

(6) PJLA(Perry Johnson Laboratory Accreditation)

PJLA는 비영리 민간기구이다. 인정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인정기관 중 가장 다양한 고객층 보유를 자랑한다. PJLA는 인정과정을 공개해 총 8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인정 접수: 실험실 인정 신청 및 접수하는 과정이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접수 받는다.

2단계: 인정 절차 준비: 최종적으로 인정 관련 고객 동의와 차후 결과 통보 방식을 고르는 단계이다.

3단계: 인정 스케줄 합의: 전체적인 실험실 인정일정을 합의하는 단계이다.

4단계: 사전 평가 준비: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5단계: 현장 평가: 합의된 일정에 따라 현장 평가 및 조사가 이루어진다. 단, 현장 평가 전에 모든 변경사항은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6단계: 부적합보고(Nonconformance Review): 고객은 90일 이내에 교정조치 응답을 해야 하며 미제출시 재평가를 반계 된다.

7단계: 인정 검토: 최종적으로 내부회의를 거쳐 인정 증서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8단계: 최종인정증명서 전달: 고객 실험실에게 최종인정증명서를 부여 한다.

(7) AIHA-LAP, LCC(AIHA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s, LLC)

AIHA-LAP, LCC는 영리적 민간 인정기관이다. 자금조달은 주로 인정 수수

(7)-1 산업위생 시험기관 인정프로그램(Industrial Hygienic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실험샘플을 다루는 실험실 위주로 샘플 보유 환경과 환경 노출 관련 인정을 다룬다.

(7)-2 환경 납시험기관 인정프로그램(Environmental Lead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납 사용 및 관련 실험실에 대한 환경 영향 및 적합성에 대한 인정을 다룬다.

(7)-3 환경 미생물 시험기관 인정프로그램(Environmental Microbiological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미생물 관련 실험실의 환경 영향 및 적합성에 대한 인정을 다룬다.

(7)-4 식품 시험기관 인정프로그램(Food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식품 관련 실험실의 적합성, 기능성에 대한 인정을 다룬다.

캐나다, 일본, 미국의 경우, 다수의 국가가 복수의 인정기구가 각 분야를 대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복수가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9> APLAC 복수인정기구 채택국가

국가명	인정기구	조직특성	주요 인정영역
캐나다	SCC tel: +1 613 238 3222 (Ext 436) fax: +1 613 569 7808 email: abeaudet@scc.ca web site: http://www.scc.ca	정부기관	환경, 정보 기술, 자연자원 그리고 서비스 분야
	CALA (previously CAEAL) tel: + 1 613 233 5300 fax: + 1 613 233 5501	비영리법인	환경, 광물, 석유

국가명	인정기구	조직특성	주요 인정영역
일본	JAB tel: +81 3 3442 1210 fax: +81 3 5475-2780 email: siguchi@jab.or.jp web site: http://www.jab.or.jp	비영리기관	포괄적
	IAJapan tel: +81 3 3481 1939 fax: +81 3 3481 1937 email: iajapan@nite.go.jp Website: http://www.nite.go.jp/asse/iajapan	정부기관	MLAP (생화학 관련 검증) JCSS JLNA ASNITE (기술 관련 검증) ASNITE/ENERGY STAR
	VLAC tel: +81 3 3568 2152 fax: +81 3 3568 2153 email: osabe@vlac.co.jp website: http://www.vlac.co.jp	정부기관 VCCI에서 별도의 인정기관으로 분리	EMC
미국	A2LA tel: +1 301 644 3208 fax: +1 301 662 2974 email: rrobinson@A2LA.org website: www.a2la.org	비영리 민간기관	포괄적
	ACCLASS tel: +1 703 836 0025 fax: +1 703 836 0040 email: keith.greenaway@aclasscorp.com website: www.aclasscorp.com	비영리 민간기관	정부기관
	IAS tel: +1 562 699 0541 fax: +1 562 699 8031 email: rnathan@jasonline.org	비영리 민간기관	

국가명	인정기구	조직특성	주요 인정영역
미국	<p>L-A-B tel: + 1 260 637 2705 fax: + 1 260 637 2791 email:dleonard@l-a-b.com website: www.l-a-b.com</p>	비영리민간기관	정부기관 특화
	<p>NVLAP tel: +1 301 975 8446; 301 975 4016 fax: +1 301 926 2884 email: betty.sandoval@nist.gov web site: www.nist.gov/nvlap</p>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과학 & 건강 - 건축 & 화재연구 - 화학 - 전기 & 전자통신 - 에너지 - 환경/날씨 - IT - 제조산업 - 재료과학 - 수학 - 나노기술 - 물리 - 공공 안전 & 보안 - 퀄리티 - 교통
	<p>PJLA tel: +1 877 369 5227 fax: +1 248 213 0737 email: tszerszen@pjlabs.com web site: www.pjlabs.com</p>	비영리민간기관	
	<p>AIHA-LAP, LLC tel: +1 703 849 8880 fax: +1 703 207 8558 email: cmorton@aiha.org website: http://www.aihaaccreditedlabs.org</p>	영리민간기관	산업위생, 환경 납, 환경 미생물, 식품 시험기관

2. 국제인정기구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복수인정기구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의 인정기구들은 국내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에서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복수 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에서 함께 활동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얻어지는 혜택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방송통신분야를 특화한 인정기구의 설립 움직임이 전파연구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 인정기구는 반드시 국제인정기구 협회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될 수 있다.

가. 국제인정협회기구에서의 위상 제고

새로이 설립되는 인정기구가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ILAC, APLAC 등 국제인정기구에 가입하여야 한다.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어야만 해외 인정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새로이 설립되는 인정기구가 정보통신분야를 특화하고, 국제적 명성을 얻게 되면 해외 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의 인정수요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외국 인정기구와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촉진

새로이 설립되는 인정기구가 국제 인정기구에 가입하면, 다른 국가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을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 인정기구의 가입은 궁극적으로 국가 간 교역확대를 위한 기술 장벽의 제거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 분야에 신규 인정기구가 특화되어 설립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RA는 국가차원이나, 장관차원에서도

다. 새로운 인정기관의 경쟁력 확보

새로운 인정기구가 국제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인정기구 회의 참석도 증가되고 다른 인정기관과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져 시험-인증-인정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인정기구는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반면에 새로이 설립되는 인정기구가 국제인정기구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복수 인정기구가 국제기구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인정기구가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발생하는 비용은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비교할 때 비교적 적다.

제 3 장 국제 인정기구 참여방안

제 1 절 국제 인정기구협의체에 대한 개관

세계 각국은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세워 CE, UL, ISO규격 등과 같은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을 허가하는 인증장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출품의 경우 완제품생산 후 최종검사와 시험, 교정을 거쳐 수출을 하여도 수입국의 시험·인증시스템으로 다시 받게 만들어 검사비용을 증가시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인 국제시험기관인정협회(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rporation: ILAC이라고 칭함)가 설립되었다. ILAC은 제품에 대한 공인시험 및 교정결과를 상호 수용 하여 국가 간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8년에 컨퍼런스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시험결과의 국제적 인정과 함께 무역활동에 있어 기술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199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서명함으로 공식기구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2000년 세계 28개국 37개 시험소인정기구가 되었다. ILAC MRA은 협정에 참여한 인정기구가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경우 자국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협정에 참여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된 시험기관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기관이므로 시험성적서는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인정, 전 세계적인 수용’의 개념으로 다자간 참여인정협정 체결을 통하여 협정 참여국 어디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MRA는 수출당사자와 수입당사자의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고 시간을 절감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시험소 인정 프로그램들 간의 국제적인 협력체인 ILAC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Council:상호인정협정)의 중점사항은 서명인정기구가 평가하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공인시험기관과 교정기관의 국제적 네트워크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표 3-1> ILAC의 발전 연혁

년도	주요내용
1940년	호주 시험·검사기관 인정 최초 시작
1978년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ISO Guide25 발간 (시험기관 인정 조건)
1978년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rporation :국제시험소 인정기구)이 설립, 컨퍼런스의 형태로 처음 시작
1996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44개국 서명함으로 공식기구
2000년	ILAC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Council : 상호인정협정)에 세계 28개국 37개 시험소 인정기구 서명 (한국 서명)
2011년	58개국이 서명하고 71개 시험소 인정기구가 MRA ILAC 정회원(Full Members)으로 활동 ²⁾

ILAC은 MRA 체결을 위한 절차를 개발하며, 평가사 훈련 및 숙련도 시험, 비교시험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시험소 인정에 관한 규격이나 지침서를 만들어 이러한 내용을 ISO나 IEC 등 국제 표준화 기구와 공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무역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시험소 인정장려 및 시험소 인정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호협약(MRA)를 체결한 기관 간에는 시험, 검사, 교정결과를 산출인정체증을 차별화 만들 것으로 ILAC API AC 협의체인

회원기관인 한국의 인정기구인 KOLAS에서 인정한 기관의 성적서를 상호인정협정국가 간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해주는 것이다. 2011년 현재 APLAC MRA에는 24개국 36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ILAC MRA에는 58개국 71개 시험기관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 성적서를 상호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 APLAC, 2000년 [ILAC](#)에 가입했다.

ILAC은 지역별로 APLAC, EA 등 5개의 산하기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별로는 APLAC에 속하여 있다. 산하기구는 회원기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각국의 인정기구를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별 국제인정기구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지역별 국제인정기구현황

ILAC					
지역 산하 기구	APLAC (아·태 시험소 인정협의체)	EA (유럽인정기구 협의체)	SADCA (남아프리카개발 인정기구협의체)	AFRAC (아프리카 인정협의체)	IAAC (아메리카 인정기구 협의체)
사무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제 2 절 국제인정기구 참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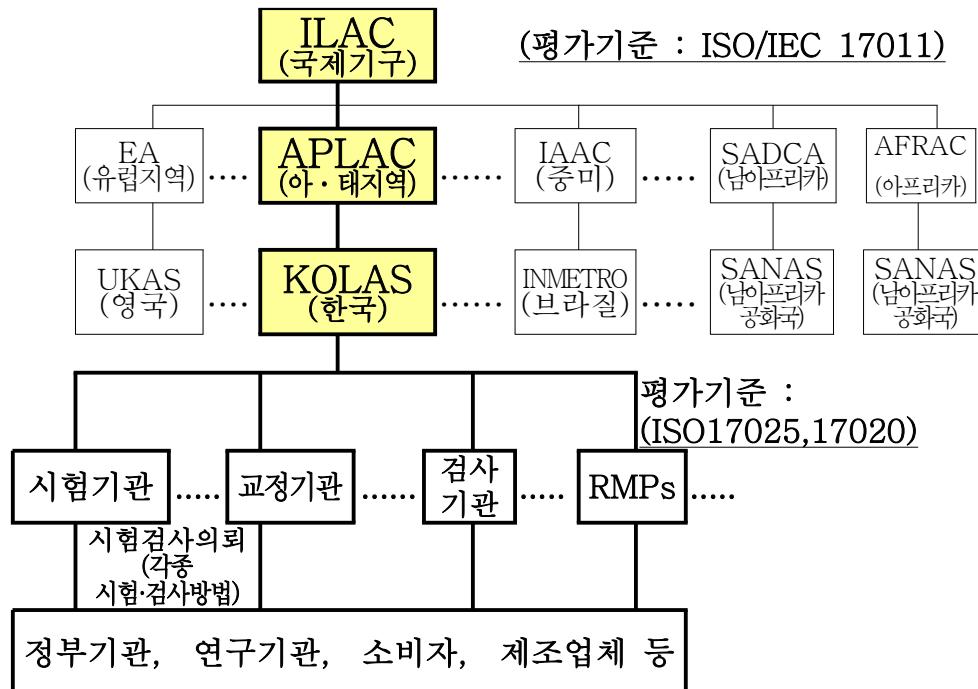
1. ILAC 현황

가. 조직구조

국제시험소인정기구인 ILAC은 다양한 시험기관에 대한 인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 협력기구로 유럽인정기구협력체인 EA(European

Accreditation (SADC), 아프리카인정협력체 AFRAC(African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메리카인정기구협력체인 IAAC(Inter-American Accreditation Cooperation) 등 지역협력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1> ILAC 지역조직 구조도



* ILAC(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

* APLAC(Asia-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아·태시험기관인정협력체

* KOLAS(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정기구

나. 회원의 종류

ILAC의 회원은 규정에 따라 서명국인 정회원(Full Members)과 서명전 인정기관 단계인 준회원(Associate Members), 그리고 인정기관 전 단계인 협력회원(Affiliates), 관련기관(Stakeholders)으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회원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가입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있으

<표 3-3> ILAC 회원별 자격요건

회원단계	자격요건	구별
정회원 (Full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회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인정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 정회원은 준회원 또는 협력회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이 가능함 	MRA의 서명기관
준회원 (Associate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ILAC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결정하는 기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인정기관 ISO, IEC, IRAC 지원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및 ILAC MRA의 의무사항 등의 조건에 맞게 운영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 	MRA의 서명 전단계의 인정기관
협력회원 (Affili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운영 중이면서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 ILAC 총회(General Assembly)에서 결정하는 기타 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하려고 하는 기관 ISO, IEC, IRAC 지원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및 ILAC MRA의 의무사항 등의 조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을 공표할 수 있는 기관 	인정기관 전단계의 기관
관련기관 (Stakehol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LAC활동과 관련된 시험기관 및 종사자, 검사기관, 구매 기관, 규제기관, 소비자 협회와 무역 기관의 협회와 같은 기관을 포함하는 이해관계자 기관 	이해관계자 기관

다. 가입국 현황

<표 3-4> ILAC 가입국 현황

구별	국가	기구
정회원 (Full Members)	Argentina	OAA
	Australia	NATA
	Austria	BMWFJ
	Belgium	BELAC
	Brazil	CGCRE
	Canada	CALA, SCC
	Chile	INN
	Hong Kong, China	HKAS
	People's Republic of China	CNAS
	Costa Rica	ECA
	Croatia	HAA
	Cuba	ONARC
	Czech Republic	CAI
	Denmark	DANAK
	Egypt	EGAC
	Finland	FINAS
	France	COFRAC
	Germany	DAkkS
	Greece	ESYD
	Guatemala	OGA
	Hungary	NAT
	India	NABL
	Indonesia	KAN
	Ireland	INAB
	Israel	ISRAC
	Italy	ACCREDIA
	Japan	IA Japan, JAB, VLAC
	Kazakhstan	NCA

구별	국가	기구
정회원 (Full Members)	Republic of Korea	KOLAS
	Luxembourg	OLAS
	Malaysia	STANDARDS MALAYSIA
	Mexico	ema
	Netherlands	RvA
	New Zealand	IANZ
	Norway	NA
	Pakistan	PNAC
	Papua New Guinea	PNGLAS
	Philippines	PAO
	Poland	PCA
	Portugal	IPAC
	Romania	RENAR
	Russian Federation	AAC Analitica
	Singapore	SAC
	Slovakia	SNAS
	Slovenia	SA
	South Africa	SANAS
	Spain	ENAC
	Sri Lanka	SLAB
	Sweden	SWEDAC
	Switzerland	SAS
	Chinese Taipei	TAF
	Thailand	BLQS-DMSc, NSC - ONAC, BLA-DSS
	Tunisia	TUNAC
	Turkey	TURKAK
	United Arab Emirates	DAC
	United Kingdom	UKAS
	Uruguay	OUA
	USA	NVLAP/A2LA/ AIHA-LAP/ LLC/ EOS/ IAS/ L A B/PIL A/ASCLD-LAB

구별	국가	기구
준회원 (Associate Members)	Albania	DA
	Republic of Belarus	BSCA
	Bosnia and Herzegovina	BATA
	Botswana	SADCAS
	Canada	QMP-LS
	Colombia	ONAC
	Cyprus	CYS, CYSAB
	Iran	NACI
	Jordan	JISM
	Kenya	KENAS
	Kosovo	DAK
	Kyrgyzstan	KAC
	Mauritius	MAURITAS
	Mongolia	MASM
	Montenegro	ATCG
	Morocco	MCA
협력회원 (Affiliates)	Peru	INDECOP
	Serbia	ATS
	Macedonia	IARM
	United Arab Emirates	ENAS
	Afghanistan	ANSA
	Algeria	ALGERAC
	Bangladesh	BAB
	Ecuador	OAE
	El Salvador	NCST
	Ethiopia	ENAO
	Georgia	GAC
	Jamaica	JANAAC
	Libya	LNCSM
	Republic of Moldova	Center of Accreditation in the field of Conformity Assessment of the Republic of Moldova
	Mongolia	MNCCI
	Kingdom of Saudi Arabia	SASO, GAC
	South Africa	PPD
	Trinidad And Tobago	TTBS
	USA	CAP
	Ukraine	NAAU

구별	국가	기구
관련기관 (Stakeholders)	USA	ACIL, AOAC, CLSI, NCSLI, WQA
	Italy	ALPI
	India	APP
	Canada	CALA
	Barbados	CROSQ
	Belgium	CEOCC International
	South Africa	CITAC
	Croatia	CROLAB, HMD
	Netherlands	ENFSI
	Czech Republic	EURACHEM 사무국
	France	EUROLAB 사무국
	Hong Kong, China	HKTIC
	Switzerland	IAAO
	United Kingdom	IFIA, UK NEQAS
	Japan	JLA, UILI 사무국
	Australia	NATA
	South Africa	NLA
	Finland	NORDTEST 사무국
	Zimbabwe	NLAZ

자료: 2011년 8월 ILAC 홈페이지(www.ilac.org)

2. APLAC 현황

가. 조직구조

APLAC은 ILAC의 지역 조직체로서 1992년에 포럼의 형태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을 인정해주는 기관들의 단체이다. 이 기구의 주된 설립목적은 지역에 속하는 인정기구간 MRA를 촉진하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APLAC를 결성하게 한 APLAC MOU는 1995년 3월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16개 기구의 대표에 의해 서명되었으며, 그 이후 10개 기구가 추가적으로 서명하였다. APLAC은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 의해 표준과 적합성에 대한 APEC 하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특별 지역기구(Special Regional Bodies: SRBs)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APEC의 교역 촉진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한다.

APLAC MRA는 1997년 11월 19일에 7개 인정기구가 시험과 교정을 위한 MRA에 서명함으로서 시작되었다. 2003년 11월에는 MRA에 검사 분야를 포함하게 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종전에는 MRA의 시험 분야 안에 포함된 의료시험기관에 적용되는 국제기준인 ISO 15189를 특별히 참조하는 것으로 하였다. 2007년 11월에는 표준물질생산자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확장된 APLAC MRA에 최초 서명이 이루어 졌다. 현재 MRA에 대한 33개 서명기구가 있다.

APLAC의 회원은 국가적으로 인정된 인정기구로 정부에서 관할하거나 승인을 해주고 있다. 이 조직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험기관, 교정기관, 인정기구 간 의견 교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

둘째, 회원 기구에 의해 준비되는 인정서비스의 표준을 향상시키는 것

셋째, 기술 완성도에 대한 상호 학신을 협성·유지하고, APLAC MRA

넷째, 정회원 기구와 다른 지역협의체, 개별 국가 그리고 지역인정기구 간 MRA를 촉진시키는 것

다섯째, APLAC MRA 서명회원에 의해 인정받은 시험기관과 교정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교정성적서 및 검사성적서의 국제적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것

여섯째, 유사하거나 보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APLAC는 회원 인정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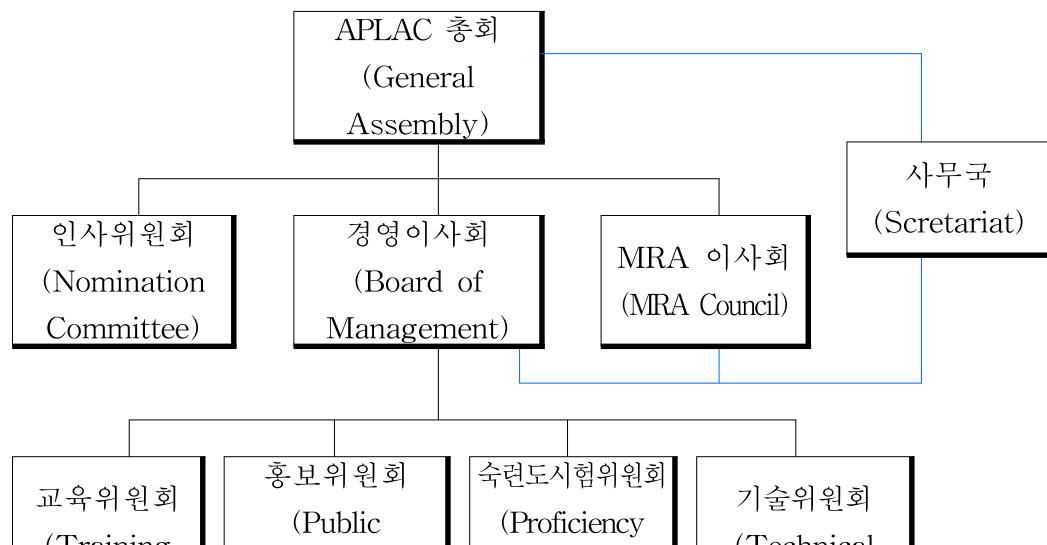
첫째, 지역에서의 숙련도 검사, 측정 평가 활동의 조직화

둘째, 다양한 인정 문제에 대한 워크숍과 훈련과정 준비

셋째, 적합한 촉진 서류의 준비

넷째, 기술적 안내 서류의 개발 등이다.

<그림 3-2> APLAC 조직구조도



다음은 상기 조직표에 나타나 있는 하부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1)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APLAC 회원 간의 기술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확대하고 개발도상국가의 인정기구의 능력 향상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 주는 교육활동의 조화를 통하여 APLAC 회원 간의 인정활동의 조화에 기여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특별히 선도 평가사와 기술 평가사를 위한 교육 활동의 조화
- (나) 회원을 위한 교육 준비
- (다) 회원 간의 정보교환 및 전문성의 공유 확대

연락처: 교육위원회 의장: Ms Zhang Mingxia, CNAS, 중국,

email: zhangmx@cnas.org.cn

(2) 기술 위원회

기술위원회는 회원 간의 해석, 절차 및 기준을 공유하여 APLAC 회원에 의한 인정프로그램에 관련된 기술문제의 조화에 기여한다. 위원회는 다른 유사 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연락처: 기술위원회 의장: Mr Trace McIntuff, A2LA, USA,

email: tmcinturff@a2la.org

(3) 숙련도 시험위원회

숙련도 시험위원회는 숙련도 시험워크숍, 관련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조직화를 포함한 숙련도 시험프로그램과 APLAC 측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숙련도 정책과정 및 이의 주기적 검사의 문서화

- (라) 프로그램과 측정평가의 설계, 집행 및 보고
- (마) 개별 프로그램 진행하기 위한 인정기구 조직화 확정
- (바) 공표에 앞서 개발 프로그램의 최종보고서 검토
- (사) EA, IAAC 및 ILAC과의 협력

연락처: 숙련도 시험위원회: Dr. Koichi Nara, IAJapan,
email: iajapan@nite.go.jp

(4) 홍보위원회

홍보위원회는 외부에 APLAC의 활동에 관한 정보제공을 책임지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외부 이해관계자와 다른 사회에 APLAC과 이의 활동을 홍보
- (나) 적절한 홍보물과 유사한 정보 매체의 생산
- (다) 분기별 뉴스레터, APLAC 뉴스 노트의 생산 조정

연락처: APLAC 사무국, 이메일: aplac@nata.com.au

(5)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APLAC 사무국 사무직의 확정과 이 직책을 위한 인원 선정을 조정하고 관리 감독한다.

나. 회원의 종류

APLAC의 회원은 MRA 서명회원(Full and Signatory to APLAC MRA)과 정회원(Full)-준회원(Associate)으로 구분된다. MRA 서명회원의 경우 ISO/IEC의 국제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회원(Full Members)은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역의 제3자 시험소 인정기구이며, 정부에 의해 지정되거나 APLAC로부터 기반이 공고한 사업자로 인정된 조직이다. 준회원은 시험기관 인정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APLAC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이다. 준회원은 APLAC총회 및 기술위원회 참석, APLAC 문서 검토 및 의견 제출 등을 활동을 할 수

<표 3-5> APLAC 회원 유형별 자격요건

회원단계	자격요건	기준
MRA 서명회원 (Full and Signatory APLAC MRA)	정회원 중 동등성 평가를 통해 그 자격이 입증되어 서명한 회원으로 시험소 인정기구의 경우 ISO/IEC 17011(인정기구 자격요건) 지침을 따라야 하며, 시험소 인정기구는 ISO/IEC 17025(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또한 17025, ISO/IEC 17020 (검사기관 운영에 대한 일반기준)에 따라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야 하며 상임사무국과 사무국 운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APLAC 정회원은 APLAC MRA 서명회원 신청 가능
정회원 (Full Members)	정회원은 자체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거나 APLAC으로부터 기반이 공고한 사업자로 인정됨에 따라 시험소 또는 검사기구, 관련 활동을 하는 조직의 인정에 관여하는 운영이 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제3자 조직이다. APLAC 사무국은 각 정회원의 이름, 주소 및 회원자격 부여일을 포함하는 회원 등록부를 유지한다.	해당국가의 정부가 지정하거나 인정한 기관
준회원 (Associate Members)	준회원은 시험소 또는 검사기구, 관련 활동에 관심을 표명한 조직으로 APLAC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이다. APLAC 사무국은 각 준회원의 이름, 주소 및 회원자격 부여일을 포함하는 회원 등록부를 유지한다.	시험소 인정기구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다. 가입절차

APLAC 서명회원 가입은 APLAC MR001(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입을 위해 APLAC 가입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APLAC 사무국에서는 평가비율을 조성하고 예비평

<표 3-6> APLAC 서명회원 가입 절차

기본요건	국제 표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소 인정기구의 경우 ISO/IEC17011 지침을 따라야 함 인정시험소의 경우 ISO/IEC17025 규정을 충족하여야 함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정기구는 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야 함 상임 사무국을 보유하여야 함 대표자나 인정시스템의 운영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고용하여야 함

↓↓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MR003 양식을 작성하여 EMC 등과 같은 신청분야를 정확하게 명기하여 시험·교정기관 인정기구 표시와 함께 APLAC 사무국에 제출 APLAC의 회원인지 비회원인지의 여부에 따라 평가계획이 고려됨 사전평가 또는 본 평가 3개월 전까지 Set A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Set B는 출판된 형태 그대로 서류 2부를 준비하여 평가반장 또는 평가반에 제출한다. 	
	Set A (영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정책, 절차, 책임성을 기술한 품질 매뉴얼 신청기구가 공포한 인정기준 및 일반 기술 기준 신청기구의 운영에 영향력 있는 규칙이나 규정 및 인정시험고의 의무와 책임성을 포함하는 공포된 일반 기준 적절한 ISO 표준의 요구조건을 가진 신청기구의 응낙기록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측정 소급성에 대한 정책 측정 불확도 계산을 위한 문서지침 인정시험소의 재평가와 감독정책 통계적인 평가방법과 교정조치 절차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의 운영절차서 인정시험소가 참가한 최근 2년간의 숙련도 시험 활동에 관한 요약서 신청국의 국가표준연구소가 참가한 국제 비교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보고서, 뉴스레터 및 지침서, 숙련도 시험 프로그램의 요약서 등의 인정시스템의 운영구조를 기술하는 기타 문서 · 각 인정시험소의 인정범의 및 신청기구의 전화번호나 성명, 목록에 관한 사본 · 인정을 제외한 활동에 관한 신청기구의 가입이나 분리된 기능에 관한 기술 · 국가 표준 하부구조에 관한 기술(국가측정연구소나 다른 국가 측정연구소와의 관계) · 국가기관, 사설기구, 기타 인정시스템을 포함하는 신청기구나 국가적 혹은 국제적으로 가입자임을 나타내는 정식 조약이나 인정에 관한 강세사항 · 관련 기구나 수행한 최근의 평가 보고서
--	--	---



사전평가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평가방문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정식준비를 위한 사항 · 사전평가반은 APLAC MRA 요구조건과 평가 전체과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기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평가방문 3개월 전에 요청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인정 시스템에 대한 운영사항과 인정시험 소의 기술적인 적합성에 대한 사항을 얻기 위하여 1~2개 정도의 인정시험소를 방문한다. · 시험평가기간은 2~3일 정도가 소요되며, ISO 표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문서나 절차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p>신청기구의 평가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구의 요구조건이 구현되었는지를 관측 · 평가를 위해 신청기구의 요구사항을 따르는지를 관측 · 인정 시험소에 의해 ISO 표준에 관한 요구사항이 만족스럽게 구현되는지를 관측 · 인정 시험소의 기술적인 적합성이 인정범위에 적절한지를 입증 · 신청기구의 사무국 및 조직에 관한 평가 · 평가사에 관한 신청기구의 정책과 절차를 평가 · 인정시험소의 적합성과 평가사의 성능에 관한 평가 · 평가 보고서에 관한 평가 · 위원회에 대한 평가 · 숙련도시험 활동에 대한 평가 · 측정 소급성과 불확도에 대한 평가 <p>참고로 APLAC은 현장평가 시 체크리스트(APLAC MR007)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ISO/IEC 17011과 APLAC의 MRA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MR001와 MR002, ILAC/IAF A2문서에 근거하고 있다.</p>
--	---

평가보고서	<p>평가 과정 및 다른 정보로부터 신청기구의 평가사항을 아래의 형태로 표시되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합(nonconformities): ISO 9000:2000에서는 부적합을 요구조건 의미 충족으로 정의한다. 우려(concerns): 적합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만 적합성이나 실행에 의문점이 있다. 언급(comments): 실행과 관련된 제안, 개인적인 의견 등과 같은 다수의 부정적이 아닌 다소 중립적인 지적을 의미한다.
-------	--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조치 및 결정 <p>신청기구는 평가보고서의 부적합 결정으로 인해 취해진 시정조치와</p>
------	---

가입	↓↓
	본 평가를 실시 후 APLAC 상호인정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가입이 완료된다.

라. 가입국 현황

<표 3-7> APLAC 가입국 현황

구별	국가	기구
MRA 서명회원 (Full and Signatory APLAC MRA)	Australia	NATA
	Canada	SCC, CALA (previously CAEAL)
	People's Republic of China	CNAS
	Hong Kong China	HKAS
	India	NABL
	Indonesia	KAN
	Japan	JAB, IAJapan, VLAC
	Republic of Korea	KOLAS
	Malaysia	Standards Malaysia
	Mexico	ema
	New Zealand	IANZ
	Pakistan	PNAC
	Papua New Guinea	PNGLAS
	Philippines	PAO
	Russian Federation	AAC Analitica
	Singapore	SAC
	Sri Lanka	SLAB
	Chinese Taipei	TAF
	Thailand	DMSc, DSS, NSC - ONAC (previously TLAS)
	USA	A2LA, ACLASS, IAS, L-A-B, NVLAP, PJLA, AIHA-LAP, LLC
	Vietnam	BoA

구별	국가	기구
정회원 (Full Members)	Brunei Darussalam	Ministry of Development
	Canada	QMP-LS
	Mongolia	MASM
	Peru	Indecopi
준회원 (Associate Members)	Australia	PTA
	Bangladesh	BAB
	Korea	KTR, KASTO, NIER, RRA
	Chinese Taipei	NIEA
	Thailand	FHI (Thailand Office)

※ 2011년 8월 APLAC 홈페이지 기준 MRA 서명회원 22개국 33개 기구,
정회원 4개국 4기구, 준회원 5개국 8기구

제 3 절 국제인정기구협회에서의 입지 강화방안

국제인정기구협회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적으로 ILAC과 APLAC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즉, 현재 미가입된 ILAC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준회원으로 되어 있는 APLAC에는 정회원 또는 MRA 서명회원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1. ILAC 정회원 진출 방안

전파연구원(RRA)은 APLAC에만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되어 있고, ILAC에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분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시험·인증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ILAC 정회원으로 가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KOLAS만이 ILAC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상당수

ILAC에 복수로 정회원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국가별 정회원 등록인정 기구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2008년에 4개에서 2011년에는 9개로 증가하였다.

<표 3-8> ILAC 정회원 등록 인정기구 수

국가명 년도	미국	캐나다	일본	태국
2008	4개	2개	3개	3개
2011	9개	2개	3개	3개

캐나다의 경우에는 CALA와 SCC가 인정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 기구인 시험소인정기구 IA Japan과 함께 민간기구인 JAB, VLAC 등 3개 기구가 2011년 현재 ILAC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태국의 경우에도 BLQS-DMSc, NSC-ONAC, BLA-DSS 등 3개 기구가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NVLAP을 비롯하여 9개의 인정기구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표 3-9> ILAC 복수인정기구 채택국가(2011)

국가명	인정기구
캐나다(2)	Canadian Association for Laboratory Accreditation Inc. (CALA)
	Standards Council of Canada (SCC)
일본(3)	International Accreditation Japan (IA Japan)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Conformity Assessment (JAB)
	Voluntary EMC Laboratory Accreditation Center INC (VLAC)
태국(3)	The Bureau of Laboratory Quality Standards,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s,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BLQS-DMSc)
	National Standardization Council of Thailand – Office of the National Accreditation Council (NSC – ONAC)
	Bureau of Laboratory Accreditation, Department of Science Service

국가명	인정기구
미국(9)	American Association for Lab Accreditation (A2LA)
	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doing business as ACCLASS
	HA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s, LLC (AIHA-LAP, LLC)
	Forensic Quality Services (FQS)
	International Accreditation Service, Inc (IAS)
	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 (NVLAP)
	Laboratory Accreditation Bureau (L-A-B)
	Perry Johnson Laboratory Accreditation, Inc. (PJLA)
	American Society of Crime Lab Directors/Laboratory Accreditation Board (ASCLD/LAB)

ILAC 정회원 가입은 최소한 두 개의 경로에 의해 확정된다. 인정기구는 준회원이나 협력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준회원 또는 협력회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정회원 입회신청도 가능하다. 따라서 전파연구원은 준회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때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정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은 ILAC Articles of Association 조건에 대한 수행을 선언하여야 하며, 정부에 의해 인정받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국가 내에서 실질적으로 인정업무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정회원의 가입은 전체회원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절차를 끝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파연구원은 우선적으로 인정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KCAS(가칭)의 설립은 ILAC 가입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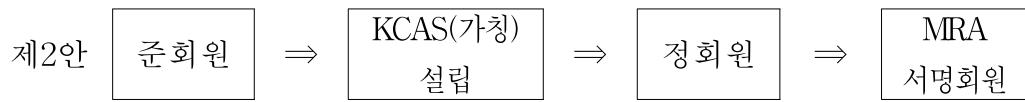
2. APLAC 정회원 / MRA 서명회원 진출 방안

가. APLAC 단계별 진출방안

ILAC과 마찬가지로 APLAC 정회원 또는 MRA 서명회원이 되기 위함

KCAS(가칭)을 설립하고 곧 바로 MRA 서명회원이 되는 방안과 둘째, 준회원이므로 다음 단계에는 정회원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MRA 서명회원이 되는 순차적 MRA 서명회원 진출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림 3-4> APLAC 정회원/ MRA 서명회원 진출 방안



전파연구원은 현재 APLAC 준회원이므로 두 개의 상이한 MRA 서명회원 진입방안이 있다. 즉, 전파연구원이 MRA 서명회원으로 곧 바로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MRA 서명회원으로 진출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정회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MRA 서명회원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의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전파연구원이 독자적으로 APLAC 서명회원과 MRA의 체결이 가능하여 국제적으로 인정기구로서 지위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정기구 출범과 거의 동시에 시범운영과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MRA 회원으로 진입이 확실하지 않다. 만약 가입신청이 부결되면, 여타 인정기구나 시험기관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어 국내에서조차도 인정기구로서의 지위가 손상 받게 될 수 있다. 현재 KOLAS는 조직설립의 목적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일 정부기관으로 존속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정부기관이 인정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정회원으로 진출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MRA

MRA서명 회원 진입에 따른 평가를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잠재능력의 보유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파연구원이 상대국과 MRA를 체결할 수 서명회원의 지위를 확보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전파연구원은 APLAC 회원 지위 전환은 방안별로 장단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최종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종 방안결정에 앞서 인정기구로서 국제적인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 여부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의 결과를 토대로 진출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10> 정회원 · MRA 서명회원화 단계별 장·단점

단계	장점	단점
직접 MRA 서명회원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MRA 체결 가능○ 단기간 내 인정기구 로서의 위상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를 받기 위한 경험 축적 시간의 부족○ KOLAS와 같은 국내인정기관부터 부정적 평가에 직면
정회원 진출 후 MRA 서명회원으로 단계별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기간 동안 운영 경험 축적 가능○ 안정적으로 국제기구 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KCAS(가칭)가 상대국과 MRA를 체결할 수 지위를 확보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나. APLAC 정회원 진출 방안

APLAC의 규정에 따르면 정회원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과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지정의 증거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상태에 대한 검토 및 수락이라는 전제가 충족될 경우 정회원에 대한 투표가 면제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하여야 한다.

둘째, ILAC의 회원 국가 조정기구와 같은 다른 공식 인정방식에 참여를 통해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

셋째, 시험소 또는 검사기구, 관련 활동을 하는 조직의 인정 분야에서 기반이 공고한 인정 사업자임에 대하여 산업계 전반 또는 특정산업부분에서의 충분한 인정을 받았다는 점

상기 입증사항 3가지 모두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중 한 가지만 입증하여도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전파연구원은 준회원이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정회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투표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정의 증거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상태에 대한 검토 및 수락이라는 전제를 충족하여야 한다.

<표 3-11> 정회원 전환 입증사항 및 첨부서류

입증사항	첨부서류
시험소 또는 검사기구, 관련 활동을 하는 조직의 인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사실	신청자는 정부인정이나 타 인정방식에의 참여에 대한 문서증거를 제공하여야 함
ILAC의 회원 국가 조정기구와 같은 다른 공식 인정방식에 참여를 통해 공식 승인을 받은 사실	신청자는 총회에서 수용이 가능한 문서화된 산업계 인정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함
시험소 또는 검사기구, 관련 활동을 하는 조직의 인정분야에서 기반이 공고한 인정 사업자임을 산업계 전반 또는 특정산업부분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은 사실	

전파연구원은 APLAC에서 요구하는 국제기준 중 첫 번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도 실질적으로는 충족시키고 있으나 이를 서면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ISO 17011에 따르면, 인정기구는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전파연구원은 현재 인증업무를 수

현행 법규는 전파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인정기구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인증업무가 중단하면 인정기구로서의 위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인증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파연구원 관련 전파법 조문이다.

<표 3-12> 전파연구원 관련 법 조문

내용	법조문
적합성 평가	제58조의 2
적합성 평가의 면제	제58조의 3
적합성 평가의 취소	제58조의 4
시험기관의 지정	제58조의 5
지정시험기관의 검사	제58조의 6
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제58조의 7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58조의 8
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제58조의 9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	제77조의12

다. APLAC MRA 서명 회원 진출방안

신청기관이 MRA 서명회원으로 진출 요망 시 총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는 1년에 한번 있으므로 총회 개최 이전에 e-mail로 찬반투표 후 조건이 만족되면 회람 후 경영이사회에서 검토(Review)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이사회의 의사가 회원가입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경영이사회는 현 의장 및 전 의장, 선출된 이사 2인, 사무국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된다.

APLAC의 목적은 회원국 내에 능력을 갖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인정업무의 조화를 추구하며, 공인시험이나 측정 및 검사결과의 상호인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설립되는 인정기구는 APLAC 서명회원에 진출할 여부, 설립모집을 단행할 수

라. 향후 전망

정회원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준회원이므로 전파연구원이 향후에 경영이사회에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진출을 수락하는 형태로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MRA서명회원으로의 전환은 다른 인정 기관의 대표(평가위원)이 방문하여 시범운영상황을 평가한 후, 이의 결과를 경영이사회에 제출하고, 여기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진입가능 여부는 평가된 결과보고서 제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의 결과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3. 국제기구 참여 확대를 위한 인력양성과 활동 확대방안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참여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들이 국제기구의 보직에 진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 저개발 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 국제기구 참여 인력풀 구성

국제기구에서 원활한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방송통신 분야에서 원하는 국제활동 전문가는 전문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분야에 해박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국제무대에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순발력까지 두루 갖춘 인재여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방송통신분야의 특성상 해당업무를 단시간 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활동하여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습이다는

도 국제 활동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정부조직의 경우, 국제 활동관련 담당자의 경우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순환보직의 형태로 근무하므로 담당직원이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또한 잣은 인력교체는 외부인사와의 네트워크 특히, 국제무대에서 지속적 교류를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국제회의에 동일인물이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어능통자를 중심으로 조직내 전문가을 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회의 참여빈도 및 성과업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근무 경력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정부조직의 경우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회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국책연구소 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대학교수,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인력풀을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조직인력 이외 국제해외에 동행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성할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국제적 인맥관리 및 정보축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공무원이 향후 의장으로 선출되거나 국제회의 시 우선적 지위를 획득하기 용이해진다.

현재 법조문상 국제기구 참여를 위한 인력양성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전파법 제64조에 전문 인력의 양성을 조문화하고 있으나 국제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문은 선언적 조문에 불과하며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제65조에는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만 언급할 뿐 시행령에도 구체적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파법 제64조4항에 근거하여 시행령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국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

<표 3-13> 전파법에서의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전파법 (현안)

제64조 (인력의 양성)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전파교육의 지원
2.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원
4. 기타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제65조(국제협력의 촉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10조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4> 국제회의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 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2.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
3. 그 밖에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나. 전파연구원 소속 직원의 국제기구 보직 진출 확대

APEC 내 각종 위원회 및 APEC TEL이 주관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핵심멤버로 자리매김을 하여야 한다. APLAC의 상임위원회는 경영위원회(Board of Management), 상호인정 협정이사회(MRA Council), 인사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요직에 전파연구원의 인사가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간 협력확대를 위한 공동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하여야 하고, 방송통신분야의 표준화 및 시험기술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다. 저개발 국가지원사업 확대

아세안 국가 중 ILAC나 APLAC에 가입된 회원국은 물론 미 가입 회원국들과도 방송통신 인증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 공동 협력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미 가입된 라오스, 미얀마 등을 대상으로 한 자문 프로그램 운영 및 인증 로드맵 프로젝트 제공, 인증 전문가 파견 및 교육 등을 제공하여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표 3-15> 아세안 국가별 국제기구 가입현황

국가명	ILAC	APLAC
브루나이	미 가입	정회원 가입
캄보디아	정회원 가입(MRA서명기관)	미 가입
인도네시아	정회원 가입(MRA서명기관)	MRA 서명회원 가입
라오스	미 가입	미 가입
말레이시아	정회원 가입(MRA서명기관)	MRA 서명회원 가입
미얀마	미 가입	미 가입
필리핀	정회원 가입(MRA서명기관)	MRA 서명회원가입
싱가포르	정회원 가입(MRA서명기관)	MRA 서명회원가입
태국	정회원 가입(MRA서명기관)	MRA 서명회원가입

제 4 장 아세안 국가별 인증제도 분석

제 1 절 브루나이

1. 국가개황

남아시아 보르네오 섬 북서 해안에 있는 술탄왕국이다. 1888년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군의 점령 아래 있다가 1959년 외교·국방·안보는 영국이 관장하는 자치정부가 되었다. 1971년 영국은 외교만 관장하는 내정 자치를 실현하고 1984년 1월 독립하였다.

정식명칭은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으로 '평화의 공동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지리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주(Sarawak)와 국경을 맞대고 동서로 양분되어 있다. 수도인 반다르스리브가완(Bandar Seri Begawan)이 있는 북부 해안지역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국토의 85%가 숲과 삼림지대이며, 경작할 수 있는 땅은 2% 정도이나 풍부한 석유자원과 천연가스로 인해 세계 최부국의 하나이다. 독립 즉시 영국연방에 가입하였다.

가. 일반현황

- (1) 국명 :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 (2) 면적 : 5,765km²(경기도 절반)
- (3) 기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
- (4) 수도 : 반다르 세리 베가완(Bandar Seri Begawan, 인구 약6만)
- (5) 인구 : 406,200명(09년)
- (6) 주요 도시

- (9) 종교 : 이슬람교(국교이나 기타 종교 인정)
- (10) 건국(독립)일 : 1984. 1. 1. 영국의 보호령에서 독립
- (11) 정부형태 : 전제 군주제
 - 수상실과 11개부로 구성
 - 국왕은 수상, 국방장관 및 재무장관 겸임
- (12) 국가원수
 - 국왕 : 하산알 볼키아(Hassanal Bolkiah, 46년 생)
- (13) 의회 : '04.9월 20년 만에 입법원 재개원 (의원 수 29명)

나. 경제현황 (2009)

- (1) GDP : US\$ 113억
- (2) GDP성장률 : -1.8%
- (3) 1인당 GDP : US\$ 27,900
- (4) 실업률 : 3.5%
- (5) 화폐단위 : 브루나이 달러(Dollar) B\$
- (6) 환율 : US\$ 1 = B\$ 1.21
- (7) 외환보유고 : 약 US\$ 300억
- (8) 산업구조 :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고(총수출의 96%) 제조업 및 사회간접자본 취약
- (9) 교역규모 : US\$ 123억
 - 수출 : US\$ 82.5억
 - 수입 : US\$ 40.5억

- (10) 주요 교역품
 - 원유와 가스 수출로 꾸준한 무역 수지 흑자 유지 (current price)
 - 총수출: \$ 115억9천만(2008년) → \$ 82억 5천만(2009년)
 - 총수입: \$ 40억9천만(2008년) → \$ 40억 5천만(2009년)
 - 총수출 중 석유와 가스 비중: 96.1% (2009년)

석유/가스 수요의 감소에 기인함. (특히, 브루나이 LNG의 90%를 수입하는 일본의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 감소)

- 수출국가 순위('09): 일본(46.1%), 한국(11.6%), 인도네시아(10.8%)
- 수입국가 순위('09): ASEAN(51.8%), 미국(13%), EU(10.3%), 일본(8.9%)

다. 한국과의 관계

(1) 체결 협정 : 항공협정 ('92), 투자보장협정('00), 문화협정('03), 비자 면제협정('03), IT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06), 청 소년 교류협정('08), 세관상호지원협정('08)

(2) 교역 규모 : 지난 '84년 수교 이래 9배 이상 성장하면서 '10년 브루나이는 한국의 제57위의 무역대상국이 되었다.

- 對 브루나이 수출(10) : US\$ 65백만(전년대비 13.5% 증가),
- 對 브루나이 수입(10) : US\$ 1,522백만(전년대비 57.0% 증가)
- 총 무역액 : US\$ 1,587백만

(3) 교역 품

- 對 브루나이 수출 : 자동차, 선재봉강 및 철근, 무선통신기기, 플라스틱 제품, 합성수지

- 對 브루나이 수입 : 원유, 천연가스, 기타석유화학제품, 목재류, 알루미늄

※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대 브루나이 수출의 급격 증가 현상

- 2011년 5월 현재 전년도 동월 누적 대비 약 1,000% 수출량 증가
(2010년 총수출 6천 5백만 달러/2010.5월 누계 2천 5백만 달러 → 2011.5월 누계 2억 8천 6백만 달러)

- 최근 활발해진 브루나이의 건설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로 철강 자재 및 한류 등 이미지 개선으로 인한 자동차 수출 급증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4) 투자 교류 : 한-브루나이 간 투자는 소규모이나, '06년 이후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다.

(5) 교민 : 1960년대 초반 농업 및 기술이민의 일환으로 정착을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 500여 명에 이르렀으나, 귀국 또는 제3국 이주 등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교민 수 : 약 40세대, 100여 명 (2011년 7월 기준)
- 법규상 외국인은 단순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관리자급은 60세 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므로 향후 교민 수는 계속 감소할 전망
- 대부분은 양계업 및 자동차 수리업 또는 건설업에 종사하며 50~60대 연령의 동포가 대부분
- 2000년 이후 무역, 건설, 관광 및 체육 등 신규 이민 발생

2. 주요 ICT 지표 분석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브루나이의 ICT 분야는 GDP의 약 1.5%를 차지했다. 브루나이 정부는 경제구조의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15년까지 ICT 분야를 GDP의 6%, 2024년까지는 GDP의 10%로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이며, 그 외에 2012년까지 40%의 인터넷 이용률을 달성하고자 한다. (2011년 11.98%)

브루나이는 2007년부터 2012까지 ICT 발전 분야에 798백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데, 이는 국가 발전 계획 예산의 12%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가. 이동통신 이용 현황

<표 4-1> 브루나이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명)	301,322	366,138	398,857	412,882	435,104
이용률(%)	76.68	93.88	100.22	101.65	105.73

나. 유선전화 이용 현황

<표 4-2> 브루나이 유선전화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명)	80,176	79,554	80,786	80,549	79,901
이용률(%)	20.93	20.40	20.30	19.83	19.42

다. 인터넷 이용 현황

<표 4-3> 브루나이 인터넷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명)	19,104	19,980	37,385	45,342	48,732
이용률(%)	4.99	5.16	9.46	11.22	11.89

라.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4>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0.2	N/A	N/A	N/A
수입(%)	6.6	N/A	N/A	N/A

마. 한국의 브루나이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5> 한국의 브루나이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1,862	-1.9	598	12,988.3
2010	3,575	91.9	5	-99.1
2011(1~8월)	4,207	16.3	1	-99.3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 개요

수입 통신 장비 일체는 브루나이에서 사용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형식 승인을 위해 브루나이에 반입되는 장비는 허가된 딜러에게 위탁 되며 세관에 보관된다. 세관 유치 영수증 사본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형식 승인을 거친 후, 딜러는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관세를 결제해야 한다. 승인 기관은 Jabatan Telekom Brunei(JTB)이다.

한편 브루나이 정보통신기술산업청 명령 2001의 제반 조건에 준하여, 신규 독립 규제기관(AiTi)의 제반 규제 기능은 통신 단말 장비의 형식 승인을 포함하고 있다. 형식 승인을 요하는 장비는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통신 라이선스 범주에 속하는 장비이며 목적에 따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된다. 사업자의 경우 AiTi에서 발급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인증 대상 장비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 (1) Level 1 : 다른 장비와의 충돌을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낮은 장비.
팩스, 유선 전화, ADSL 모뎀(유선), 근거리 무선장치, VoIP 등
- (2) Level 2 : 다른 장비와의 충돌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장비. 무선 전화, 아마추어 무선, 위성 전화, 선박 무선, 무선 호출기, 위성 수신기 등
- (3) Level 3 : 다른 장비와의 충돌을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장비 혹은 개인 안전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장비. 무선 모뎀, 이동 전화, 전파 탐지기, 라디오 트랜스시버, 고성능 무선 장비, 워키토키 등

각 레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서를 요구한다.

- (1) Level 1 : 장비 등록 신청서, 장비 세부 양식
- (2) Level 2 : 형식 승인 신청서, 장비 설명서
- (3) Level 3 : 형식 승인 신청서, 장비 설명서, 기술명세서, 시험기관의
유효한 시험 보고서

각 레벨의 인증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레벨 1 : AiTi의 기술 표준을 준수하면 즉시 처리된다.
- (2) 레벨 2와 레벨 3 : 7일 이내에 검사와 기술 평가가 완료된다.

나. 인증절차

현지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영어로 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JTB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JTB가 신청서를 심사한다. 시험연구소가 제품을 평가하고 JTB가 다시 시험 보고서를 검토하여 승인을 하면 인증절차가 종료된다.

다. 사업자용 인증

- (1) 수수료 : B\$ 100부터 B\$ 250
- (2) 유효기간 : 발행으로부터 5년
- (3) 신청 수수료
 - 아마추어 라디오, 이동 전화, 선박 무선, 위성 전화, 위성 수신기,
워키토키 등 : B\$ 250
 - 무선호출기, 항공기 송신기 : B\$ 200
 - 자동차 송신기 : B\$ 150
 - 전화, 팩스, PABX/KTS, 유선 ADSL 모뎀, 근거리 무선통신, VOIP
등 : B\$ 100

라. 신청

신청 서식은 JTB 주파수관리부에서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이 서식을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나 정보를 담고 있는 장비의 안내서 원본 사본과 함께 JTB(사본으로)에 반송한다.

- 설치 및 사용 설명서 사본
- 제품의 기술 사양
- 전기 및 성능 도표
- 회로도, 필수 공구 및 관련 정보
- 장비가 국가 통신 파라미터와 호환된다는 표시
- 시험용 프로토콜
- 장비의 수입 및 판매 계획 가액
- 시험에 사용될 샘플을 허용하는 세관의 유치 영수증
- 시험 수수료 지급을 입증하는 영수증

신청 서식 및 그에 동봉하는 문서는 일체 영어로 접수한다. 접수 시에는 현지 사무소가 필요하다. 인증기관은 외국인 제조업체의 직접 신청은 받지 않는다. 당국은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일체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불완전한 승인 신청은 기각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체 시험 연구소에서 제품의 시험을 준비한다.

마. 시험

JTB는 외국 시험 보고서나 인증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품은 여러 기준, 즉 ETSI,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nd JTM (Jabatan Telekom Malaysia) 기술 사양을 혼합물에 대해 실시한다. 브루나이에서는 CCITT Q931 ETSI 표준 혹은 Euro-ISDN을 준수하는 ISDN 단말기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시험 수수료는 선납해야 한다. 수표는 브루나이 정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간접하여 JTB 네트워크 서비스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인에게 연수

시험은 2주가량 소요된다. 복잡한 제품의 경우 현장 실험이 필요하다. 이는 2주가량 소요된다. JTB는 현장 실험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바. 인증

인증기관은 시험 보고서를 심사한 이후, 만족스러울 경우 승인한다. 인증 유효 기간은 2년에 한하며 갱신할 수 있다. 신청인은 인증 만료 수개월 전에 JTB에 연락하여 형식 인증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JTB는 제품의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인증을 거친 장비는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과 신청 승인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주 내지 3주이며, 현장 실험이 필요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다.

사. 기타

인증을 거친 제품의 변경 사항은 일체 JTB에 통보해야 하며, 신청인은 JTB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변경 수수료는 장비에 따라 상이하다.

4. MRA 체결 현황

가. APEC TEL MRA (정보통신분야 MRA)

APEC TEL의 규제 대상은 유·무선기기, 지상·위성용 기기이며, 해당 기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EMC)와 전기안전도 포함한다. 시험기관 지정 및 인증관련 제도는 ISO/IEC의 가이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시험기관(시험성적서)을 상호 인정하는 MRA 1단계에 2003년 12월 서명하였다.

나.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아세안 역내 정보통신기기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을 통한 무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브루나이의 회원기관은 Authority for Info-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이다. 브루나이는 싱가포르와 2004년 5월 MRA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 2 절 캄보디아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서부에 있는 나라로, 1863년 프랑스의 보호국이 된 이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되었다. 1940년 일본에 점령되었고 일본 패전 후 1947년 5월 프랑스연합 내의 한 왕국으로 독립을 획득하였으며, 1953년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

정식명칭은 캄보디아왕국(The Kingdom of Cambodia)으로 1993년 입헌군주제로 복귀했다. 국명은 프랑스어(語)인 'Cambodge'를 영어로 음역(音譯)한 것으로, 고대의 깜부자(Kambuja; 앙코르) 왕국에서 유래했다. 1975년에 폴포트(Pol Pot)가 이끈 크메르루즈(Khmer Rouge) 정권 시절에 반대파 학살이 이루어져 15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행정구역은 20개주(khait), 4개 크롱(krong)으로 되어 있다.

가. 일반현황

- (1) 국명 :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 (2)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접경
- (3) 면적 : 181,053km².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절반.
- (4) 기후 :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20-40°C의 기온 분포로 3-4월

- (5) 수도 : 프놈펜(Phnom Penh)
- (6) 인구 : 약 14,494,293명 (2010년 US CIA)
- (7) 인구 증가율 : 1.54%(2009년), 1.6%(2010)
- (8) 주요도시 : Phnom penh(133만 명), Battambang(100만 명)
- (9) 화폐 : Riel – CR(Cambodian Riel) 또는 KHR로 표기. 경제 전반
에 걸쳐 미 달러화 통용.
- (10) 환율 : US\$1 = 4,030리엘 (2011)
- (11) 민족 : 크메르(80%), 베트남(10%), 화교(5%), 침족(2%) 등 30여 인종
- (12) 언어 : 크메르어. 지식층 및 비즈니스계를 중심으로 불어 및 영어 통용.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영어 사용 확산. 화교 사회를 중심으
로 중국어 통용
- (13) 종교 : 불교(국교)
- (14) 건국(독립)일 :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 독립)
- (15)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16) 국가원수
- 국왕 : Norodom Sihamoni(국가 원수)
 - 수상 : Hun Sen(실권자)
- (17) 입법부 :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
- (18) 정당
- 여당 : CPP(Cambodian People's Party) 및 FUNCINPEC(민족연합전선) 연립정부
 - 야당 : Sam Rainsy Party 등 다수 군소 정당
- (19) 정부성향 : 친 서방 비동맹 중립

나. 경제현황

- (1) GDP : US \$ 117억(2009, 추정) US \$ 126억(2010, 추정)
- (2) 1인당 GDP : US \$ 720(2009, 추정), US \$ 842(2010, 추정)
- (3) 실질 GDP 성장률 : 0.1%(2009), 5.5%(2010, 추정)

- (5) 물가상승률 : 4.5%(2009), 4%(2010)
- (6) 환율 : US\$ = 4,030리엘 (2011년)
- (7) 경상수지 : US\$ -8억 6,570만(2010)
- (8) 외채 : US\$ 39.8억 (2010)
- (9) 외환 보유고 : US\$ 25억 (2010)
- (10) 산업구조 : 생산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1차 산업(농, 어업, 산림업 등) : 26.1%(2008), 27%(2009)
 - 2차 산업(제조업, 광업, 건설업) : 28.3%(2008), 26%(2009)
 - 3차 산업(서비스, 수송 등) : 38.7%(2008), 39%(2009)
- (11) 무역수지 : US\$ 10억(2009), US\$ -19억 3,900만(2010)
 - 2007 : 수출 US\$ 40억 4,200만, 수입 US\$ 53억 7,700만(FOB 기준)
 - 2008 : 수출 US\$ 42억 1,000만, 수입 US\$ 60억 700만(FOB 기준)
 - 2009 : 수출 US\$ 49억 8,579만, 수입 US\$ 39억 85만(FOB 기준)
 - 2010 : 수출 US\$ 34억 9,300만, 수입 US\$ 47억 7,700만(FOB 기준)
- (12) 수출입 주종 품목(2010년)
 - 수출 : 의류, 천연고무, 농수산물, 축산물, 담배 등
 - 수입 :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

다. 한국과의 관계

- (1) 체결협정 :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7), 투자보장협정('97), 항공협정('01), EDCF공여기본협정('01),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01), 직업훈련원사업 EDCF 협정('02), 도로개보수 EDCF 협정(2002), 수자원개발 EDCF 협정('06), 문화협정('06)
- (2) 교역 규모 (2010년)
 - 對 캄보디아 수출 : US\$ 332,998,000

(3) 수출입 주종 품목(2010)

- 對 캄보디아 수출 : 직물, 중고 의류, 중고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 제품, 중고 오토바이, 의약품 등
 - 對 캄보디아 수입 : 천연고무, 상황버섯, 의류, 수산물(해조류) 등
- (4) 재 캄보디아 교민(2008) : 약 5,000명

2. 주요 ICT 지표 분석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6> 캄보디아 방송통신 주요 지표

유선전화보급률	2.5%(2010)
휴대전화보급률	73% (2010)
인터넷보급률	1.42% (2010)

나. WiMAX

캄보디아는 유선 인프라 부족으로 무선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캄보디아 최초의 WiMAX 상용서비스는 2006년에 시작되었다. 캄보디아 국내 기업인 Cambodia Data Communication Company Ltd(CDC)는 AngkorNet와의 거래를 통하여 SOMA 장비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08년 12월까지 인터넷 보급률은 0.2% 정도였는데 WiMAX를 통한 무선 인터넷 가입자의 증가에 힘입어 2009년 12월에는 0.5%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전체 인터넷 가입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 캄보디아의 인터넷 가입자는 34,000명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이 중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30,000명 정도이다. 2010년은 45,000명의 가입자와 32%정도의 성장이 예측된다.

캄보디아 정부는 WiMAX를 통한 인터넷 공급의 확대를 위해 2009년

WiMAX 기술은 캄보디아의 브로드밴드 보급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로 판단되며, 캄보디아 정부의 결정의 방향 및 시기가 WiMAX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모바일 TV

캄보디아는 모바일방송 국가표준으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지상파 DMB(T-DMB)방식을 채택하고 시범 서비스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T-DMB 개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를 지원 국가로 선정하여 국영 방송인 TVK(National Television of Cambodia)를 통해 지상파 DMB 시범서비스를 실시해왔다. TVK는 Phnom Penh에서 2개의 비디오채널과 1개의 비주얼라디오 채널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T-DMB 시범서비스의 상용화 전환을 목표로 한-캄보디아 간 방송통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캄보디아의 내전, 정국 불안 등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가 파괴되어 2009년 기준 유선전화 보급률(0.36%), 이동통신 보급률(38%), 인터넷 보급률(0.2%) 등 IT지표가 타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 이동통신 보급률이 급격하여 증가하고 있어 T-DMB 보급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브로드밴드

캄보디아에는 2002년 시장 자유화 이후 2010년 현재 많은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 접속은 Dial-Up, 무선 인터넷, DSL(Digital Subscriber Line), 위성브로드밴드 및 임대 라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서비스 요금은 경쟁 및 가입자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인터넷 일반 가구 가입자는 1% 정도로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은 아직은 요원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며, 인터넷 카페들은 웹, 이메

캄보디아의 인터넷 분야는 2009년 전까지는 얼마간 침체된 경향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100% 이상의 인터넷 가입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취약한 유선 인프라로 인터넷 증가는 주로 WiMAX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7> 캄보디아 인터넷, DSL 가입자 증가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e)	2010(e)	2011(e)
인터넷	8,500	10,800	14,700	18,000	34,000	45,000	55,000
브로드밴드	1,000	4,800	8,400	16,600	30,000	40,000	50,000
DSL	350	1,400	3,100	5,400	8,500	-	-

마. 이동통신

<표 4-8> 캄보디아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
(단위 : 천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수	867	1,124	1,572	2,462	3,849	5,593	6,500

캄보디아 통신시장은 유선통신망이 열악하여 이동통신망이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2009년 이동통신 보급률이 38% 정도로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2009년 3월 기준 3G 가입자는 22만 6,400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5% 정도이며, 3G 시장의 성장에 따라 취약한 유선 인프라를 보완하는 모바일 인터넷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나 정부가 3G 서비스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활성화 속도는 다소 느릴 전망이다. 또한 무선인터넷의 사용 비용 역시 상당히 높아 인프라 증가에 따른 합리적 가격이 보급률 확대 및 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 유선통신

캄보디아의 유선통화 가입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 54,200명으로 인구대비 0.36%. 가구 대비 2.0%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은 다소 증가하여 각각 0.4%와 2.2%의 보급률을 보일 전망된다. 제한적이나마 발전했던 유선통신의 성장은 주로 외국의 지원 및 투자에 의한 것이었으나 주로 Phnom Penh에 집중되었으며 지역적인 커버리지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지 못한 상태이다. 가입자 수 측면에서는 2009년까지 증가세는 보이고 있으나 시장 잠재력의 부재로 유선보다는 이동통신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리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WLL(Wireless Local Loop)의 활용은 유선통화 보급을 앞당길 수 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는 WLL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경우이다.

<표 4-9> 캄보디아 유선통화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가입자 수	33,000	34,700	37,500	43,100	54,200	60,000	67,000

사. 캄보디아의 정보통신기술(ICT) 개발 전략

- (1) 높은 통신비용의 급격한 인하
- (2) 도시지역의 통신망 확장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의 확대
- (3) 합리적인 요금 및 높은 품질의 우정서비스를 도시로부터 농촌지역으로 확대 및 관련 기관 역량 강화
- (4) 정보언론매체(라디오, TV 및 신문)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효율성 향상, 서비스 영역 확대
- (5)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한 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아. 정보통신기술 정책

국가정보통신기술개발청(NIDA)에서 작성한 ICT 정책은 정식으로 정부의 채택 과정을 거친 단계는 아니지만, 전반적인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 사업, 공공서비스의 인터넷을 통한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사용, 통신, 인터넷 콘텐츠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6개 부문을 설정하고 있다.

- (1) 국가지도자 및 국가에 대한 기여 정책
- (2) 법적 제도적 기본체제 정책
- (3) 인력양성 정책
- (4) 콘텐츠 정책
- (5) 인프라 정책
- (6) 기업육성 정책

정부는 ICT 분야에 대한 100% 외국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ICT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해주고 있다. 전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자본금은 최소 9,650만 달러로 설정하였다.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면제 혜택은 통신서비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자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혜택만을 받을 수 있다.

자. 통신 규제

캄보디아의 통신 관련 규제는 관습적인 법과 규제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중요한 법 및 독립된 규제 기관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주요 규제 및 감시 업무는 정책 결정 부서인 우정통신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우정통신부는 또한 주파수 및 라이선스 발행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캄보디아의 통신 네트워크

차.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10> 캄보디아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N/A	N/A	0.1	N/A
수입(%)	N/A	N/A	4.0	N/A

카. 한국의 对 캄보디아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11> 한국의 对 캄보디아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1,079	-84.1	66	-20.1
2010	522	-51.6	9	-86.7
2011(1~9월)	3,328	749.0	4	-51.8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 개요

- (1) 우정통신부 (Ministry of Posts & Telecommunication, MPTC) : 캄보디아의 우정 및 통신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 규제, 감독 및 통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다.
- (2) 정보부 (Ministry of Information, MOI) : 1996년 왕실 포고령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공 정보와 캄보디아 미디어 활동에 대한 감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사진, 전자 매체 등 모든 매체를 통해 공공 정보를 제공
 - (나) 솔리드(Telecommunications Solid) 사업에 대한 계획과 사업 운영에 대한 허가·반대

- (라) 신문, 잡지, 출판물, 전자 매체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출판사와 시청각 자료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니터링
- (마) 잡지, 신문, 시청각 자료의 수출입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및 정보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권 부여

나. 인증 절차

캄보디아어 혹은 영어로 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MPTC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MPTC가 신청서를 평가하고 서류를 인정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다. 신청

현지 사무소를 요하지 않는다. 정식 신청 서식은 없다. 신청인은 MPTC에 캄보디아 내 형식 승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야 하기 의 문서를 동봉해야 한다. 문서는 캄보디아어 혹은 영어로 접수한다.

- 상세한 제품의 기술 사양 (기술 정보를 최대한 기술하는 것이 좋다.)
- 장비가 상기 사양에 부합한다는 서면 보증서
- 외국 시험 보고서 및 승인 증서. 현재, EMC, 전기 안전 혹은 인터 페이스 시험 보고서 제출에 적합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다. 다만 관련 보고서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시험

캄보디아는 추가 시험이 필요 없다. 신청인은 신청 서류의 일부로 외 국 시험 보고서 및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캄보디아 내에서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MPTC는 기술 정보 및 시험 데이터에 의존하여 제품을 평가한다.

마. 인증

따라 1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된다. 인증은 무기한 혹은 제품이 변경될 때까지 부여된다. 공식 인증 라벨은 없다. MPTC는 인증 제품의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바. 기타

인증 제품에 변경을 가할 경우 형식 인증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신청인은 수정 사항을 표시하는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4. MRA 체결 현황

가.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ATRC에 참여하는 캄보디아의 회원기관은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우정통신부)로서, 현재 체결한 MRA 사항은 없다.

제 3 절 인도네시아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이로, 제2차 세계대전 전 네덜란드령(領) 동(東) 인도였으며,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1949년 네덜란드와의 협의로 네덜란드·인도네시아 연합이 성립되었으나 1956년 완전한 독립국이 되었다.

정식 명칭은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이다. 동남아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의 도서국가로서, 말레이제도(諸島)에서 필리핀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한다. 동서교

의 언어학자인 J.R.로건이 명명한 것으로 '인도 도서(Indo Nesos)'라는 뜻이다. 동티모르는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나 1975년 해외식민지를 모두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하자 인도네시아에 합병되었다가 1999년 8월 분리 독립했다.

가. 일반현황

- (1) 국명 :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 (2) 위치 : 동남아시아
- (3) 면적 : 190만 km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 (4)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무풍다습
- (5) 수도 : 자카르타 (인구 약 1,200만 명, 면적 661km²-서울 면적 605km²)
- (6) 인구 : 약 2억 3,000만 명(세계 4위)
- (7) 주요 도시
 - 자와섬 : 자카르타, 수라바야, 반동, 족자카르타, 스마랑
 - 수마뜨라섬 : 메단, 빨렘방, 빠당
- (8) 민족 : 자바족(35%), 순다족(13.6%), 아체족, 바딱족 등 300여 종족
- (9) 언어 : 인니어 (Bahasa Indonesia)
- (10) 종교 : 이슬람교(86%), 기독교(6%), 가톨릭(3%), 불교(2%), 힌두교(1.8%)
- (11) 건국(독립)일 : 1945년 8월 17일
- (12)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13) 국가원수 : 대통령(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 집권 1기 : 2004년 10월~2009년 10월 (임기 5년)
 - 집권 2기 : 2009년 10월~2014년 10월 (2009년 7월 8일 실시된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

나. 경제현황(2010년 말 기준)

- (1) GDP : US\$ 7,148억 달러
- (2) 실질경제성장률 : 6.1%
- (3) 1인당 GDP : US\$ 3,004 달러
- (4) 실업률 : 7.14%
- (5) 물가상승률 6.96%
- (6) 화폐단위 : Rupiah(Rp)
- (7) 환율 : US\$1 = Rp 8,978
- (8) 외채 : US\$ 2000억 달러 (정부 : 1,160억불, 민간 : 840억불)
- (9) 외환보유고 : US\$ 962억 달러
- (10) 산업구조 : 석유, 가스 산업, 농업,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
- (11) 교역규모 : US\$ 2,933억 (수출 US\$ 1,577억, 수입 US\$ 1,356억)
- (12) 주요 교역품
 - 수출 : 원유, 가스, 임산물, 금속광물, 종이제품, 섬유, 신발, 혼재
 - 수입 : 기계류, 자동차, 산업용 및 가정용전자, 전자부품, 유기 화학 제품

다. 한국과의 관계

- (1) 체결협정 :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71.8), 건설 협력 양해각서(81.7), 임업협정(87.6), 항공협정(89.9), 이 중과세방지협정(89.11) 투자보장협정(91.2), 법무자료 교환협정(96. 1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협정(97.11), 건설협력약정(99.4), 범죄인 인도협정 및 문화협정(00.11), 사법공조협정(02.3), 자원협력협정(02.4), 도로협력약정(03.1),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06.12)
- (2) 교역 규모('10) : US\$ 228억 달러 (수출 : \$ 89억, 수입 : \$ 139억)
- (3) 교역품
 - 對 인도네시아 수출 : 경유, 편직물, 합성수지, 모니터, 휴발유, 아

(4) 투자 교류 (2010)

- 對 인도네시아 투자 : 356건, US \$ 328백만

(5) 교민 : 약 3만 5,000여 명 추정(자카르타 30,000명 이상)

2. 주요 ICT 지표 분석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12> 인도네시아 방송통신 주요 지표

(단위 : 천 명/천 회선. 2009년 12월 기준)

방송통신 주요지표	인도네시아	보급률(%)
유선전화 가입 회선	33,957	14.8
이동통신 가입자	159,248	69.3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1,700	0.7
TV 보급대수	40,245	17.5
디지털 TV 가입 회선	855	0.4
케이블 TV 가입 회선	188	0.1
디지털 위성 TV가입 회선(DST)	650	0.3
지상파 디지털방송 가입 회선(DTT)	0	0.0

<표 4-13> 인도네시아 유무선 현황

(단위 : 천회선, 천명)

구분		2005	2006	2007f	2008f	2009f	2010f	2011f
유선통신	회선수	13,169	14,250	15,960	18,190	20,750	23,240	25,800
	보급률	5.7%	6.3%	7.0%	7.9%	8.9%	9.8%	10.8%
무선통신	가입자	48,400	65,136	89,630	95,500	106,900	113,300	117,800
	보급률	22.0%	29.2%	39.0%	41.5%	45.9%	48.0%	49.5%

나. WiMAX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MCIT)는 2009년 7월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누고

브랜드명으로 인도네시아 최초의 WiMAX(802.16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2010년 7월부터 인도네시아 수도 Jakarta 지역에서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북부 Sumatra, Aceh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LTE 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4G 표준으로 WiMAX를 선정하였으며, 이미 고정형 WiMAX(802.16d)에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비가 투여되었기 때문에 모바일 WiMAX(802.16e)에 대한 주파수 할당은 2011년 이후로 미룬 상태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4G 기술표준 경쟁에서 WiMAX 보다 LTE로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WiMAX 라이선스를 획득한 8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가 WiMAX 기술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자체 분석 후 취득 의사를 철회하는 등 인도네시아에서도 WiMAX와 LTE의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WiMAX 산업 육성을 위해 고객 맥내 장비(CPE)의 30% 이상, 기지국 장비의 40% 이상을 자국산 장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보유국으로 2억 4,000만 명의 인구 가운데 14%만이 유선 인프라에 접속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2%에도 못 미치는 200만 명 정도가 브로드밴드에 가입하고 있어 WiMAX 시장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iMAX는 유선 브로드밴드 대비 투자효율성이 높아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에 유리하며, 3G 대비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품질 확보가 유리해 인도네시아 브로드밴드 시장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네시아 ISP협회(Indonesian 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 APJII)는 WiMAX 도입을 통해 인도네시아 인터넷 요금이 평균 40-50% 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도 WiMAX 도입이 가장 늦었으며 중국이 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네트워크 기술

다. IPTV

인도네시아는 지형학적 특성 상 유선망이나 케이블망의 구축이 쉽지 않아 타 국가에 비해 IPTV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열세이나 모바일 브로드밴드 망이 구축되면 이 같은 어려움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말 인도네시아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 5%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유료 TV 시장은 아직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며, 불법 시청(Piracy)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TV 보급률은 68%이며, 케이블과 위성 등 유료 TV 서비스 가입자는 약 100만 명으로 현재 시장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나 2억 3,000만 명에 달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네시아의 IPTV 시장은 브로드밴드 인프라가 이제 막 구축되고 있으며, 유료 TV 시장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등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선 브로드밴드의 구축이 어려운 지형학적 특성과 주요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WiMAX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통신 사업자이자 케이블 TV 업체인 First Media가 2010년 4G WiMAX 광대역 무선망을 성공적으로 시험 테스트한 것 등을 고려 할 때, 인도네시아의 IPTV는 시장 형성 초기부터 모바일과의 연계나 모바일 IPTV 중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IPTV는 주요 업체들이 통신과 케이블 TV 모두를 보유하고 있어, 통신업체와 케이블TV업체 간 경쟁 구도보다는 통신과 케이블 TV가 연계되는 수직적 가치사슬 하에서의 타 그룹과의 경쟁 구도가 예상된다.

한편, PT Telkom은 IPTV 제휴 업체인 PCCW가 홍콩에서 성공적으로 IPTV를 런칭한 경험이 있으며, 관련 기술 분야에서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정대로 서비스를 개시하기에는 무리가 없겠으나 인기 콘텐츠 확보, 경쟁력 있는 패키지 가격 정책, 셋톱박스

라. 모바일 TV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바일 TV 표준 선정을 놓고 DMB 기술 방식과 DVB-H 기술 방식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각 기술 표준별로 시험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ASEAN 국가들은 2007년 5월 인도네시아 Jakarta에서 개최된 9차 장관회의에서 유럽 DVB-T 기술을 디지털 지상파 TV 표준으로 승인한 바 있어 현재 모바일 TV 표준 역시 유럽 DVB-H 기술의 채택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DVB-H 기술은 현재 본토 시장인 유럽에서 조차 정착되지 못한 서비스로 비즈모델 부재, 지원 단말 부족, 고가의 네트워크 구축비용, 방송사-이통사 간 사업 조율의 어려움 등 상용화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DMB 방식은 한국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PT Media Nusantara Citra(MNC), DMBNusantara(DMB-N) 등이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편성된 인도네시아 통신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모바일 TV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 개인 휴대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TV 외에 차량용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TV 서비스의 시장 잠재력도 매우 클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지역방송국이 50개가 넘어설 정도로 TV에 대한 국민들의 의존도가 높으며, Jakarta를 포함한 수도권에 등록된 개인차량만 200만 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최근 PND(Personal Navigation Device)를 이용한 차량용 모바일 TV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TV 시청 가구는 약 4,400만 가구로 가구 기준 보급률이 68%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료 TV 서비스(케이블/위성) 가입자는 약 100만 명으로 지상파 TV가 인도네시아 방송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유료 TV 시장은 불

Indonesia, KPI)의 Bosko Salamun 의장은 200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유료 TV 불법 시청 인구가 70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시아태평양 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협회(CASBAA)는 2009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유료 TV 불법 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개별 유료 TV 사업자들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불법 시청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DTH(Direct-to-Home)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2011년 IPTV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 인도네시아 유료 TV 시장은 서서히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바. 브로드밴드

2009년 12월 기준 인도네시아 브로드밴드 가입자는 전년대비 55% 증가한 226만 3,000명으로 가입률은 1.0%를 기록했다. 1994년에 상용화된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09년 12월 기준 약 4,108만 명으로 전년 대비 64.3% 증가했으며, 이용률은 인구기준 17.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 국가 지형의 특성에 따라 해저 광케이블을 이용해 인터넷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33개주 460개 시/군 지역을 브로드밴드로 연결하는 ‘Palapa Ring’ 광케이블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까지 3개 사업자(PT Telkom, PT Indosat, PT Bakrie Telecom)가 35,280km의 해저 광케이블과 21,807km의 지상 광케이블을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 약 80% 구간에서 스위칭 작업이 완료되었다.

인터넷 이용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취약한 유선통신 인프라와 소비자들의 낮은 구매력 때문에 인구대비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9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 4,108만 명 중 브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 통신 인프라 백본(Backbone)망이 없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총 50,000km의 케이블을 구축하는 ‘Palapa Ring’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인터넷 및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통신기업인 Telkom과 Indosat도 인터넷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비 성능 개선 및 기지국, 통신선 확대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향후 인터넷 이용자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여타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3G와 WiMAX 등의 무선 기술이 주도할 전망이며, 특히 WiMAX가 가정 및 기업용 브로드밴드 시장 확보에 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 이동통신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저렴한 요금과 저가의 휴대전화 보급, 사업자 간 경쟁에 힘입어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기준 아·태지역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 순위 12위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낮은 편에 속해 여전히 성장 잠재력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2011년 이후 100%를 상회할 전망이다.

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1억 7,514만 명으로, 인구기준 보급률은 73%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시장 규모는 가입자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보급률도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 3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약 938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5.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경쟁 및 해외 자본의 투자 활성화에 힘입어 당분간 긍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이통사 SingTel과 ST Telemedia, 말레이시아

투자사들이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 엄격한 규제 및 정치부패, 치안 문제 등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휴면고객(inactive subscribers)을 줄임으로써 네트워크 용량(network capacity)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음성 통화보다는 데이터 부문 매출을 높이는 등 ARPU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다.

아. 유선통신

2009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유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389만 명으로, 인구기준 보급률이 약 14.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유선통신 서비스 가입자 규모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1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17,000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로, 유선통신 인프라가 취약하며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유선통신 시장보다는 무선통신 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실제로 가입자 수에 기반한 2009년 기준 유선통신 시장 규모는 이동통신 시장의 1/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은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과 달리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CDMA 기반의 고정형 무선서비스(fixed wireless)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고정형 무선서비스(fixed wireless)는 무선 데이터 통신 서비스 방식 중 하나로 이동통신 대비 저렴한 구축비용으로 유선통신과 이동통신 간의 간극을 메워주며, 성장이 더딘 유선통신 시장에 가입자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유선통신 시장은 정부의 해저케이블 구축 프로젝트 ‘Palapa Ring’과 고정형 WiMAX(802.16d)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에 힘입어 향후 고정형 무선 서비스 및 VoIP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위 사업자 Telkom의 유선통신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면, 고정형 무선서비

자.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14> 인도네시아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6.9	5.3	4.6	5.7
수입(%)	3.9	5.4	9.8	9.7

차. 한국의 对 인도네시아 IT 제품 수출입 현황

<표 4-15> 한국의 对 인도네시아 IT 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518,239	-0.6	105,008	-11.4
2010	566,884	9.4	128,733	22.6
2011(1~9월)	380,138	-10.9	115,910	28.7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 개요

PSTN에 연결하는 무선 통신장비용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제품의 인증은 의무사항이다.

나. 인증 절차

현지 사무소가 필요하다. 현지 대리점은 반드시 인도네시아 상공부가 발급한 수입 면허가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인도네시아어 혹은 영어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우정통신국(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 DGPT)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DGPT가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접수를 인정하고 서식 SP-3을 시험 연구소로 제출한다.

신청이후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완벽한 시험 연구소 서류를 작성하

작성하여 DGPT에 제출한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외국에서 발급된 시험 보고서 및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문서가 관련이 있을 경우 이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며 신속한 평가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DGPT가 시험 보고서를 심사하고 조건에 만족할 경우 승인한다.

다. 신청

신청 서식은 우정통신국(DGPT)에서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정식 서식 사본을 작성하여 신청서 및 다음 문서와 함께 발송해야 한다. 모든 문서는 인도네시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설치 설명서
- 사용 설명서
- 제품 기술 사양
- 회로도
- 품지 보증서
- 현지 대리인의 위임 및 제조업체의 판매대리 계약 사본
- 인도네시아 상공부 혹은 투자조정기관(BKPM)에서 발급한 현지 대리인의 현 산업 면허, 설립, 제세 내역, 회사 등기
- 형식 인증 수수료. 심사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EMC와 전기 안전(IEC950) 표준 적합성을 증명하는 기존 시험 보고서나 인증서를 동봉하는 것이 좋다. 단,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 인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는 보완용으로만 간주된다.

DGPT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제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험 연구서에 제품 시험을 위임하는 서식을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통상 적합 신청 서류를 접수한 이후 14일 정도 소요된다.

라. 시험

인도네시아에는 공인 전기통신 시험 연구소가 단 한 곳, 즉 PT Telkom(Divisi Riset Teknologi Informasi)밖에 없다. DGPT로부터 시험을 개시해도 좋다는 통지를 접수한 이후, 신청인은 하기의 문서를 시험 연구소로 제출한다. 모든 문서는 인도네시아어 혹은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사용 설명서
- 제품 기술 사양
- 설치 설명서
- 회로도
- 제품 샘플 2개

시험 목적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을 사용한다. 시험 연구소는 전기 안전 시험(IEC950)을 실시하지만 전기통신 제품에 대한 EMC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 비용은 제품마다 다르다.

마. 인증

DGPT는 시험 보고서를 심사하여, 연구소 시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시험 보고서 접수 이후 14일 이내에 형식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은 제품 수명이 다할 때까지 혹은 제품이 변경될 때까지 인정된다. 인증된 장비는 전부 공식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바. 기타

인증된 제품의 변동 내역은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변경된 장비는 인도네시아에서 재시험을 거쳐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

4. MRA 체결 현황

가. APEC TEL MRA (정보통신분야 MRA)

인도네시아는 시험기관(시험성적서)을 상호 인정하는 MRA 1단계에 2003년 12월 31일 서명하였다.

나.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인도네시아의 ATRC 회원기관은 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우정통신국)이며, 싱가포르와 2004년 4월 MRA 협정을 체결하였다.

제 4 절 라오스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내륙국이다. 1893년부터 프랑스의 보호령이 되어 지배를 받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의 일부가 되었고 1949년 7월 독립하였다. 1975년 공산혁명을 통해 사회주의국가가 되었다.

정식 명칭은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이다. 동쪽으로 베트남, 남쪽으로 캄보디아, 서쪽으로 태국,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쪽으로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이다. 1975년 공산혁명이 성공하여 공산당 정권이 현재까지 집권하고 있다. 1997년 미얀마와 함께 ASEAN에 가입하였다.

가. 일반현황

- (1) 국명 : 라오인민민주공화국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 (2) 민족 : 라오룸(50%), 라오통(30%), 라오승(10%)족 등 총 47개 종족
- (3) 위치 :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는 내륙국가
- (4) 기후 : 열대 몬순기후
 - 연 평균 기온 : 26.5도
 - 연 평균 강우량 : 2045mm
 - 우기(5월-9월) 및 건기(10-4월)로 대별
- (5) 면적 : 236,800 km² (한반도 전체의 약 1.1배)
- (6) 지형 : 산악지대가 전 국토의 약 80%를 차지(농경지는 전 국토의 3%)
 - 메콩강 4,200km중 1,898km가 라오스 영내를 관류
- (7) 인구 : 6,320,429 (2009)
- (8) 언어 : 성조어(6성)이며, 태국어와 유사(라오스어와 태국어간 상호 의사소통 가능), 프랑스어
- (9) 종교 : 불교(90%), 정령신앙, 기독교
- (10) 수도 : 비엔티엔
- (11) 주요도시: 비엔티엔(수도), 사바나켓, 꽝세, 루昂프라방
- (12) 국가원수 : Lt. Gen. Choummali Saignason 대통령
- (13) 국가형태 : 공화국
 - 1975.12.2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건립
- (14) 정부형태 : 대통령제(임기 5년, 국회에서 선출)
- (15) 의회 : 단원제(의원정수 109명, 임기 5년)
- (16) 정당 : 인민혁명당(1당체제)

나. 경제지표

- (1) GDP: US\$ 5,939,450,626 (2009)

- (2) 물가상승률 : 5.4% (2010)
- (3) 추정 경제성장률 : 7.9% (2010. 세계은행)
- (4) 외국인 직접투자 : US\$ 318,598,209 (2009)
- (5) 무역규모(2010) : 수출 14억 달러, 수입 17억 달러
- (6) 외채 : 54억 달러 (2010)
- (7) 화폐 : 캉(Kip), 1\$ = 약 8016 kip(2011.5)

다. 한국과의 관계

1974년 대한민국(남한)과 수교하였으나 1975년 라오스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단교하다가 1995년에 재수교하였다. 북한과는 1975년에 수교하였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선수 및 임원단을 파견하였다.

- (1) 체결 협정 : 투자보장 협정('96)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96) 한-라오스 경제공동위 설립 시행약정('04) 한-라오스 이중파세방지협정 ('04) 항공협정 체결('10) EDCF 차관약정('10)
- (2) 동포 수 : 2009.2월 현재 약 450명. KOICA 봉사단원(약 70여명) 포함

- 당시 동포 기업들은 KOLAO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연간 매출액이 70만 달러 이하)이며, 주로 중고자동차 수입판매, 농장 경영(고무나무, 유칼립투스 재배 등) 사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 최근 개발원조 프로젝트 및 수력발전소, 골프장, 주택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위해 SK E&C, (주)부영, (주)홍화 등 국내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 라오스 투자기획부 통계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8.1월까지 라오스 정부로부터 인가된 한국 투자건수는 총 140건 이상이며,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임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2007년 라오스 정부에 의해 승인된 한국투자액수는 약 8,200만 달

(3) 對 라오스 교역현황

<표 4-16> 對 라오스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10
수출	23	55	53	56	70
수입	18	70	53	18	19
수지	5	-15	0	38	51

(4) 주요 수출품 : 자동차, 기계류, 철강제품

(5) 주요 수입품 : 동광, 목재, 완구

2. 주요 ICT 지표 분석

최근 들어 라오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최신 통신기술 도입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라오스는 1인당 국민소득 350 달러에 유선 전화 회선수가 1%를 겨우 넘는 정도였다. 그러나 2007년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약 600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동전화 보급률이 25%가 넘는 성장을 보였다.

가. 라오스 통신시장 일반 현황

<표 4-17> 라오스 통신시장 일반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구(백만명)	5.92	5.84	5.93	6.02	6.11
1인당 GDP(US\$)	485	599	719	913	997
이동통신 이용률(%)	10.77	16.67	25.23	34	53
인터넷 이용률(%)	0.42	1.16	1.71	3.7	4.9

2001년 이후 라오스는 Lao Telecom 독점시대를 마감하고, 통신시장에 경쟁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반복되는 통신시장에 비해 절차의

1995년까지 라오스에서는 우정통신건설부 (MCTPC) 산하 EPTL(the Enterprise de la Poste et des Telecommunications Lao)이 라오스의 국영통신 사업자였으나, 1995년에 우정 통신 기능을 분리하면서 ETL(the Enterprise des Telecommunication Lao)이 라오스의 국영통신 기업이 되었다.

1996년 10월부터 태국의 Shinawatra와 합작 투자로 라오스 정부가 51% 지분을 소유하는 Lao Telecom(Lao Telecommunications Co Ltd)이 등장하여 라오스의 국영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ETL은 폐지된다. 그러나 2001년 ETL이 100% 정부 소유의 국영기업으로 다시 문을 열면서 독점체제를 유지하던 라오스 통신 시장이 경쟁체제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또한 ETL이 유선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서비스까지 시작하면서 라오스의 통신시장에는 여러 통신사업자들이 진입하게 된다. 2002년에는 Millcom의 Tango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라오스 국방부 소유의 통신사업자인 LAT(Lao Asia Telecom)도 2003년부터 유무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중반부터는 Sky Telecom이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면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나. 라오스의 통신정책

2001년 4월 라오스 국회에서 채택된 라오스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의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통신규제 담당부처가 단일 부처로 분리되면서 라오스 통신 발전의 한 획을 긋게 된 것이다. 이는 라오스 통신시장 발전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2007년에는 우정통신건설부 MCTPC에서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 규제기관인 우정통신청 NAPT(National Author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라오스의 우정통신청인 ANPT는 총리실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라오스의 정보통신 및 우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ANPT의 주요 업무는 정보통신 및 인터넷, 규제정책 부문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 수립, 우정통신 사업자 허가, 전파 정책 조정 및 감시, 허가 업무, 통신 기기 및

다. 유선통신

라오스 통신시장의 주요 사업자 중 Lao Telecom은 1996년 라오스 정부가 51%, 태국계 업체Shinawatra가 49%의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Joint Venture)으로 설립되어 이전 ETL의 모든 자산이 Lao Telecom으로 이전되고 ETL은 운영을 중지하게 된다. Lao Telecom은 이후 5년간 국영기업으로서 인터넷 사업을 제외한 국내외 전화서비스, 공중전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가졌다. Lao Telecom의 독점 계약이 만료된 2001년 10월부터는 라오스 정부가 본격적으로 통신사업 부문의 확대를 위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0년 8월, 라오스 정부는 100% 정부 소유인 ETL을 재창설한다. 이는 Lao Telecom의 시장 독점계약 종결 기간보다 12개월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라오스 정부의 Shinawatra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ETL은 중국의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주요 통신사로 자리 잡아 2005년 말 라오스 전체 통신시장의 10% 이상인 8,000여명의 유선 가입자와 40,000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약 400,000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게 된다.

ETL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비슷한 시점에 군부 소유의 LAT(Lao Asia Telecom) 설립이 추진되어 2003년 말까지 2,000여명의 유선 가입자를 확보하였으며, 2006년 말에는 5,000명까지 유선가입자가 증가한다. LAT는 2008년부터 LAT 51%, 베트남의 VietTel이 49%의 지분을 소유하여 Star Telecom이라는 합작회사로 변모한다.

라오스의 유선통신 회선 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1만 7천 회선에 미치지 못하던 것이 2007년에는 10만 회선을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5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라. 이동통신

라오스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1993년 EPTL이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밀려났다. 1993년 Lao Telecom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도 비엔티엔에 제한적으로 GSM 900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1년 국영 통신 기업으로 다시 서비스를 시작한 ETL은 중국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비엔티엔과 사바나켓 지역의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2003년 초부터는 전국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국영기업인 LAT는 2002년부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초기에는 수천 명 정도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03년 4월에는 네 번째 사업자이자 민간 서비스 업체, Millicom이 Tango로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GSM 900과 GSM 1800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 밖에 민간 이동통신 사업자인 Sky Telecom은 다른 이동통신서비스와 달리 CDMP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로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3년 초에 들어서면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를 추월하면서 라오스 통신시장에서 이동통신시장의 비중이 더욱 커졌다.

마. 인터넷

라오스의 인터넷 서비스는 1998년 LaoNet이 수도 비엔티엔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9년 후반 LTC에 의해 LaoTel Internet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Planet Online이 세 번째 사업자로서 라오스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 진입했다.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이 좋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LTC가 인터넷 시장에서도 역시 가장 지배적인 사업자이다. 2007년 말까지 약 10개의 인터넷 사업자가 허가를 받았으나 6개 사업자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한 인터넷 카페의 지역주민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04년 말 인터넷 가입자가 약 5천명 정도였다가 3년 만인 2007년에 그 두 배인 만 명으로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3만 5천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라오스의 인터넷 연결은 무선인터넷이나 ADSL보다 다이얼업 형식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바.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18> 라오스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N/A	N/A	N/A	N/A
수입(%)	N/A	N/A	N/A	N/A

사. 한국의 대 라오스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19> 한국의 대 라오스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280	-46.9	0	N/A
2010	1,662	492.8	4	3,284.1
2011(1~9월)	154	-90.3	N/A	-100.0

3. 인증제도 분석

라오스에는 현재 국가 인증 절차가 없으며 우정통신건설부(Ministry of Communication, Transports, Post and Construction, MCTPC) 또한 인증제도 도입 계획이 없다. 단 현지 및 외국 제조업체는 MCTPC의 면

를 발급할 시에 MCTPC와 기획협력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서류를 요구 한다.

- 장비 수입 제안서
- 장비 수입 목적
- 수입 제품 기술 문서

4. MRA 체결 현황

가.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라오스의 ATRC 회원기관은 Ministry of Communication, Transports, Post and Construction이다. 기구 내 MRA 협정 실적은 없다.

제 5 절 말레이시아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 말레이반도 남단과 보르네오섬 일부에 걸쳐 있는 입헌군 주제 국가이다. 1786년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1957년 싱가포르를 제외한 말레이반도 11개 주가 통합하여 말라야 연방으로 독립하였고, 1963년 싱가포르·사바·사라왁을 합쳐 말레이시아가 되었다가 2년 후 싱가포르가 탈퇴·독립하여 현재에 이른다.

말레이반도의 남부를 차지하는 서말레이시아(구 말라야연방: 약 13만 km²)와 보르네오섬 북서부의 사라왁 및 사바로 이루어지는 동말레이시아(북칼리만탄: 약 20만 km²)로 이루어져 있다. 서말레이시아는 길이 약 800km, 폭 325km이고 북쪽과 남쪽은 각각 태국, 싱가포르와 국경을 이

에 면하고, 남쪽은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섬과 국경을 이룬다.

가. 일반현황

- (1) 국명 : 말레이시아 (Malaysia)
- (2) 위치 : 동남아 적도 북단
- (3) 면적 : 329,758km² (한반도의 1.5배)
- (4) 기후 :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
- (5) 수도 : 쿠알룸푸르(Kuala Lumpur)
- (6) 인구 : 2,831만 명(2009 기준)
- (7) 주요 도시 : Kuala Lumpur(160만 명/유동 인구 포함 시 약 450만 명),
Penang(152만 명), Johor Bahru(135만 명) 등
- (8) 민족 : 말레이계(62%), 중국계(22.7%), 인도계(6.8%), 기타(8.5%)
- (9) 언어 : 말레이어(Bahasa Malaysia, 상용어는 영어)
- (10) 종교 : 회교(60.4%, 국교), 불교(19.2%), 기독교(9.1%), 힌두교(6.3%)
- (11) 건국(독립)일 : 1957년 8월 31일(영국으로부터 독립)
- (12)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13) 국가원수
 - DYMM Sultan Mizan Zainal Abidin(13대). 2006년 12월 13일 취임.
 - 수상 : Datuk Seri Najib Tun Razak(실권자) 2009년 4월 취임.

나. 경제현황

- (1) 실질 GDP : US\$ 1,734 억 (2010)
- (2) 실질 경제성장률 : 7.2% (2010)
- (3) 1인당 명목소득 : US\$ 8,046 (2010)
- (4) 실업률 : 3.2% (2010)
- (5) 소비자물가상승률 : 1.7% (2010)
- (6) 화폐단위 : Ringgit Malaysia (RM)

(9) 외환 보유고 : US\$ 959억 (2010. 12. 31.)

(10) 산업구조 : 서비스업(55%), 제조업(29.1%), 농수산임업(7.5%), 광업 (8.1%), 건설업(3.0%) (실질 GDP에서 각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11) 교역 규모 (2010)

- 수출 : US\$ 1,985억
- 수입 : US\$ 1,643억
- 무역흑자 : US\$ 342억

(12) 교역품

- 수출 : 전기전자 제품, 원유, 석유화학 제품, 팜 오일, LNG
- 수입 : 전기전자 제품, 기계 및 부품, 석유화학 제품, 금속 및 철강제품

다. 한국과의 관계

(1) 체결협정 : 무역 협정('62), 문화 협정('65), 항공 협정('67), 이중과세방지 협정('83), 사증면제 협정('83), 과학기술협력 협정('85), 투자보장 협정('88), 해운 협정('88), 자원협력 양해각서('95)

(2) 교역 규모 (2010년)

- 對 말레이시아 수출 : US\$ 86,115백만
- 對 말레이시아 수입 : US\$ 9,530백만
- 무역적자 : US\$ -3,415백만

(3) 교역품

- 對 말레이시아 수출 : 반도체, 선박, 자동차, 컴퓨터,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 對 말레이시아 수입 : 천연가스, 반도체, 원유, 석유제품, 목재류, LPG

(4)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제조업 승인 기준)

- 2009년 : 11건, US\$ 1억 2,940만
- 2010년 : 7건, US\$ 6,188만

(5) 말레이시아의 대한투자(조세 회피 지역인 라부안에서의 투자 제외)

- 2009년 : 베자야 그룹(1억불), NGV TECHUSD 7,600만 QNF

2. 주요 ICT 지표 분석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20> 말레이시아 정보화 지표

구분		말레이시아	출처	
		배점	순위	IMD
R&D	R&D 사업지출 (GDP%)	0.54	28	IMD
	R&D 총지출 (GDP%)	0.64	40	IMD
	정보통신투자 (GDP%)	0.84	11	IMD
IT 활용	컴퓨터이용률(%)	0.59	21	IMD
	정보통신기술(업무적용률)	7.51	30	IMD
	인터넷이용자수(1000명당)	559	29	IMD
	인터넷 업무적용률	4.7	24	WEF
	학교에서의 인터넷 적용률	5.2	25	WEF
IT 인프라	인터넷호스트(거주자 10만명)	52.8	53	WEF
	IT관련 법률 보유정도	5.4	14	WEF
미래지향 IT환경	무선전화비(1분당 US\$)	0.10	8	IMD
	인터넷이용비용 (20시간)	7.39	7	IMD
	사이버보안(적절성)	6.5	18	IMD
	IT홍보의 정부성공율	5.5	2	WEF
	선진화된 정보기술제품 도입	5.1	3	WEF

<표 4-21> 말레이시아 방송통신 주요 지표

(단위 : 천 명/천 회선. 2009년 12월 기준)

방송통신 주요 지표	말레이시아	보급률(%)
유선전화 가입 회선	4,312	15.7%
이동통신 가입자	30,379	110.6%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1,672	6.1%
TV 보급대수	4,800	17.5%
디지털 TV 가입 회선	2,642	9.6%
케이블 TV 가입 회선	0	0.0%

나. WiMAX

사업자 발표와 각종 미디어 발표자료 등에 근거한 2010년 3월 말 기준
말레이시아 WiMAX 가입자 수는 약 20만 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말레이시아에는 모바일 WiMAX 4개, 고정형 WiMAX 1개 등 총 5개의 WiMAX 사업자가 있다. 모바일 WiMAX 사업자는 P1, Asiaspace, REDtone, YTL Communications로 2007년 3월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2.3GHz 주파수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고정형 WiMAX 사업자는 Airzed 한 곳으로 2005년 6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3.5GHz 주파수를 이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WiMAX 서비스 요금은 선/후불, 다운로드 속도, 종량제/정액제 선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후불제의 경우 최소 60링깃(약 19달러)에서 최대 340링깃(약 108.5달러)의 요금상품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단말기는 포터블 모뎀, 실내 모뎀, 모뎀 내장형 노트북 등이 있으며 향후 MID(모바일인터넷디바이스), 스마트폰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의 모바일 WiMAX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P1만이 네트워크 구축과 가입자 유치 측면에서 유의미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P1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선도적인 WiMAX 사업자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SK텔레콤, Intel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순조롭게 영향력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YTL Communications는 2010년 들어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기지국 발주, 칩 구매, 대학과의 사업협력 모색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시장에서 미국의 Qualcomm이 2010년 10월 WiMAX 사업자 AsiaSpace와 제휴 협정을 체결하여, TD-LTE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다. IPTV

말레이시아 IPTV 시장은 미디어 사업자들이 VOD 기반의 pre-IPTV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브로드밴드 구축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High-Speed Broadband(HSBB)로 명명된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해 향후 10년 간 24억 달러를 투여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3G와 WiMAX가 모두 상용화된 상태로 무선 브로드밴드가 전체 브로드밴드 시장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 4G LTE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어 유무선 브로드밴드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유료 TV 시장은 위성 TV 사업자인 Astro가 주도하고 있다. Astro는 위성 망을 이용해 인터랙티브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Telekom Malaysia가 Astro가 주도해왔던 말레이시아 유료 TV 시장에서 통신사업자 기반 IPTV 서비스의 본격 진출을 알리며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였다. 향후 스포츠 경기 중계권 등 프리미엄 콘텐츠 및 다양한 부가 서비스의 확보를 두고 Astro와 Telekom Malyaysia 간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WiMAX가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 지연을 상쇄할 수 있는 보완재로 주목받으면서, WiMAX를 이용한 IPTV 서비스도 부상하고 있다. 특히 모토로라 등 글로벌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체들은 WiMAX 등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방송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11년 4G 주파수 경매가 예정됨에 따라 유무선 브로드밴드 망에 기반한 IPTV 시장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라. 모바일TV

말레이시아에서는 T-DMB, DVB-H, MediaFLO 기반의 테스트 및 시범 서비스가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 상용화 중인 서비스는 없다. DVB-H는 이동통신 사업자인 U-Mobile이 2007년 11월 상용화했으나 현재 서비스 중단 상태이다. 한편 T-DMB는 2010년 6월 Asia Media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현재 네트워크

상용화 서비스 도입 및 서비스 성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DVB-H 도입 진영에 비해 Asia Media나 Asiaspace 등 T-DMB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 상용화 준비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마.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말레이시아의 TV 보급률은 2009년 기준 약 97%로 동남아에서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료 지상파 TV와 유료 위성 TV가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료 지상파 TV로는 국영 방송국 RTM(Radio Television Malaysia)이 제공하는 TV1(RTM1)과 TV2(RTM2), 종합 미디어 그룹 Media Prima가 소유한 TV3, NTV7, 8TV, TV9 등 총 6개 채널이 있고, 유료 TV 시장에서는 위성 TV 사업자인 Astro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9년 기준으로 Astro의 가입자 수는 총 264만 6,100명으로 2008년 대비 약 16% 증가 했으며, 전체 지상파 TV 가입자의 약 4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2003년 8월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와 관련해, 셋톱박스, 전송 커버리지 및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한 자문 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MCMC는 동북아시아 지역 연합(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의 권고사항에 따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한 지역만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 나갈 계획이다.

MCMC는 2006년 11월에 무료 지상파 디지털 방송 서비스 기술 표준 으로 DVB-T 방식을 공식 채택한 바 있다. RTM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정책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Klang Valley 지역에서 DVB-T 기반의 지상파 디지털 TV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으로 시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다. RTM은 2008년 5개의 스튜디오를 디지털 포맷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3년 내에 HDTV를 포함한 19개의 무

Prima 또한 4개 채널의 디지털화에 대비해 디지털 방송 제공 인프라를 일부 지역에서 구축했으며, 2008년 말에는 대표 채널인 TV3을 통해 콜라룸푸르 시내에서 DMB-T/H 기반의 디지털 방송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표 4-22> 말레이시아 디지털 방송전환 추진 계획

단계	기간	개요
1단계	2007년~2015년	아날로그 TV와 DTT 공존
		아날로그 TV의 단계적 축소
2단계	2016년~2020년	아날로그 TV 서비스 중단
		56개 이상 채널에서 DTT 서비스 제공 477-478MHz 대역에서 LMS(Least Means Square) 제공
3단계	2020년~	채널 5~12와 채널 21~54에서 100% DTT 서비스 운영

말레이시아는 높은 TV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날로그 지상파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 전환이 늦은 편이다. Astro가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으로 가입자 유인에 성공하면서 수년간 유료 TV 시장을 지배해왔음을 고려할 때, 향후 디지털 지상파TV 서비스가 Astro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아날로그 송출이 중단되고 디지털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디지털 지상파 TV, 위성 TV, IPTV 등 3개의 방송 서비스 플랫폼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 브로드밴드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2009년 기준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0.6% 증가한 262만 명으로, 가구당 보급률은 31.7%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0명당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009년 9.3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이

<표 4-23>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 수(백만 명)	0.80	1.10	1.70	2.60	
보급률	10.9%	15.2%	21.1%	31.7%	50.0%

<표 4-24> 말레이시아 브로드밴드 기술 비중(2009년)

ADSL	모바일	무선기타	SDSL	유선기타	위성
57.78%	35.39%	6.00%	0.39%	0.24%	0.20%

현재 말레이시아의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열악한 수준이나, 최근 3년간 시장이 급성장했고 정부의 브로드밴드 보급 전략이 본격 실행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3G 네트워크의 확장과 고도화에 힘입어 무선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 말레이시아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 최대 사업자인 Telekom Malaysia의 경쟁사는 다른 유선 브로드밴드 사업자가 아닌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WiMAX 서비스 사업자들이 경쟁상대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 이동통신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의 2009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3,015만 6,000명으로, 보급률은 112.5%를 기록했으며, ITU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3,037만 9,000명, 보급률 110.6%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서비스 품질이 좋지 못해 일부 지역에서는 수신율이 낮으며,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사업자들에게 분기당 1회의 보고서를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후불제보다는 선불제 서비스가입자 비중이 높으며, 2009년 기준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중 약 79.4%가 선불제 고객이다.

3G 서비스는 Maxis, Celcom, U Mobile, Digi 등 4개 사업자가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상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Celcom은 2003년 12월 W-CDMA 서비스를 최초로 개시했으며, 그 뒤를 이어 말레이시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사 Maxis도 2005년 7월 W-CDMA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신규 3G 사업자인 U Mobile과 3위 사업자 DiGi도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9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3G 가입자 수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강세에 힘입어 약 371만 9,000명을 기록하였다.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시장은 보급률 면에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으나, 유선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향후 몇 년간 3G 및 3.5G 서비스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모바일 브로드밴드 서비스 이용자 규모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선불제에 집중되어 있던 가입자 기반을 분산시키고 후불제 가입자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HSPA+ 및 LTE와 같은 초고속 이동통신기술을 도입하고 투자 범위도 확대하는 전략을 전개 중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및 다양한 성능을 탑재한 단말기가 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향후 후불제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25> 말레이시아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가입자 수(천 명)	23,247	27,731	30,156	30,488
보급률	87.9%	102.5%	106.5%	112.5%

<표 4-26> 말레이시아의 3G 가입자 수 추이

(단위 : 천 명)

2007	2008	2009	2010
1,290	2,468	3,719	5,049(추정)

아. 유선통신

말레이시아의 유선통신은 1997년 경제위기 전까지 급증했으나, 빈약한 기반 시설, 가입자들의 이동통신 및 초고속 통신망으로의 이탈, 유선통신망 자체의 경쟁력 부족 등으로 2003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시장조사기관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431만 2,000명, 인구 당 보급률은 15.2%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12월에는 가입자 수와 보급률이 각각 425만 명, 14.7%까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말레이시아 유선통신의 가입자 기반은 전체 가입자의 65%가 일반 가정 및 개인 고객이며, 나머지 35%는 기업 고객으로 구성된다.

대표 유선통신 사업자는 Telekom Malaysia(TM)이며, 그 이외의 경쟁 사업자들은 유선통신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있지만, 유선통신의 수익성이 이동통신보다는 낮다는 이유 등으로 TM과의 적극적인 경쟁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 TM의 경쟁사들은 대부분 자사 유선 네트워크를 이동통신사업 혹은 부유 계층 및 비즈니스 고객 등의 특화된 고객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VoIP의 경우 2000년 초까지는 유선 네트워크를 보유한 사업자들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00년 4월부터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유선통신과 동일한 규제 하에서 별도의 라이선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규모 VoIP 서비스 제공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WiMAX 기반의 VoIP가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적인 감소 추세가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브로드밴드 확장 전략인 HSBB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인프라 보급률이 향상되면, VoIP 서비스의 경우 일정 수준 시장 성장세가 예상된다.

<표 4-27> 말레이시아 유선전화 가입자 수 및 보급률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추정)
가입자 수(천 명)	4,350	4,292	4,312	4,250
보급률	16.6%	15.5%	15.2%	14.7%

자.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28> 말레이시아의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45.1	41.6	26.2	38.1
수입(%)	38.9	36.3	25.3	32.0

차.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29>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1,717,295	-36.3	2,096,938	-5.6
2010	2,039,485	18.8	2,462,347	17.4
2011(1~9월)	1,283,156	-15.9	1,906,685	4.4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개요

말레이시아의 인증은 간접 연결 장비를 포함하여 유선통신장비, 무선통신장비, 네트워크통신장비 등 전 통신 단말 장비에 의무화되고 있다. 전 말레이시아 인증기관인 Jabatan Telekom Malaysia(JTM)가 통신 및 멀티미디어 법률안에 따라 1999년 폐지되었고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 이하 MCMC)가 독립된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 설립되었다. JTM 업무와 통신 단말 장비 인증은 현재 민간 인증기관인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주로 관할하고 있으며, MCMC 또한 주요업무로서 방송, 통신, 전자 서비스 등에 대한 기술규제와 더불어 라이선스 발급과 통신장비 인증을 담당한다.

말레이시아에는 다음 범주에 속하는 장비를 수입할 수 있다.

- 이미 말레이시아 업종 승인을 받은 제품
- 현재 업종 승인을 받고 있는 제품 (수입은 최대 2가지 물품으로 국한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에 한한다.)
- 유효한 제조 면허를 보유한 현지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통신 부품
또한 JTM이 부여한 기존 인증은 모두 효력을 갖는다.

나. 인증유형

- (1) 형식승인 : 형식승인은 기술 사양/기준/기술사항 대조표/기술 신고서(즉 안전, 서비스 상호 이용, 전자 환경 적합성, 비간섭 등의 내용)을 준수하는 통신장비의 특징 모델에 부여된다.
- 신청자 : 생산업체, 조립업체,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업체로 수입하는 업체
- 절차 : 서면 평가 → 실험 또는 현장 테스트
- (2) 특별승인 : 신청인(개인/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장비에

- 범위 : 전시, R&D, 교육, 개인 혹은 업체, 데모/시험판/시장 조사
- 절차 : 법 조항에 의하여 실험이나 현장 테스트가 면제되며 서면 평가만을 기초로 인증할 수 있다.

다. 인증절차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지 사무소가 필요하다. 현지에 등록된 제조업체 혹은 외국인 제조업체를 대행하는 대리점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영어 혹은 Bahasa 말레이시아어로 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SIRIM QAS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SIRIM QAS가 신청 패키지를 심사하여 시험 수수료 송장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수입 허가를 취득하고 장비 샘플을 시험 연구소로 제출한다. 시험 연구소가 제품을 평가하여 시험 보고서 작성한다.

SIRIM QAS가 시험 보고서를 검토하여 조건을 만족할 경우 기술 준수 인증서를 발급한다.

라. 신청

현지 사무소가 필요하며, 현지 등록한 기업만 업종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다음 문서를 동봉하여 SIRIM QAS International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진술서(CETS/FOR/03)
- 회사 정보 서식(CETS/FOR/02)
- 제품 기술 체크리스트
- 사용설명서(원본)
- 제품 컬러 판매 브로슈어. 브로슈어를 구할 수 없을 경우, 컬러 사진(5R 사이즈)과 함께 제품 기술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 기술 매뉴얼 :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함

신청서와 동봉하는 문서는 현지 언어(Bahasa Malaysia)나 영어로 작성해야하며 모든 문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철해야 한다. 내용이 불완전한 제출물은 신청인에게 반송된다. 서류는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SIRIM QAS International은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발행하고 파일 참조 번호를 할당하며, 이 번호는 여타 모든 서한에 인용되어야 한다. 수입 서식을 SIRIM QAS International이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반송하면, 신청인은 시험 목적을 위해 제품 샘플을 말레이시아로 반입할 수 있다.

시험 샘플(최대 2단위)에는 다음의 문서를 동봉해야 한다.

- 수입 목적을 기재한 표지 서한
- 관세 수입 허가 서식(JK69)
- 송장, 견적 송장, 구매 주문서 사본 3부.

수입 허가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마. 시험

신청인은 말레이시아 기준에 상응하는 시험에 맞는 장비 샘플을 준비해야 한다. 장비 시험과 인증은 SIRIM QAS International에서 실시되며, ISDN 장비는 SIRIM QAS International을 대신하여 Telekom Malaysia Berhad에서 시험한다. SIRIM QAS International은 신청을 접수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시험 일자 및 수수료를 통보한다. 수수료는 시험 장비의 유형에 따라 RM300부터 RM200 수준이 요구된다.

신청인이 시험 연구소로 전달할 장비 샘플은 일반적으로 1개가 필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2개의 샘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SIRIM QAS International에서 이를 통보한다. 샘플 준비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수입 증거, 즉 수입 허가 서식 JK69에 세관의 서명 및 날인을 득한 인증 사본을 동봉해야 한다. 본 문서가 없이 제출된 샘플은 접수 혹은 시험을 받지 못한다.

제품들은 ITU-T 및 ITU-R 권장사항을 토대로 하는 표준에 맞게 시험을 거친다. 현재 EMC의 강제 요건은 없으나 안전을 위하여 UL(IEC950) 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인 연구소의 국제 EMC 및 안전 표준 준수를 입증하는 시험 보고서를 인정했으며, 모든 신청 서류에 그러한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변경하여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재시험 신청서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한 변경 내용은 신청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연구소에서의 개조는 허용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는 외국 시험 보고서 및 승인 인증 및 공급업체 자체 결과를 인정하지 않지만, 신청 서류에 동봉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는 있다.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승인 기관의 인정을 받은 공인 시험 연구소의 EMC 및 전기 안전 시험 보고서와 관련된 서류는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바. 인증

SIRIM QAS International은 시험 보고서를 심사하여, 심사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식 인증을 승인한다. 본 심사는 통상적으로 신청일 이후 30일 가량 소요되며, 제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증 절차를 거친 제품은 공식 SIRIM 준수 라벨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이는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1998에 준하여 규정된 강제 요건이다. 라벨에는 보안 특징이 포함되며 SIRIM QAS International에 신청할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 수입 장비 수량에 해당하는 라벨 수량

사. 특별 승인

특별 승인 인증은 하기와 같이 신청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통신 장비에 대해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

- (1) 민간/개인용(최대: 3 단위)
- (2) 전시(최대: 5 단위)
- (3) R&D (최대: 5단위)
- (4) 실험/시장조사/실연(최대: 5 단위)
- (5) 교육(최대: 2단위)

(2) 및 (4) 항에 준하는 전시는 전시, 실험, 조사 혹은 실연 기간이 종료된 이후 수출해야 한다. 이러한 장비는 인증을 발급하기 전에 CMC의 주파수 인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를 받아야 한다. SIRIM QAS International은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아. 수입

1967년도 관세법(1998년 수입금지)에 준하여, 통신 장비 일체는 말레이시아에 수입되기 전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된 장비도 포함된다. SIRIM QAS International은 모든 유형의 통신 장비에 대해 수입 허가를 처리 및 부여하도록 왕립 관세청의 위임을 받았다.

형식 승인을 받은 장비에 대한 수입 허가 신청 일체는 CMnet Dotcom Sdn Bhd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인증 보유자들은 수입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CMnet Dotcom Sdn Bhd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Sirim QAS International이 24시간 내에 처리한다. 수입 허가 수동 신청은 시험 목적용 신규 샘플로 국한한다. 수입 허가 수동 신청은 일반적으로 4일 내에 처리된다.

자. 기타

장비의 주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제품을 재제출하여 전체 유형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최초로 인증 받은 제품과의 비교 체크리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4. MRA 체결 현황

가. APEC TEL MRA (정보통신분야 MRA)

말레이시아는 2006년 MRA 1단계인 시험기관 상호 인정에 서명했다.

나.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말레이시아의 ATRC 회원기관은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이다. 싱가포르와 2005년 1월 MRA를 체결하였다.

제 6 절 미얀마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있는 나라이다. 1885년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 아시아 식민지의 거점이 되었고 1948년 1월 4일 영국에서 독립하며 국호를 버마연방(Union of Burma)이라 하였다. 1989년 국호를 미얀마연방(Union of Myanmar)으로 개칭하였고, 2010년 11월 미얀마연방공화국(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으로 다시 개칭하였다.

서쪽은 인도와 인도양, 북동쪽은 중국, 동쪽은 태국, 라오스에 접한다.

한 신군부가 등장했다. 1990년 총선에서 아웅산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합(NLD)이 압승하였으나 군사정부는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군부독재체제를 유지하였다. 2006년 수도를 양곤(Yangon)에서 밀림지대인 펌마나(Pyinmana)로 옮기고 이름을 네피도(Naypyidaw)로 바꿨다.

가. 일반현황

(1) 국명 : 미얀마 연방 공화국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2) 위치 :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 위치. 동부는 태국 및 라오스, 북부는 중국. 서부는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접경

(3) 면적 : 676,577 km² (한반도의 약 3.5배)

(4) 기후 : 열대성 몬순기후(연평균 기온 27.4°C, 연평균 강우량 2,513mm)

- 여름 : 2월 말 ~ 5월 중순

- 우기 : 5월 하순 ~ 10월 말 (거의 매일 비)

- 겨울 : 11월 초 ~ 2월 중순 (한국의 초가을 날씨와 유사)

(5) 수도 : 네피도 (Nay Pyi Taw)

(6) 인구 : 5,838만 명 (2009년도 정부 발표)

(7) 주요 도시 : 양곤, 만달레이, 뻬마나, 빠떼인, 바고, 빠 등

- 양곤 : 2005년 11월까지 수도였으며 현 경제 중심지 (교역의 80% 수행)

- 네피도 : 2005년 11월부터 행정부가 이전한 새로운 수도

(8) 민족 : 벼마족(70%), 소수족(샨, 카렌 등 130여 종족, 25%), 기타(5%)

(9) 언어 : 미얀마어(정부, 기업인 등은 영어 구사), 소수민족 고유어

(10) 종교 : 불교 89.4%, 기독교 4.9%, 이슬람교 3.9%, 토속신앙 1.2%,

(11) 건국(독립)일 : 1948년 1월 4일(영국으로부터 독립)

(12)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13) 국가 원수

- 빠인 세인(Thein Sein) 대통령. 2011년 4월 1일 취임. (5년 임기)

- 부통령 : 린 아웅 민 우(Tun Aung Myint Oo), 사인 마우 캔(Dr. Sai Mauk Khan)

나. 경제현황

- (1) GDP : US\$ 316억 (2010년 추정치)
- (2) 실질 경제 성장률 : 3.1% (2010년 추정치)
- (3) 1인당 GDP : US\$ 2,834 (2010년 추정치, 구매력 기준)
- (4) 실업률 : 통계 없음
- (5) 물가 상승률 : 10.9% (2010년 추정치)
- (6) 화폐단위 : Myanmar Kyat (Kt)
- (7) 환율 : US\$1 = Kt 840 (2011년 3월 기준, 시장 환율)
- (8) 외채 : US\$ 73.1억 (2010년 추정치)
- (9) 외환 보유고 : US\$ 37.6억 (2010년 추정치)
- (10) 산업구조 : 농림수산업(43%), 공업(21%), 무역 및 서비스업(36%) (2008)
- (11) 교역규모 (2010년 추정치)
 - 수출 : US\$ 88.2억
 - 수입 : US\$ 42.9억
 - 무역흑자 : US\$ 45.3억
- (12) 교역품
 - 수출 : 천연가스, 목재류, 콩류, 섬유류, 수산물
 - 수입 : 기계 및 운송장비, 정유, 철강 및 금속제품, 섬유류, 전기 장비

다. 한국과의 관계

- (1) 체결협정 : 무역협정('64), 뉴스교환협정 ('72), 항공협정('78), 임업
약정('99), 이중과세방지협정('02)
- (2) 교역규모 (2010년)
 - 对 미얀마 수출 : US\$ 478.8백만
 - 对 미얀마 수입 : US\$ 159.9 백만
 - 무역흑자 : US\$ 318.9백만
- (3) 교역품

(4) 투자교류

-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 기준(2011년 3월 말 기준) : 47건 \$ 29억 1,572만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2010년 12월 말 기준) : 136건, \$ 40억 2,072만

(5) 교민 : 총 교민 수 약 1,000명 (2010년, 외교부 추정치)

2. 주요 ICT 지표 분석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30> 미얀마 주요 통신 지표(2010)

총 전화 사용자	3,191,750 (5.4%)
유선전화 사용자	1,090,323
이동전화 사용자	2,101,427
인터넷 호스트	25,690
인터넷 대역폭 (GB)	3.92
인터넷가입자	41,045
인터넷 사용자	380,000
인터넷 게이트웨이	2
패킷 교환	1

<표 4-31> 미얀마 모바일 발급 현황

전화 기종	규격	보급연도
Cellular(09-99, 90)	MHz800	1997
CDMA(Fixed 70,71,72)	MHz2800	1998
CDMA 모바일(09-80)	MHz800	1999
GSM(09-50,20,22,52)	MHz900	2000~01
CDMA(09-68,86)	MHz450	2008
WCDMA(09-55)	MHz1900	2008
GSM Prepaid Card	MHz900	2008
CDMA Prepaid Card	MHz450	2009
CDMA(Fixed Phone)	MHz800	2010
GSM	MHz900(Top Up)	2011.2

나. 이동통신

2010년 1월부터 미얀마의 휴대폰 사용요금이 분당 25차트에서 50차트로 올라 휴대폰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며 하락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MPT GSM의 경우 170만 차트에서(약 1700달러) 110만 차트, WCDMA의 경우 220만 차트에서 130만 차트로 떨어졌다. Celluar의 가격은 110만 차트에서 80만 차트로 급락했다.

미얀마의 휴대폰은 CDMA, GSM, WCDMA, D-AMPS 등이 사용되며, 현재 보급 대수는 48만 51대 정도이다. 2010년에(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휴대폰 9만 1540대, 2011년에는 약 13만대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2011년 최근에 미얀마 행정수도인 50만 차트의 GSM 방식(Top up)을 보급하며 우선적으로 150만 대 가량을 보급할 예정이다.

다. 인터넷

미얀마의 인터넷은 MPT(통신부), Taranarpone Beach, Wimax(무선), Mcill로 설치되었다. 또한 올해 1월 8일부터 CDMA(800Mhz)을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주었다. 사용 신청에는 약 3만 차트(35달러)정도의 비용이 들며, 사용료는 1시간당 240차트(1분당 4차트) 정도 된다.

라. IT 개발을 위해 만달레이 근처 Yatanarpone Cyber City에서 추진 중

IT 개발을 위해 Yadanarpone Cyber City는 만달레이시 근처 Pyin Oo Lwin 지역에서 IT, Mobile, Computer 관련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 이 IT존은 약 1만 에이커의 면적에 공사하고 있다. 아울러 Yatanarpone Cyber City에는 15개의 기업이 투자하며, 그들은 TawtharWin, Yatanarpon Production, TarMoeNae Chan Thar, FISCA, Jade Land, Hightech Princess, MCC Group, Myanmar Info Tech, Maxinet, Global Technology, IGE, Fortune, Yatanarpone Cyber Cooperation, Htoo Group, Asia World사 등이다. 그 중 CDMA 및 모바일 생산

한편 미얀마에 모바일 보급 대수가 많아지고 있어 휴대폰 기계의 수요가 급속히 늘었고 이에 따라 미얀마에 모바일 관련 협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2008년도부터 미얀마 모바일 시스템이 발전되면서 현재는 200개의 Mobile Store가 생겼다. 현 미얀마 통신시장에는 중국, ZTE, Huawei사 등이 점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기기는 주로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Sony, Huawei, Samsung, ZTE, LG 등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마. 미얀마 통신시장 전망

미얀마의 통신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상태이나 향후 수요가 큰 만큼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통신 분야의 특성상 외국기업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운 점은 우리 기업 진출의 장애 요소이다. 한편 미얀마 휴대폰 시장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품질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우리 기업이 미얀마 휴대폰 시장에 고품질의 휴대폰을 수출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급성장하는 미얀마 통신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력 기업과의 합작이 필수적이다. 휴대전화는 물론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의 기술력과 인지도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

바.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32> 미얀마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N/A	N/A	N/A	N/A
수입(%)	N/A	N/A	N/A	N/A

사. 한국의 對 미얀마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33> 한국의 對 미얀마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1,590	-41.0	86	3,124.7
2010	6,169	288.0	15	-82.7
2011(1~9월)	6,266	118.5	30	116.1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개요

MPT(Myanmar Posts and Telecommunications)는 미얀마에서 전기통신 단말 장비를 구입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MPT는 입찰 과정을 운영하고,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장비를 조달한다.

나. 인증 절차

신청인은 MPT에 영어로 작성한 기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MPT가 이 문서를 심사하고 기술 명세를 작성한다. 이후 MPT 대표가 제조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제조업체 자체 연구소에서 제품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후에는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조업체 현장에서 MPT 직원을 훈련시킨다. MPT가 시험 결과를 심사한 후 결과가 적합할 시에 인증을 승인한다.

다. 신청

미얀마에서 인증 신청을 할 때 현지 사무소는 필요 없다. 단, 통신 장비를 거래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MPT는 다음과 같은 제품 문서를 요구한다. 영어로 작성된 문서만 접수한다.

MPT는 문서를 심사하여 제품이 준수해야 하는 기술 사양을 작성한다.

라. 시험

미얀마에는 시험 시설이 없다. 따라서 모든 시험은 제조업체의 현장에서 실시한다. 외국 시험 보고서와 인증서는 미얀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장비는 시험을 거쳐야 미얀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ITU-R 및 ITU-T 권장사항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MPT 대표는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제조업체의 공장을 방문한다. 대표의 방문은 시험을 관찰하고, 장비 사용 및 유지에 대한 훈련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MPT 직원은 미얀마에서 사용되는 모든 전기통신 장비를 설치 및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MPT 대표의 시험 및 방문 비용은 입찰이 낙찰될 때 사업자와 제조업체간에 조인된 계약 문서에 포함된다.

마. 인증

MPT가 시험 결과에 만족할 경우, 미얀마에서의 제품 사용을 허가한다. 라벨은 부착하지 않는다.

바. 기타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변경 여부를 MPT에 통보해야 한다. MPT가 제품의 재시험 여부를 결정한다.

4. MRA 체결 현황

가.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미얀마의 ATRC 회원기관은 Post and Telecommunications Department이며, 현재 MRA 체결 실적은 없다.

제 7 절 필리핀

1. 국가개황

적도의 약간 북쪽, 아시아 대륙 남동쪽의 서태평양에 산재하는 7000여 개의 섬들로 구성된 나라이다. 1565년부터 에스파냐가 정복하였고, 1898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에스파냐-미국 전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1943년 일본 점령을 거쳐 1945년 미국군이 탈환한 후 독립하였다.

정식명칭은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이다. 필리핀해(海), 셀레베스해, 남중국해의 경계를 이루며 타이완[臺灣]섬과 보르네오섬, 셀레베스섬 사이에 있다. 면적은 30만 400km²에 달하는데, 국토를 크게 삼등분 할 수 있다. 곧, 지도상에서 북부의 루손섬과 중부 지역에 군집한 수천 개의 섬인 비사얀제도 그리고 남부 지역의 민다나오섬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는 종족·언어와 같은 문화적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리적 구분에 의한 것이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으로 인근 바다가 태풍의 발생지이며 환태평양조산대에 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말레이시아 사바주(州)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 스프라틀리 군도(Spratly Islands)를 둘러싼 베트남·말레이시아·중국·타이완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국이자 세계 이민 근로자의 주요 출신국으로, 2005년 전 세계 190개국에 필리핀 주민이 진출하였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한 액수가 107억 달러에 이른다.

가. 일반현황

(1) 국명 : 필리핀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3) 면적 : 300,800km² (한반도 1.3배, 7,107개의 섬으로 구성)
- (4) 기후 : 고온 다습 아열대성 기후, 건기(11~5월)와 우기(6월~10월)로 구분
- (5) 수도 :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서울시와 면적 및 인구 유사)
- (6) 인구 : 9,300만 명(2009) (National Capital Region : 1,100만 여명)
- (7) 주요도시 : Manila(160만 명), Quezon City(220만 명)
- (8) 민족 : 말레이계가 주종. 네그리토/인도네시안/중국/메스티조/모로 등 여러 종족 간 혼혈
- (9) 언어 : 타갈로그어(공용어), 영어(상용어)
- (10) 종교 : 로만 카톨릭 80.9%, 기독교 4.5%, 이슬람 5%, 기타 등
- (11) 건국(독립)일 : 1898. 6. 12
- (12)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
- (13) 국가 원수 : Noynoy Aquino(15대 대통령)
- (14) 입법부 : 양원제(협재 상원 24명, 하원 270명)
- (15) 정당 : Lakas-층, NP, PDP, KAMPI, LP, PMP, NPC, GO

나. 경제지표(2009년)

- (1) GDP : US\$ 1,815억
- (2) GDP 성장률 : 7.3%
- (3) 물가 상승률 : 3.8%
- (4) 실업률 : 7.3%
- (5) 화폐 단위 : 폐소(PESO)
- (6) 환율 : US\$ 1 = 43.88('11년 3. 25.)
- (7) 외채 : US\$ 598억
- (8) 연말 외환 보유고 : US\$ 624억
- (9) 산업 구조 : 1차 산업(14.3%), 2차 산업(29.9%), 3차 산업(55.8%)
- (10) 교역 규모 : 수출 - US\$ 383억, 수입 - US\$ 430억(2009년)
- (11) 주요 교역품

다. 한국과의 관계

(1) 체결 협정 : 자원-에너지 협력 협정('05), IT 협력 협정('05) 등

(2) 교역 규모

- 对 필리핀 수출 : US\$ 45.7억 ('09년)

- 对 필리핀 수입 : US\$ 26.5억 ('09년)

(3) 교역품

- 对 필리핀 수출 : 전자부품, 직물, 철강제품

- 对 필리핀 수입 : 전자부품, 농산물, 비철금석

(4) 투자교류

- 우리기업의 투자금액 ; 2,634건, US\$ 22.2억(2009년 누계)

(5) 교민

- 현지교민 86,800명, 단기 체류자 포함 시 약 100,000명 추정.

- 한국 체류 필리핀인 51,000명

(6) 관광객

- 필리핀 방문 한국인 관광객 : 70만 명 ('10년 1위).

- 한국 방문 필리핀 관광객 : 연간 5만 명

2. 주요 ICT 지표 분석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34> 필리핀 방송통신 주요 지표

(단위 : 천 명/천 회선. 2009년 12월 기준)

방송통신 주요 지표	필리핀	보급률(%)
유선전화 가입회선(천 회선)	4,100	4.5
이동통신 가입자(천 명)	74,489	99.0
브로드밴드 가입회선(천 회선)	1,722	1.9
TV 보급대수	10,125	11.0
디지털 TV 가입 회선(천 회선)	313	0.3
케이블 TV 가입회선(천 회선)	1,102	1.2

나. WiMAX

필리핀은 인터넷과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낮고, 국토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속도와 안정성에서 뛰어난 WiMAX 기반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필리핀의 음성통신 서비스 ARPU가 3달러에 불과한 반면,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ARPU는 20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필리핀 통신사업자들은 WiMAX 등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신규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의 WiMAX 도입은 초기단계로 2009년 6월 Globe Telecom의 자회사 Innove Communications가 최초로 모바일 WiMAX(802.16e)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Globe Telecom에 이어 Liberty Telecoms를 인수하고 Quatar Telecom과 조인트 벤처를 결성한 San Miguel Corporation은 2010년 3월 고정형 WiMAX(802.16d)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0년 6월 PLDT의 자회사 Smart Communications도 고정형 WiMAX 서비스를 시작했다.

필리핀 브로드밴드 시장의 주력 상품이었던 HSPA 기반 무선 브로드밴드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용량상의 한계가 있어 향후 통신사업자들은 가정용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WiMAX를 주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 WiMAX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발현되기 위한 전제요건은 이용자들이 지불 가능한 적정수준의 WiMAX 서비스 이용료 책정으로, 향후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부가 해당사업자들의 서비스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필리핀 WiMAX 서비스 확산의 최대 걸림돌은 소득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요금으로, 이는 WiMAX 고객 백내 장치(Customer Premises Equipment, CPE)의 배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 시장 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IPTV

필리핀은 현재 유무선 브로드밴드 시장이 성장 단계에 돌입하면서 IPTV 시장도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있다. Credit Suisse에 따르면, 2009년 12월 현재 필리핀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70만 명이며, 이 중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비중이 63.4%인데, 2012년에는 그 비중이 75.5%로 증가할 전망이다. 도서 지역이 많고 인구 밀도가 낮은 필리핀의 지형적 특성이 필리핀의 유선 통신 시장의 성장을 제한했으나, 사업자들의 xDSL, WiMAX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현재 1위 통신사업자인 PLDT만이 IPTV 서비스를 시행 중이나 타 통신사업자, 방송 사업자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어 시장 확대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필리핀 도서 지역을 잇고, 이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팜, 미국과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 구축이 진행 중이어서 필리핀 통신 사업자들은 장기적으로 자국뿐 아니라 해외 시장과 결합되는 거대 시장을 가입자 혹은 이용자 풀로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낮은 PC 보급률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통신 보급률(2009년 인구 대비 99%)을 고려할 때, 필리핀의 IPTV 서비스는 초기 시장부터 모바일과의 연계 혹은 모바일 IPTV로의 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 모바일 TV

필리핀 1위 유·무선 통신 사업자 PLDT의 자회사 Smart Communications와 필리핀 2위 이동통신 사업자 Globe Telecom이 모바일 TV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나 각각 2010년 4월과 2010년 2월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이다.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는 2010년 지상파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일본의 ISDB-T를 선정하였다. 모바일 TV와 관련해서는 주파수 배분이나 표준 등에 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힌 바 없으며, 모바일 방송을 부

2010년 DVB-H 기반 서비스와 3G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가 모두 종료됨으로써 현재 필리핀의 모바일 TV 시장은 상용서비스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my TV’를 제공했던 통신사업자 PLDT가 전사적 차원에서 아시아 전역의 방송/미디어 업체를 인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적정 시점에서 서비스 재개 여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필리핀 정부가 2010년 지상파 디지털 TV 표준으로 ISDB-T를 선정하는 등 필리핀 디지털TV 방송시장이 형성 단계임을 감안할 때 모바일 TV 시장이 다시 개화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2009년 9월 기준 필리핀의 TV 시청 가구는 약 1,359만 가구로 가구 기준 보급률이 75%를 기록하고 있으며, 케이블·위성 방송 서비스를 포함한 유료 TV 서비스 가입 가구는 약 150 만 가구로 아직 지상파 TV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 케이블 TV 협회 PCTA(Philippine Cable Television Association)는 케이블 TV 시청자들이 33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과반 수 이상이 불법 시청을 하고 있어, 유료 TV 시장이 성장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의 방송 서비스 사업은 거대 미디어 그룹 및 통신 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 업체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ABS-CBN은 2008년 필리핀 최대 케이블방송 사업자 SkyCable을 인수함에 따라 유료 TV 플랫폼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필리핀 최대 통신사업자 PLDT는 HomeCable 인수 및 자회사 MediaScape 산하 위성방송 송출 등 미디어 사업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향후 시장 지배적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시청(Piracy) 가구가 많아 앞으로도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필리핀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융합법안(Convergence Bill)’과 ‘케이블 TV 법안(Cable Bill)’에 대한 심의 통과

바. 브로드밴드

ITU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필리핀의 브로드밴드 서비스가입자는 172만 명, 인구 기준 보급률은 1.9%로 나타났다. 도서지역이 많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유선통신 인프라가 취약해 다른 아태지역 국가 대비 유선 브로드밴드의 보급률이 낮으며, 상대적으로 보급이 용이하고 사용이 간편한 무선 브로드밴드의 보급률이 높다.

필리핀은 낮은 PC 보급률과 고가의 서비스 이용료로 인해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매우 저조하여 정부 차원에서 PC 보급률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2004년부터 Intel, AMD와의 계약을 통해 필리핀 국민들을 위한 저가 PC 보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의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은 수익 확보를 위해 고가의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PC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 향상이 브로드밴드 시장 성장의 전제 조건이 될 것이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Pyramid Research는 필리핀 브로드밴드 시장이 유·무선 브로드밴드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히 전개되며, 향후 5년간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들은 필리핀의 전체 브로드밴드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0년 73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7.9%를 기록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선 인프라가 부족한 필리핀 통신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무선 브로드밴드가 브로드밴드 시장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유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확대되기 힘든 필리핀에서는 현재 3G 기반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4G 기반의 WiMAX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 이동통신

ITU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필리핀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7,448만 9,000명, 인구기준 보급률은 81%로 나타났다. 2009년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은 3G·3.5G 서비스 개시와 함께 무제한 선불요금제 및 SMS 결합상품에 대한 마케팅 효과에 힘입어 전년대비 가입자 규모가 10% 이상 증가하였다. 2009년 필리핀의 3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413만 5,000명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으며,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은 비음성(Non-voice)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으며, SMS를 중심으로 한 부가서비스가 이동통신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 데이터 매출에서 SMS가 차지하는 비중은 93%로, 필리핀 이동통신 가입자들은 월평균 600건의 SMS를 전송(미국 월 평균 SMS 전송건수: 420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인스턴트 메시징(IM)이나 동영상 다운로드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통신사업자들에게 SMS는 수익원으로서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필리핀에서는 여전히 확고한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NTC)가 2010년 3G 사업자 선정을 위한 추가 주파수 경매 최종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3G 이동통신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이동통신 시장의 특징은 선불제 가입자 비중이 크다는 점으로, 선불제 가입자의 ARPU가 후불제 가입자의 1/6 수준에 불과해 향후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후불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아·태지역 국가 대비 3G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일찍 상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5%가 넘는 선불제 가입자 비중으로 인해 ARPU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다.

아. 유선통신

ITU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필리핀의 유선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410만 명, 인구 기준 보급률은 4.5%를 기록해 아·태지역 국가 중에서도 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필리핀 정부가 발표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Access) 규제 정책에 힘입어 1999년 보급률이 9%를 넘어섰으나 2000년대 들어서며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급률이 급증하며 유선통신 서비스 보급률은 수년 동안 3~4%대에 머물러 있다.

2009년 기준 필리핀의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유선통신 부문에 대한 해당 사업자들의 투자 규모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보급률 또한 현재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필리핀 유선통신 시장은 고정형 무선서비스와 같이 이동통신 기반의 유선전화 대체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VoIP 서비스 확대로 데이터부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35> 필리핀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56.2	58.1	54.1	54.2
수입(%)	45.4	43.8	34.7	34.5

차. 한국의 对 필리핀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36> 한국의 对 필리핀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1,432,946	-9.0	1,360,650	1.7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 개요

국립전기통신위원회(NTC)는 모든 유선 및 모바일 전기통신 단말 장비의 형식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규제기관이다. 단, 신청인은 NTC 대신 다양한 전기통신 사업자로부터 직접 형식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과정은 동일하다. 즉,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시험을 거치고,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인증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즉시, 네트워크 사업자는 문서를 NTC에 제출한다.

CPE에 대해 NTC나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정하는 형식 인증은 기타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정해야 한다. 단, 관행상 신청인이 해당 사업자의 독점 네트워크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식 인증 제품을 재제출해야 할 수 있다. 현지의 장비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필리핀 전자전기통신재단(PETEF)은 NTC에게 국내 네트워크 사업자 전원에게 적용되고 이들이 인정하는 형식인증 체제 설정에 대해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인증 유형

형식 승인은 직, 간접적으로 공용 전기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단말 장비의 의무사항이다. 다음의 경우 형식 승인이 필요하다.

- PSTN 연결을 목표로 하는 가입자단말장비(CPE)의 신규 모델
- 기존 형식 인증을 받은 CPE의 변경
- 기존 형식 인증을 받은 CPE의 상호 혹은 모델 번호 변경

다. 인증 절차

필리핀 현지 사무소가 있을 경우 영어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NTC에 제출한다. 현지 사무소가 없을 시에는 필리핀 대리인을 조

NTC가 신청서를 심사하고, 시험 연구소가 제품을 평가하여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NTC에 제출하면 NTC가 시험보고서를 심사한다. 외국 시험 보고서 및 인증서는 필리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보고서가 승인되면 인증이 완료된다.

라. 신청

신청 서식은 NTC나 네트워크 사업자를 통해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작성한 서식을 통신기획개발부(TPDD)-NTC/네트워크 사업자 장비표준과에 제출해야 한다. NTC에서 추가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신청인의 지위와 인증을 받아야 할 장비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단말장비의 경우, 다음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 장비 브로슈어/기술 명세
- 장비의 개략도 및 회로도
-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험 보고서 및 인터페이스 승인 증서 사본(인증 원본)
- 수입세 및 기타 관세 지급 증빙(혹은 장비가 “비 달러 수입 상태” 하에 반입될 경우 재수출 인증 사본)
- 기타 NTC가 요구하는 허가서나 세관 통과 서류.

무선 송신 및/혹은 수신 성능이 있는 장비는 NTC의 시험을 비롯하여 추가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제반 문서의 사본으로 접수할 수도 있지만 회사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문서는 NTC/네트워크 사업자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반 서류는 영어로 접수해야 하며, 접수 시에 현지 사무소가 필요하다. 신청인은 전원 필리핀에서 딜러로 인정받고, 거래위원회(Exchange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한다.

마. 시험

모든 시험은 전기통신 사업자, PLDT, Piltel 및 Extelcom에서 실시한다. 당분간 NTC는 독립된 시험 연구소를 인정할 계획이 없다.

신청인은 시험 연구소에 장비가 전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대규모 장비(PBS와 같이)일 경우, 시험은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은 해당 시험 연구소와 이를 논의해야 한다.

모든 전기통신 단말 장비는 규약 명령 No.10-11-90, "가입자 단말 장비 인터페이스 파라미터 및 유형 승인 절차"에 명시된 국가 지정 절차에 따라 시험을 거친다. 신청인은 영어로 작성된 본 문서를 NTC로부터 직접 입수할 수 있다.

한편 필리핀에는 현재 EMC 요건이 없다. 단, 신청인이 해당 CISPR 및 EN EMI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가 있을 경우, 이러한 문서를 해당 시험 연구소에 제출해야 한다. IEC 65를 토대로 하고 메인에 연결된 전기 기기에 대해서는 현지 안전 표준(PNS256)이 있다. 인터페이스 시험은 모든 장비의 의무사항이다. 시험 비용은 제품마다, 연구소마다 다르다.

시험 기간은 일반적으로 15일이며 PABX와 같이 복잡한 대형 장비의 경우 최장 30일까지 연장된다. 시험이 끝난 이후, 연구소는 시험의 완료 일로부터 5일 이내에 NTC/네트워크 사업자에게 시험 보고서 사본을 직접 제출한다.

바. 인증

NTC는 신청 패키지와 시험 보고서를 심사하고, 제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품 형식 인증 증서를 발급한다. 형식 인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납부하며, 신청 수수료, 인증 수수료, 해당 시험 수수료로 구성된다. NTC는 이러한 수수료 총액을 포함한 송장을 신청인에게 제출한다. 형식 인증 전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증된 장비는 인증번호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인증의 효력은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혹은 제품이 변경될 때까지 인정된다.

NTC가 신청인에게 부적격 통보를 하면 신청인은 필리핀 국가 표준에 맞게 제품을 변경하여 추가 수수료의 납부 없이 재제출하여 시험을 받을 수 있다.

사. 기타

인증을 거친 제품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NTC에 통보해야 한다. 신청인은 신청 서류를 재제출하고, 필리핀 내에서 제품을 재시험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NTC는 형식 승인 증서를 새로 발급한다. 상호나 모델 번호가 변경되는 형식 승인 장비 역시 인증 과정 전체를 새로 거쳐야 한다.

4. MRA 체결 현황

가. APEC TEL MRA (정보통신분야 MRA)

필리핀은 2005년 시험기관 및 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MRA 1단계 참여에 서명하였으며, 2006년에는 인증기관(인증서)을 상호 인정하는 MRA 2단계 참여에 서명하였다.

나.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필리핀의 ATRC 회원기관은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으로서, 기구 내 MRA 체결 실적은 없다.

제 8 절 싱가포르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국가로, 1819년 이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1959년 6월 새 헌법에 의해 자치령이 되었다. 1963년 말레이연방·사바·사라왁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결성하였으나 1965년 8월에 분리 독립하였다.

정식국명은 싱가포르 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며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였다. 1963년 현재의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가지는 섬의 남부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건설 당시 유럽인·인도인·말레이인 등 종족별 주거지로 나뉘어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다. 해상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 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변창하였다.

가. 일반현황

- (1) 국명 : 싱가포르 (The Republic of Singapore)
- (2) 위치 : 동남아, 적도 근처 (북위 1.09-1.29도, 동경 103.36-104.2도)
- (3) 면적 : 약 712.4km² (서울시의 1.18배)
- (4) 기후 : 열대성 (연중 고온 다습)
- (5) 수도 : 싱가포르 (도시 국가)
- (6) 인구 : 508만 명 (2010년)
- (7) 주요 도시 : 싱가포르 (도시 국가)
- (8) 민족 : 중국계(74.1%), 말레이계(13.4%), 인도계(9.2%), 기타(3.3%)
- (9) 언어 :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
- (10) 종교 : 불교 32.3%, 기독교 18.3%, 이슬람교 14.7%, 토교 10.0%

- (11) 건국(독립)일 : 1965년 8월 9일(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분리, 독립)
- (12)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13) 국가원수
 - 대통령 : S. R Nathan. 2005. 9. 1. 취임 (임기 6년)
 - 총리(실권자) : Lee Hsien Loong. 2004. 8. 취임 (임기 5년). 2006.5 및 2011. 5 총선에서 집권당 승리를 이끌

나. 경제현황 (2010)

- (1) GDP : US\$ 2,227억
- (2) 경제성장률 : 14.5%
- (3) 1인당 GDP : US\$ 43,867
- (4) 실업률 : 2.2%
- (5) 물가상승률 : 2.8%
- (6) 화폐 단위 : 싱가포르 달러 (S\$)
- (7) 환율 : US\$1 = S\$ 1.3635
- (8) 외채 : 0 (없음)
- (9) 외환 보유고 : US\$ 2,258억
- (10) 산업구조 : 제조업(22.2%), 도소매업(16.5%), 기업서비스(14.0%), 금융서비스(11.9%), 기타 서비스업(10.7%), 운송 및 저장업(8.6%), 건설업(4.5%), 정보통신 서비스업(3.6%) 등
- (11) 교역규모 : US\$ 6,616억

(12) 교역품목

- 수출 품목 : 집적회로, 원유 및 연료유, 메모리, 통신기기 등
- 수입 품목 : 집적회로, 원유 및 연료유, 통신기기 등

다. 한국과의 관계

- (1) 체결 협정 : 항공협정('72), 이중과세방지 협정('79), 해운협정('81),

(2) 교역 규모 (2010)

- 對 싱가포르 수출 US\$ 15,244백만
- 對 싱가포르 수입 US\$ 7,850백만
- 한국의 5대 수출국, 14대 수입국

(3) 교역품

- 對 싱가포르 수출 : 집적회로반도체, 선박, 경유, 제트유 및 등유, 중유 등
- 對 싱가포르 수입 : 집적회로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중유, 무선통신 기기
부품 등

(4) 투자 교류

- 對 한국 투자 : S\$ 23억 463만 (2009년 연말 기준)
- 對 싱가포르 투자 : US\$ 5억 58만 (2010년 연간/신고기준)

(5) 교민 : 약 2만 명

2. 주요 ICT 지표 및 분석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37> 싱가포르 방송통신 주요 지표

(단위 : 천 명/천 회선. 2009년 12월 기준)

방송통신 주요 지표	싱가포르	보급률(%)
유선전화 가입 회선	1,852	39.1
이동통신 가입자	6,652	140.3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1,123	23.7
TV 보급대수	1,085	22.9
디지털 TV 가입 회선	610	12.9
케이블 TV 가입 회선	524	11.0
디지털 위성 TV 가입 회선 (DST)	0	0.0
지상파 디지털 방송 가입 회선 (DTT)	34	0.7

나. WiMAX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 7월, 6개 통신 사업자에게 2.3~2.5GHz 주파수 대역에서 WiMAX 라이선스를 할당하고, ‘Intelligent Nation 2015’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iMAX 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싱가포르 전 지역에 무선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2010년 3월 기준 싱가포르 전역에 WiMAX 망을 구축한 사업자는 SingTel과 QMax뿐이며, QMax만이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iMAX 라이선스를 보유한 SingTel과 M1(Mobile One)이 2010년 LTE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테스트 결과에 따라 WiMAX 와 LTE 중 선택, 혹은 병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국토가 좁고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90%에 육박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WiMAX 서비스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며, 항만 시설 및 산업 인프라 용도의 공공 및 기업 시장을 중심으로 WiMAX 서비스가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모바일 브로드밴드 분야 역시 300만 대 이상 보급되어 모바일 WiMAX의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 확보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IPTV

싱가포르 IPTV 시장은 유선(유선전화 및 브로드밴드) 및 이동통신시장의 포화 상태에 맞물려 가입자 확보 차원의 경쟁보다는 NGN 환경 하에서 사업자들의 콘텐츠·서비스 경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주요 IPTV 관련 사업자는 SingTel과 StarHub, M1이다.

싱가포르의 유료 TV 시장은 케이블 TV 사업자이자 2위 통신 업체인 StarHub TV가 독점해왔으나, 2007년 SingTel이 IPTV 서비스를 개시하여 유료 TV 시장에서도 두 사업자의 경쟁 관계가 형성되었다.

싱가포르의 IPTV 시장은 정부 주도 하에 추진 중인 NGNBN의 구축에 따라 광대역 유/무선 네트워크에 기반한 콘텐츠/서비스 경쟁의 일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ingtel과 Cable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tarHub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연계되는 통신/방송 사업자 간 다양한 경쟁과 협력 관계가 예상된다.

라. 모바일 TV

싱가포르는 2006년 이후 DVB-H 시범 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DAB 인프라도 99%의 커버리지가 구축돼 있어 모바일 TV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방송네트워크 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3G 스트리밍 방식의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이동통신 보급률은 140.4%, 2009년 12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3G 비율도 46%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매우 발전된 시장이다. 3G 스트리밍 모바일 TV 서비스가 발달한 것은 물론, DVB-H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장기간 테스트를 진행하며, 신중하게 시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지역과 실내 커버리지 확보의 어려움 등이 테스트에서 지적되었다. 또한 모바일 TV 전용 콘텐츠와 양방향 서비스 형 콘텐츠 등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 문제도 중점적인 해결 과제 중 하나이다. 한편, 싱가포르는 DAB 커버리지가 99% 구축되어 있어 해당 인프라를 활용해 DMB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투자비 절감의 이점이 있다.

마.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싱가포르의 TV 보유 가구는 108만 5,000 가구로 구성된 소규모 시장이다. 2009년 기준, 싱가포르 유료 TV 가입가구는 63만 가구에 불과했다. 싱가포르의 무료 지상파 TV 부문은 MediaCorp이 독점하고 있으며, 유료 TV 부문은 케이블 TV 사업자인 StarHub TV가 독점해 왔으나,

위성 방송은 직접 수신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자국 대상 서비스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으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위성방송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등 싱가포르에 본사를 둘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의 해외 위성 방송 사업자들이 싱가포르를 발신 기지국으로 삼고,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위성방송을 실시한다.

싱가포르 방송 서비스 시장은 무료 지상파 TV 사업자인 MediaCorp과 유료 케이블 TV 사업자인 StarHub TV 등 두 사업자가 견고한 독점적 시장을 구축하고 있고, 싱가포르 정부 역시 별도의 신규 방송사인가 또는 경쟁체제 구축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 및 본격적인 경쟁 체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ingTel을 비롯한 타 사업자들이 IPTV 및 모바일 TV 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고 있어, 방송 서비스 시장 내에도 경쟁 환경이 차차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방송 시장은 소폭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방송 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해외 사업자와의 협력 노력이 이어지면 앞으로 새로운 시장 성장 동력의 발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 브로드밴드

싱가포르의 정보통신개발청(IDA)이 발표한 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는 2009년 기준 581만9,000명으로 가구당 보급률은 142.2%이었다. 이 통계에는 xDSL, 케이블 모뎀, 전용선 인터넷 등 유선 브로드밴드를 비롯한 3G, 3.5G/HSDPA, WiMAX 또는 Wi-Fi 핫스팟 서비스 등을 이용한 무선 브로드밴드 기술까지 포함시켰다.

유선 브로드밴드 기술방식별로는 2009년 기준 DSL(47.3%)과 케이블(52.7%)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최근 케이블 가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케이블 사업자인 StarHub가 100Mbps급 브로드밴드 서비스

<표 4-38> 싱가포르 기술방식별 유선 브로드밴드가입자 수 추이
(단위 : 명)

기술구분	2007	2008	2009
xDSL	463,400	502,300	518,300
케이블모뎀	395,600	471,500	577,399
전용선	3,900	-	-
합계	862,900	973,800	1,095,699

싱가포르의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142%로 이미 포화 단계이지만, 2010년부터 제공될 NBN 기반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전환수요 중심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사. 이동통신

싱가포르의 이동통신 시장은 2009년 12월 기준 가입자 수 685만 7,000명, 인구 당 보급률 137.5%로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 2005년 10.3%, 2006년 8.9%로 전년 대비 비교적 둔화된 증가율을 보이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HSPA 기반 무선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2007년에는 전년 대비 23.8%의 높은 가입자 증가율을 기록하고 성장세에 들어섰다. 2009년 12월 기준 3G 가입자는 전년대비 28% 증가한 316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6.0%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 이동통신 시장은 음성 가입자 포화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새로운 3G 기술(HSDPA, HSPA+)을 도입하며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주력한 결과 300만 이상의 모바일 브로드밴드 가입자를 확보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SingTel을 제외한 StarHub와 M1이 21Mbps급 HSPA+ 서비스를 상용화했으며, SingTel 역시 LTE 상용화 추이에 따라 HSPA+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이동통신 시장은 2G 가입자의 3G 전환, 모바일 브로드밴드 시장 확대의 두 가지 요인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 유선통신

2009년 12월 기준 싱가포르의 유선통화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189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가구당 보급률은 97.0%로 나타나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싱가포르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미약하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구당 복수 유선통화 가입자 수 및 VoIP 가입자 수가 함께 집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 통신 사업자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부문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유선통화 수요 감소 및 유선통화 가입자 이탈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가입자 이탈을 완화시키기 위한 월정액 무제한 요금제 도입 및 단말기 요금·기본료·통화료 무료 등의 가격 인하 전략으로, 유선통화 매출 역시 전반적인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39> 싱가포르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45.6	36.2	35.9	35.4
수입	38.3	30.7	28.2	28.2

차. 한국의 对 싱가포르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40> 한국의 对 싱가포르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4,504,779	-1.5	5,757,201	-6.8
2010	5,433,373	20.6	5,010,728	-13.0
2011(1~9월)	4,156,242	-5.5	2,929,022	-10.6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 개요

싱가포르에서 승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IDA)이다. 인증 업무 외에, IDA는 싱가포르 정보통신 부문의 발달, 진흥, 규제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업무가 있다.

싱가포르의 주요 인증 경로는 장비 등록밖에 없다. 이는 2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 (1) 단순 장비 등록(SER) 제도 : 이는 공급업체의 준수선언(SDoC)에 의한 일반적 장비 유형의 자가 인증을 규정한다.
- (2) 종합 장비 등록(GER) 제도 : 이는 IDA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이나 IDA 자체에 의한 인증을 조건으로 하는 장비 등록을 규정한다. 신기술을 사용하거나 광범위한 전파 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일부 장비 유형은 GER 제도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기존의 종합 승인(GAP) 및 유형 승인(TAP) 제도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는다. TAP 제도 하에서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존 인증서가 유효하고 장비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IDA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GAP 제도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단일 회선 장비는 공급업체에서 해당 장비가 IDA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인증이 면제된다. 단, 기존에 GAP에 따라 등록된 장비는 “IDA 기준을 준수한다.”는 라벨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마크가 이미 적용된 GAP 등록 장비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과도기가 적용된다.

통신이나 제어 신호 전송 매체로 전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물품인, 이른바 “전력선” 장비는 IDA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이러한 장비는 전파 장애에 관한 IDA 요건뿐만 아니라 해당 PLC 네트워크 사업

나. 인증 절차

IDA는 외국 제조업체의 직접 등록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IDA나 TAS가 발급한 통신 딜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회사여야 한다. 싱가포르 MRA 제휴 국가에서 설립된 제조업체나 공급업체에서 등록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현지 대리인이 있어야 한다.

장비가 단순장비등록(SER) 제도에 적합하고 IDA 요건 준수를 인증하는 시험보고서가 있으면 단순장비등록 제도를 이용한다. 장비가 단순장비등록 제도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단순장비등록 제도에 적합하더라도 IDA 요건 인증 보고서가 없으면 종합장비등록 제도(GER)를 이용한다.

(1) 단순장비 등록제도 : 신청서, SDoc, 보완정보 및 수수료를 제출해 야 한다. 제 3의 연구소와 제조업체 자체 시험 시설의 EMC, 안전 및 장애 시험 보고서는 공급업체의 준수선언을 입증하는 문서로 인정된다. 단, GER 제도에 준하는 장비 등록의 경우, 이러한 보고서는 IDA 공인 시험 연구소나 인증기관, 혹은 IDA 자체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출한 서류를 IDA가 검증하고, 장비가 적합할 경우 IDA가 등록 번호를 발급하고 장비를 등록 장비 명단에 입력한다. 장비에 준수 라벨을 부착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2) 종합장비 등록제도 : IDA 공인 기관에서 장비의 적합 인증을 받은 후에 신청서, SDoc, 준수 인증서, 보완 정보 및 수수료를 제출 한다. IDA가 정보를 검증한다. 공인 기관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IDA의 장비 평가를 받는다. 이후 신청서, SDoc, 시험 보고서, 보완 정보 및 수수료를 제출한다. IDA가 제출물을 평가하여 장비가 적합하면 IDA가 등록 번호를 발급하고 장비를 등록 장비 명단에 입력한다. 장비에 준수 라벨을 부착하면 인증이 완료된다.

다. 신청

제반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며 종합 장비 등록 제도(q.v.)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SER 제도를 통해 등록을 하려면, 공급업체는 원 장비 제조업체나 기타 공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시험 결과나 장비 인증 증거를 토대로, 해당 기준에 대해 자체 준수 평가를 실시 해야 한다.

SER 제도에 따른 등록 신청은 IDA Telecoms Licensing System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하거나, IDA 웹사이트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를 동봉해야 한다.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통신장비 등록을 위한 IDA 가이드 부록 A5에 명시된 대로 공급업체가 작성한 준수선언(SDoC)
- 장비 전면, 후면, 측면과 상호 및 제품명 표시된 제품 라벨 컬러 사진 4장
- 기술 설명 및 판매 브로슈어
- 모델당 등록 수수료 S\$100(환불 불가)

채래식으로 작성한 신청서는 IDA 자원관리&표준과 담당자(장비준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계좌로 수표 혹은 전신환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표 혹은 전신환에는 신청인 및 등록을 요청하는 장비의 내역을 동봉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현지 사무소가 필요하다.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신청인은 IDA나 TAS가 발급한 유효한 전기통신 딜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 대리인을 고용해야 한다. IDA는 외국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지 않는다. 본 대리인은 SDoC를 제시해야 하며 싱가포르 제반 요건에 적합한 장비 마케팅을 담당한다.

신청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IDA는 신청서를 받지 않으며 패키지를

(2) 종합 장비 등록제도(GER) : 종합 장비 등록 제도는 모든 유형의 통신 장비에 적용되며, 공급업체가 IDA가 만족할 만한 싱가포르 요건 준수를 증명하는데 적합한 기준 시험 보고서나 인증서를 입수하지 못할 경우 이용한다. 이에 덧붙여, 일부 장비 유형은 SER 제도의 제반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며 GER 제도를 통해서만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로는 다음 장비가 있다.

- ISDN 장비
- PABX, 키 전화, 멀티라인, 음성 메시징 장비
- 코인 작동 및 기타 유료 전화
- 무선 데이터, VHF 및 UHF 트랜스시버
- 무선 호출기
- 무선 기지국
- 무선 광대역 접속 장비

GER 제도를 이용하는 신청인은 IDA 공인 인증기관에서 장비의 인증을 받거나 공급업체 자체 준수 선언을 IDA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다. GER 제도에 따르는 등록을 원하고, IDA 공인 인증기관에서 장비를 인증 받은 신청인은 다음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통신장비 등록을 위한 IDA 가이드 부록 A5에 명시된 대로 작성한 공급업체의 준수선언(SDoC)
- IDA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싱가포르 요건 준수 인증서.
- 장비 전면, 후면, 측면과 상호 및 제품명이 표시된 제품 라벨 컬러 사진 4장
- 기술 설명 및 판매 브로슈어
- 모델 당 등록 수수료 S\$100 (환불 불가)

- 통신장비 등록을 위한 IDA 가이드 부록 A5에 명시된 대로 작성한 공급업체의 준수선언(SDoC)
- 장비 전면, 후면, 측면과 상호 및 제품명 표시된 제품 라벨 컬러 사진 4장
- 장비에 대한 종합 설명
- 기술 설명 및 판매 브로슈어
- 싱가포르 요건 준수를 증명하는 시험 보고서
- 지원 시설 내역
- 사용설명서 사본
- 등록 수수료. 수수료는 장비 유형에 따라 모델마다 다양하며, 환불하지 않는다.

신청 서류가 불완전할 경우, IDA는 신청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당해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송한다.

(3) 등록 면제 장비 : 일반 승인(GAP) 제도에 따라 기준에 등록한 단일 회선 장비는 공급업체에서 해당 장비가 IDA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신규 제도에 따른 등록이 면제된다. 이러한 장비 유형으로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화기(표준/다기능/영상/데이터/교환)
- 회선 인터페이스
- 무선 전화기
- 전화 부속품
- 오토 다이얼러
- 자동응답/녹음기
- 발신번호 표시장비
- 보안 경보 시스템
- 팩스 트랜스시버/팩스 모뎀
- 음성 대역 모뎀
- EFTPOS/CCAT 장비

이러한 장비 공급업체는 SER이나 GER 제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사 장비를 등록할 수 있다.

라. 시험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장비가 해당 사양 조건에 부합하고 싱가포르 PSTN과 기능이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 IDA 등록을 추진하는 장비가 해당 요건 일체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다. 따라서 공급업체는 장비 제조업체나 제3의 적격 연구소의 적합한 시험 프로그램을 거쳤음을 증명해야 한다. 공급업체의 준수 선언(SDoC)은 이러한 시험을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신청인이 기존 제3자 인증에 대한 SDoC를 토대로 종합 장비 등록(GER) 제도에 따르는 등록을 추진할 경우, 해당 인증은 독립된 시험 연구소나 IDA 공인 인증기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마. 인증

신청 서류를 접수한 이후, IDA는 문서 평가를 통해 제품의 검증 혹은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본 과정은 주로 신청서 접수일 이후 3일에서 10일이 소요된다. 평가 비용은 신청 수수료에 포함된다. 이 기간 동안 IDA로부터 질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문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뢰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IDA는 신청을 기각한다.

해당 평가 과정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IDA는 해당 장비를 자체 등록 장비 명단에 등록한다. SER 제도에 따라 등록한 장비에 대해서는 S1234-YY 형태로, GER 제도에 따라 등록한 장비에 대해서는 G1234-YY 형태로 개별 등록 번호를 부여한다. 신청인은 등록 여부와 장비에 인증된 해당 네트워크나 무선 장애 개요에 대해 통보를 받는다. 단, 정식 등록증서는 제공하지 않는다. 등록 장비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공급업체의 준수 선언은 등록기간으로부터 최소한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신청인이나 싱가포르 대리인은 다음 문서를 포함하여, 장비의 IDA 요건 준수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비치해야 한다.

- 장비 설명
- 기술 데이터 및 판매 브로슈어
- 시험 보고서
- 지원 시설 내역
- 사용 설명서

IDA는 지속적인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후 시장 감독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효한 등록 기한 동안 하시라도 당해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 제품은 IDA 준수 라벨 사본으로 식별해야 한다. 본 라벨은 제품 자체에 부착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봉하는 사용 설명서나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다음의 두 정보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마크나 글자의 크기나 색상은 관계없다.

- (1) “IDA 기준을 준수함”이라는 설명
- (2) 공급업체 식별 코드. 코드는 딜러의 개별 면허 번호나 딜러의 업종 면허 등록 번호로 한다.

또한 모든 판매 장비 물품에는 다음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

- 장비의 사용, 설치, 판매 후 유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며, IDA는 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도

- 네트워크 사업자의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등록 장비의 사용은 다양한 서비스 제도에 적용되는 요금 및 제반 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 유효한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가 필요한 모든 경우 IDA로부터 운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등록은 5년 동안만 인정된다. 신청인은 현 등록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이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신청 서식은 IDA에서 구할 수 있다. IDA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제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추가로 5년 동안 등록을 연장한다.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만료가 된 등록은 취소되며, 해당 장비는 싱가포르에서의 사용 인증이 중단된다.

바. 기타

등록 장비 공급업체는 변경 장비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변경안을 IDA에 통보해야 한다. IDA는 두 유형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 (1) 1종 - IDA 기술 사양의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즉.
 - 밀폐함의 규모, 모양, 색상, 원료의 변경
 - 드라이버나 소프트웨어의 변경
 - 부품이나 개략도의 변경 없이 인쇄 회로 보드 레이아웃에 가하는 변경.

공급업체는 1종 변경 상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단, 변경의 성격이나 범위를 IDA에 통보해야 한다. IDA의 재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 (2) 2종 - IDA 기술 사양의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즉,
 - 송신 안테나의 변경

- 기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변경
- 1종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 기타 변경

공급업체는 해당 등록 패키지와 함께 IDA에 신규 등록 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며, IDA가 재등록을 확인할 때까지 싱가포르에 사용될 변경 장비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 IDA는 2종 변경이 적용되는 장비의 재등록에 대해 모델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공급업체는 판매한 장비에 대해 적절한 설치 및 판매 후 유지 시설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IDA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기재된 장비 유형이 판매되거나 채용된 고객의 성명 및 주소를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IDA는 제품이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정지 혹은 철회할 수 있다.

4. MRA 체결 현황

가. APEC TEL MRA (정보통신분야 MRA)

싱가포르는 MRA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시행하고 있다. 일본과는 2002년 1월, 미국과는 2003년 10월 MRA 2단계를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과 1999년 7월 MRA 1단계 협정을 체결하였다.

나.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싱가포르의 ATRC 회원 기관은 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이다.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2004년 4월), 브루나이(2004년 5월), 말레이시아(2005년 1월)와 MRA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적합성평가 기관 수인식전은 없다.

제 9 절 태국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에 있는 나라이다. 19세기에 유럽 열강의 압박 속에서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함께 근대화 실행과 영국과 프랑스의 대립을 이용함으로써 식민지화의 위기를 벗어났다. 1932년 입헌군주국으로 발족하였고, 1939년 국호를 시암(Siam)에서 타이로 변경하였다.

정식국명은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이고, 프라테트 타이(Prathet Thai) 또는 무양 타이(Muang Thai)라고도 한다. 국명은 타이어(語)로 '자유'를 의미하며,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족(族)을 가리키기도 한다. 한문으로 음차해 태국(泰國)이라고도 부른다.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타이만(灣)과 국경을 접하고, 서쪽으로 안다만해(海), 남동쪽으로 시암만(灣)에 면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과 동맹을 맺어 연합군 측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가. 일반현황

- (1) 국명 : 태국 (The Kingdom of Thailand)
- (2) 위치 : 동남아시아 (북위 : 5.37~20.27도, 동경 : 97.22~105.37도)
- (3) 면적 : 514천 km² (한반도의 약 2.3배)
- (4) 기후 : 열대 몬순 기후 (건기 : 11월~2월, 우기 : 7월~10월)
- (5) 수도 : 방콕 (Bangkok)
- (6) 인구 : 6,780만 명
- (7) 주요도시 : Bangkok(566만 명), Nakhon Ratchasima(255만 명),
- (8) 민족(인종) : 수수 태국인(75.9%), 츠크제(14.0%), 만세수제(1.1%)

(10) 종교 : 소승불교(90%), 회교(6%), 기독교(2%), 기타(2%)

(11) 건국일 : 1782년 4월 6일 (현 왕조 출범일)

(12)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13) 국가원수

- 국왕 : Rama IX(Bhumibol Adulyadej)

- 총리 : Abhisit Vejjajiva

나. 주요경제지표 (2010)

(1) GDP : US\$ 3,177억

(2) 실질경제성장률 : 7.8%

(3) 1인당 GDP : US\$ 4,719

(4) 실업률 : 1.1%

(5) 물가상승률 : 3.3%

(6) 화폐단위 : Baht, Satang (1/100바트)

(7) 환율 : \$1 = Baht 30.2 (2011년도 1분기 기준)

(8) 외채 : US \$ 818억

(9) 외환 보유고 : US \$ 1,721억

(10) 산업 구조 : 농업(9.8%), 제조업(44.0%), 서비스업(46.2%)

(11) 교역 규모

- 수출 : US\$ 1,937억

- 수입 : US\$ 1,796억

(12) 교역품

- 수출 :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부품

- 수입 : 원유, 철광석, 전자제품, 기계류

다. 한국과의 관계

(1) 체결협정 : 국교수립('59), 무역협정('61), 무역전시품면세통관협정

사증면 제협정('81), 과학기술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범죄자 인도협정('99), 해운협정('02), 한-태 상품협정('09), 한-태 상품협정 발효('09)

(2) 교역 규모 (2010)

- 對 태국 수출 : US\$ 64억 5,900만
- 對 태국 수입 : US\$ 41억 6,800만
- 무역 흑자 : US\$ 22억 9,100만

(3) 교역 품

- 對 태국 수출 : 컬러 TV 부품, 휴대용 전화기, 스테인리스 강열강판, 기타 석유화학 제품 등
- 對 태국 수입 :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천연고무, HDD, 원유, 새우 등

(4) 투자교류

- 對 태국 투자 : 1,537건, US\$ 11억 7천만(2010)
- 對 한국 투자 : 9건, US\$ 500만

(5) 교민 : 약 2만 5,000명(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130명, 일반 체류자 23,864명, 유학생 1,006명) (2009. 2월 기준)

2. 주요 ICT 지표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41> 태국 방송통신 주요 지표

방송통신 주요 지표	태국(2009.12)	보급률(%)
유선전화 가입 회선(천 회선)	7,024	10.4
이동통신 가입자(천 명)	83,057	122.6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	994	1.5
TV 보급대수	17,108	25.2
디지털 TV 가입회선	902	1.3
케이블 TV 가입회선	260	0.4

나. WiMAX

태국의 WiMAX 시장은 아직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2008년 이후 시범 서비스만이 진행되고 있고 정식 라이선스 입찰은 지연되었다. BMI에 의하면, 태국의 브로드밴드 사용 인구 규모는 2009년 146만 명, 인구 100명 당 3%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WiMAX의 성장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태국 이동통신시장이 정치적 소요와 방송 주파수 규제 독립체의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WiMAX 주파수 경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 IPTV

태국 IPTV 시장은 유선 통신사업자들의 브로드밴드의 보급 노력과 함께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 IPTV 가입자 수는 2008년 기준 1만 명 미만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태국 2G 기반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유선 전화 보급에 주력하던 통신사업자들이 이를 브로드밴드 가입자 유치 전략으로 전환하며 IPTV와 연계된 트리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자회사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3G 및 WiMAX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고 있어 향후 IPTV 서비스와의 연계가 주목된다.

통신사업자들이 유선 전화망에서의 수익 감소를 원인으로 브로드밴드망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IPTV 시장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사업자가 경쟁을 하는 시장 상황이 IPTV 가입자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유발해 초기 시장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태국의 IPTV 사업자들은 서비스나 콘텐츠에 주력하기 보다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확보와 대역폭, 전송 속도 향상 등 네트워크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IPTV 사업자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WiMAX와 3G 라

시장의 확대 예상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주도의 3G 주파수 경매가 계속 연기되어 온 상태이며, 주파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와 사업자간 독특한 면허취득비용 방식(경우에 따라 연간 수익의 30%까지 지불하는 연간 계약)으로 인해 3G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에 논란이 따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라. 모바일TV

태국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MCOT가 DVB-H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통신사업자들이 CDMA 네트워크와 WiFi에 기반한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 혹은 준비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2.5G 네트워크(CDMA2000, GPRS)에 기반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3G 라이선스 경매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은 2010년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6,800만 명에 달하고, 2009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등 휴대전화 기반의 여가활동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있어, 3G 라이선스 발급과 함께 VOD를 중심으로 한 동영상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2009년 6월 시장조사업체 TNS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국 휴대전화 이용자의 25%가 모바일 TV 및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선호 의사를 표했으며, 휴대전화 구입 시 모바일 TV 기능을 많이 고려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2009년 기준 태국의 TV 보급가구는 1,792만 세대로 보급률이 96%에 달하고 있으며, 유료TV 서비스 가입가구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384만 세대로 23%의 보급률을 기록했으며, 수도권(Greater Bangkok) 지역 보급률은 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TV 시장에서 케이블 TV가 11.6%, 위성 TV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방송법

2008년 방송법 개정으로 300개 이상의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이 합법화 되었으며, 유료 방송에서 금지되었던 광고가 허용됨에 따라 유료 TV 방송 사업자들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케이블 TV 협회(TCTA)는 방송법 개정으로 태국 유료 방송 산업의 규모가 2년 내에 현재의 100억 바트 규모에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상파 TV 광고에 지출되는 530억 바트의 광고 시장 중 일부가 유료 방송으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의 2008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국 유료 TV 시장은 불법 시청(Piracy)으로 인해 1억 8,4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태국 정부가 보안이 어려운 안테나 기반에서 케이블 기반으로 설비전환을 가속화하고 CAS(시청제한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유료 방송 서비스의 가입자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 브로드밴드

태국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자 수는 2009년 말 기준 146만 명으로 전년대비 54% 증가했으며, 인터넷 이용자는 1,067만 명으로 2008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이 브로드밴드 이용 요금 인하를 통해 신규 가입자 확보 경쟁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태국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인구대비 인터넷 이용률이 낮고, 그마저도 전화모뎀 사용 인구가 많아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향후 사업자들의 투자 정도가 성장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True, TOT, TT&T 등 주요 사업자들도 유선전화 사업보다 브로드밴드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인터넷 이용자 중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자의 비중이 2009년 13.7%에서 2014년 38%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남아시아의 타 국가와 같이 태국 브로드밴드 인프라는 라이선스 발급을 앞

사. 이동통신

태국은 넓은 국토 대비 부족한 통신 인프라로 인해 유선통신 시장보다 이동통신 시장의 성장이 눈부신 국가로 1994년 GSM 기반의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하였다. 2003년 Hutchison-CAT Telecom이 CDMA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시했으나 현재 태국 이동통신 시장은 GSM 기반의 2G 서비스가 지배하고 있다.

2009년 기준 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6,523만 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비교적 저렴한 요금과 저가 휴대 단말기 보급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향후 3G 서비스의 성장가능성이 높지만 2006년 쿠데타 이후 불안한 정치 환경과 일관성 없는 규제 환경은 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자 간 경쟁력, 데이터 서비스 확대 등의 시장 기회가 남아 있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4G 시범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는 국제 통신시장 환경에 비추어 태국은 아직 3G 서비스도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G와 4G가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아. 유선통신

2009년 12월 기준 태국의 유선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약 658만 명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으며, 인구기준 보급률은 10.2%로 추정된다. 태국은 유선통신 인프라가 취약한데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11년경부터는 보급률이 10%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BMA(Bangkok Metropolitan Area)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비교적 높은 반면, 지방 도서지역의 유선통신 보급률은 매우 낮아 정보 격차가 큰 편이다. 2008년 기준 대도시 지역 유선통신 보급률은 37.1%로 전년대비 1.6% 포인트 감소했으며,

태국 유선통신 시장은 사실상 국영통신사업자 TOT가 독점하고 있어 사업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성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True와 TT&T 등의 유선통신 사업자들은 브로드밴드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시장은 복수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서비스 요금이 인하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된다.

전반적인 유선전화 가입자 감소 원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 인하로 인한 유선전화 서비스에 대한 매력도 하락과 브로드밴드 서비스 보급 확대로 인한 VoIP 서비스 가입자 증가로 분석된다. VoIP 서비스 가입자 현황은 공식 집계 되지 않았지만, Skype 등 온라인 방식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업자들도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 투자에 따른 손실을 유선전화 서비스 이용료 인상으로 만회하고 있다. 브로드밴드 및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이 인하되는 상황에서 유선전화 서비스 요금 인상은 가입자의 이탈을 더욱 촉진할 수밖에 없고, 해당 사업자는 매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요금을 재인상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42>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24.2	22.2	19.4	19.8
수입	20.0	18.8	15.4	18.1

차. 한국의 對 태국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43> 한국의 對 태국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734,041	-6.3	1,161,578	-1.4
2010	765,355	4.3	1,373,812	18.3
2011(1~9월)	593,606	5.6	1,027,427	0.6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 개요

태국통신위원회(NTC)는 통신사업법(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을 통해 통신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규정한다. NTC 표준의 주요 목적은 제품 호환성, 통화품질 보호, 소비자안전 보호, 국가통신네트워크의 침해방지 등이다.

NTC는 적합성 평가에 2개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NTC에서 직접 테스트를 실시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태국정부에서 인정하는 외국의 공인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제품인증에 별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으며, NTC 접촉 후 제품 인증까지 약 10일이 소요된다. 만약 제품이 적합성 평가의 대상일 경우 수입업자는 NTC나 외국의 인정된 기관에서 제품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고 NTC에 등록 또는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 NTC는 제품에 부착할 인증표시를 제공하게 된다.

라우터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는 TOT(Telephone Organization of Thailand)의 상호운용성 시험이라는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인증 장비 명단에 등재된다. 휴대 모바일 전화, 무선 전화 및 무선 LAN 장비 등과 같은 무선통신 장비의 경우, 태국우정전

나. 인증절차 (TOT망에 연결될 유선 TTE용)

태국에서 승인을 취득하려면 현지 사무소가 필요하다. 형식 인증은 현지 제조업체 혹은 딜러/판매 대리인만 신청 및 보유할 수 있다. 신청자는 태국어나 영어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TR&D(Techn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에 제출한다. 신청서 평가가 이루어진 후 승인 비용은 TOT에 직접 납부한다.

다음으로 제품 샘플을 시험 연구소에 제출한다. 시험 연구소가 제품을 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샘플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TR&D가 시험 보고서를 심사하고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인은 신청 서류의 일부로 외국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해당 국제 표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EMC 시험 보고서는 태국에서 EMC 시험이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 신청

신청서는 기술연구개발부(TR&D)에서 구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문서화 함께 발송한다. 태국어나 영어로 작성된 문서가 인정된다.

- 제품 기술 명세
- 제품 설명
- 회로도
- 블록선도
- 사용설명서
- 판매 브로슈어/카탈로그
-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 품질 문서
- 공인 외국 시험 연구소의 시험 증서. 신청인은 국제 EMC 및 전기 안전 표준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TOT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수료 송장 및 샘플 의뢰 통지서와 함께 인정 서한을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신청인은 서한을 지참하고 TOT 본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영수증 원본과 사본 한 부와 함께 장비 샘플을 TR&D에 제출한다.

라. 시험

승인이 필요한 전 제품은 태국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통신기기 시험 연구소는 단 한 곳, 즉 TR&D, TOT밖에 없다. 장비는 국가 표준과 ITU-T 표준을 혼합하여 시험한다. 기능성 기준의 경우, 적용되는 태국 표준은 GES-151-005-01(CPE 형식 인증) 및 EED-14-012-01 (TOT 네트워크 상호 운용성)이다. 태국에서는 이러한 표준을 시험 연구소에서 구할 수 있다.

EMC의 경우, 신청인은 아래 표준의 적합성을 입증해야 한다.

- CISPR 22 (가급적 태국 국내 표준 TIS1956-2542를 사용한다);
- IEC 801-2;
- IEC 801-3;
- IEC 801-4.

TOT의 시험 프로그램은 일부 전기 안전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기 안전 표준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정식 시험 보고서 제출은 의무 조항은 아니다(무선통신 장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신청인은 IEC 60950 (혹은 이에 해당하는 태국 국내 표준 TIS1561-2541) 및 UL1950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는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균 시험 시간은 4주 가량 소요되지만, 복잡한 장비의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TR&D는 제품 샘플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마. 인증

TOT는 시험 보고서를 심사하여 제품이 해당 기술 요건을 준수할 경우 승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장비는 우선 12개월 동안 인증된다. 이후 국가통신망에 대한 제품 성능을 심사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에 영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을 거친 전 제품은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은 전화기에 사용되는 것과 그 밖에 기타 전기통신 단말 장비 전체에 사용되는 라벨로 구분된다.

인증을 얻지 못했을 경우 태국에서는 항소 절차가 없다. 신청인은 시험 단계에서 불합격의 사유를 통보받게 되는데 이때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은 신청 서류를 재제출하고 수수료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바. 기타

인증을 거친 제품의 변경 내용은 TOT에 통보해야 한다. 변경 제품은 전체 인증 과정을 거쳐야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4. MRA 체결 현황

가. APEC TEL MRA (정보통신분야 MRA)

태국은 시험기관(시험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MRA 1단계 참여에 2006년 서명하였다.

나.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태국의 ATRC 회원기관은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이며, MRA 체결 실적은 없다.

제 10 절 베트남

1. 국가개황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자주 받아오다가 1884년에 프랑스 식민지가 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편입되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립을 선언하고 베트민을 중심으로 베트남민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정식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이다. 북쪽은 중국과, 서쪽은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 베트남의 동쪽 해안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통킹만, 남중국해, 보르네오해, 시암만과 접해있고, 남북으로 긴 해안선은 무려 3,444Km에 달한다.

통일 전쟁 중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우려한 미국이 1961년 참전하였으며 한국과 필리핀·타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도 지원군을 파병하였으나,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베트남이 1975년 사이공을 함락시킴에 따라 전쟁은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이 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공산화를 이룬 나라이다. 한국과는 1992년에, 미국과는 1995년에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가. 일반현황

(1) 국명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 행정구역 : 5개의 중앙 직할시와 58개의 성으로 구성

(3) 독립일 : 1945. 9. 2

(4) 위치 :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

(5) 면적 : 약 331,150㎢(한반도 약 1.5배)

- (7) 수도 : 하노이(Ha Noi, 647만 명, 2009년 기준)
 - (8) 인구 : 86.02백만(2009, 남: 42.6백만, 여 : 43.4백만, 약 70.4% 농촌 거주)
 - (9) 주요 도시 : 호치민(717만 명, '09), 하이퐁(약 184만 명, '09)
 - (10) 민족 : 비엣족(끼족, 전인구의 85.7%), 타이족, 화교(약 82만 명), 크메르족 등 54개 민족
 - (11) 공용어 : 베트남어
 - (12) 문맹률 : 9.7%
 - (13) 종교 : 신양인 1,565만 명(2009년 기준), 불교(43.5%), 가톨릭(36.6%), 카오다이교(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종교) 등
 - (14) 화폐 단위 : 베트남동(Vietnamese Dong, VND로 표기)
 - (15)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공산당, 최고인민회의(국회), 정부
- 나. 경제현황 (2010)
- (1) 경상 GDP : US\$ 1,046억
 - (2) 1인당 GDP : US\$ 1,203
 - (3) 경제성장률 : 6.78%
 - (4) 산업생산증가율 : 14.0%
 - (5) 물가상승률 : 9.19%
 - (6) 도시 실업률 : 4.43%
 - (7) 환율(대 달러화) : 20,713 (2011.4)
 - (8) 수출 : US\$ 716.3억
 - (9) 수입 : US\$ 840.0억
 - (10) 외환보유고 : US\$ 124억
 - (11) 외채 : US\$ 445억

다. 한국과의 관계

- (1) 한국은 2006년 및 2007년에 베트남 FDI 투자국 1위였으며, 2009년도 투자누계 205억 달러로 2위 차지했다. (투자건수 2,327건으로 1위)

- (3) 한국은 베트남의 제6위 교역대상국이며, '92년의 교역규모 4.9억 달러 대비 '08년 총 교역액이 약 20배 증가하였다. 2009년 베트남은 한국의 제10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 (4) 총 1,600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동 중이며, 업종별로는 섬유 및 봉제, 신발, 전기·전자, 부동산 개발업에 주로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약 35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5) '09년 말 고용허가제 하에 국내에 도입된 해외인력 중 베트남 인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약 6만 명)

2. 주요 ICT 지표 분석

가. 주요 정보화 지표

<표 4-44> 베트남 방송통신 주요 지표

방송통신 주요 지표	베트남(2009. 12.)	보급률(%)
유선전화 가입 회선(천 회선)	30,693	34.9
이동통신 가입자(천 명)	88,566	100.6
브로드밴드 가입 회선(천 회선)	2,649	3.0

나. WiMAX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2006년 WiMAX 프로젝트 지침을 발표하고, 통신사업자인 VDC, FPT Telecom과 국영 방송사업자인 VTC, 베트남 최대 이동통신사인 Viettel 등에게 WiMAX 시범 서비스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발급하였으며, 2008년에는 FPT Telecom, EVN Telecom, Viettel, VNPT에 모바일 WiMAX 시범 서비스를 허용하는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하였다. 베트남의 WiMAX 시범서비스 라이선스는 신규 주파수 대역의 할당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이는 3G 서비스가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가 4G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베트남은 남북이 길고 해안 및 산악 지형과 고립된 마을이 많아 WiMAX 기반 무선 브로드밴드가 주요 브로드밴드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이동전화 보급률이 유선전화 보급률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무선 브로드밴드의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베트남의 주요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모두 고정형 및 모바일 WiMAX에 대한 시범 서비스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4G 라이선스 발급이 진행될 경우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정보통신부는 2010년 초 WiMAX 주파수를 할당할 예정이었으나 8월 LTE에 대한 시범 테스트 라이선스를 먼저 발급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 WiMAX 테스트 참가 사업자들이 LTE 테스트에 참여하고 있고,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4G 주파수 활용과 관련해 기술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4G 주파수 경매가 완료되면 사업자들은 LTE와 WiMAX 중 선택적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IPTV

베트남의 IPTV 시장은 FPT Telecom이 2006년, VNPT가 2009년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11월 VTC Digital Communications(VTC Dicom)도 시장에 진입하면서 베트남 IPTV 시장은 본격적인 형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2009년에 베트남의 유무선 브로드밴드는 보급률이 3%에 그쳤으나 정부의 강력한 보급의지,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이 IPTV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BMII는 베트남의 유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2010년 5%에 이르고, 2014년 15%에 이르는 등 향후 3G와 WiMAX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어 IPTV 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2009년 25.9%에 머무른 인터넷 보급률을 2010년까지 45~50%로 끌어올리고, Ho Chi Minh 등 대도시의 보급률을 65~7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라. 모바일TV

베트남 모바일 TV 시장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3G 기반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TV 서비스와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DVB-H와 T-DMB 서비스로 발전되어 왔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2009년~2010년 3G 서비스를 개시하여 모바일 TV 서비스를 주요 부가서비스로 도입하고 있다. DVB-H는 2006년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사업자인 VTC가 상용화 하였으며, T-DMB는 국영방송사업자인 VTV가 상용화 할 예정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3G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어서 이동통신 기반 모바일 TV 시장 형성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영 방송사업자인 VTV가 한국 업체와의 협력 하에 T-DMB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들이 베트남의 주요 이동통신 3개 업체와도 원활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 향후 베트남에서 T-DMB 기반 모바일 TV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베트남의 3G 가입자 수가 사업자들의 발표 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불제 중심의 가입자 구조, 서비스 품질 및 요금에 대한 이용자의 불만이 가입자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

마. 방송서비스 및 콘텐츠

베트남 TV 방송 시장은 1990년 이후로 급속히 성장해 2009년 기준 TV 보유가구 수는 1,720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가구당 TV 보급률은 98%에 달한다. 베트남 방송 시장은 아시아 권역 내에서 규제가 엄격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산하의 VTC는 베트남 내 각 방송사업자의 지도·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방송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MIC 산하의 VTC가 2001년 3월부터 수도인 Hanoi를 중심으로 DVB-T1 송출을 시작했으며, 이후 Ho Chi Minh으로 범위를 확대해 시범 서비스를 통한 기술검증을 실시해 왔다. 그 외에 지역 방송사인 BTV(Binh Duong Television)와 HTV(Ho Chi Minh Television)가 각각 2002년과 2003년에 DVB-T 방식의 디지털 방송을 개시했으며, 뒤이어 2005년에는 SCTV(Saigon Tourist Cable Television)가 DVB-T 기반 디지털케이블 TV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한편, 2007년 4월, ASEAN 회의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DVB-T 기반 디지털 TV 표준 확대가 논의되면서 셋톱박스의 가격 인하를 유도했고, 이후 점차 보급이 확대되었다. 2008년 3월에는 ‘정보통신성계획’으로 지방의 디지털 방송 수신 설비 투자에 450억 동을 투자 할 것을 발표하고 2009년 1/4분기에 한 대당 100만 동짜리 셋톱박스 200만 세대 분을 구입하였다.

2008년 4월에는 베트남 최초의 위성 Vinasat-1호가 발사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VTC는 본 위성을 이용해 8개의 채널에서 HD 방송을 개시한 바 있다.

2009년 6월, 베트남 정부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을 2015년까지 종료하고, 케이블 TV는 2020년까지 전국적인 디지털 전환을 이행할 것이라는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3월 MIC는 약 4조 4,000억 동(약 2억 3,120만 달러) 규모의 라디오 및 TV 방송 디지털 전환 계획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외에 8개 사업자가 디지털 TV 시장 개척에 참여하며, 주요 실행 계획은 시민들의 디지털 TV 장비 구입 지원, TV 활용 방안의 연구조사, 디지털 TV 채널에 대한 지식 확대 등이다. 소요 예산 중 1조 3,000억 동은 국가공공통신서비스기금 (State Public

이러한 디지털 방송 전환 추진에 따라 디지털 방송 콘텐츠 및 수신기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VTV와 VTC에 의해 진행 중인 케이블 TV와 위성 TV의 디지털화도 촉진됨에 따라 국제 호텔과 정부 기관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TV 수상기 교체 수요가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바. 브로드밴드

인터넷 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던 베트남은 최근 들어 브로드밴드 인터넷 도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의 브로드밴드 인터넷 시장은 연간 약 50% 증가율로 2009년까지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해 왔으며, 특히 2009년 이전 3년간은 1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2009년 12월 기준 베트남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265만 명으로 전년대비 29.3% 증가하였다.

베트남 브로드밴드 기술 방식은 DSL, 케이블 모뎀, 무선 브로드밴드 (WiFi, WiMAX), 위성 인터넷 등이 있으나, DSL 가입자 수가 전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을 기점으로 케이블 모뎀이나 WiMAX 기반의 무선 브로드밴드의 가입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베트남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장률은 소폭 하락하고 있으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낮은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성장률 둔화 현상의 배경으로 주요 통신 사업자들의 모바일 인터넷 요금 인하에 따른 3G 모바일 부문과의 경쟁 심화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VNPT, Viettel, FPT Telecom 등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IPTV와 VoIP 등 결합서비스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어 관련 인프라 확대구축 및 이로 인한 가입자 증가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사. 이동통신

시장조사기관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베트남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48%인 3,592만 명 증가한 1억 1,080만 명으로 인구 당 보급률은 125%를 넘어섰다.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의 규모는 가입자를 기준으로 유선통신 시장의 5배 이상이며, 매년 서비스 보급률이 30%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의 성장이 더딘 주된 이유로는 유선 통신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꼽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처럼 유선통신 네트워크가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도시 외곽 지역의 주민들을 흡수함으로써 가입자 기반을 늘려 나가고 있다.

베트남 이동통신 시장은 국영 통신사업자 VNPT의 이동통신 사업 부문인 Mobifone 및 VinaPhone, 그리고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Viettel Telecom 등 3개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9년 8월 기준으로, 3개 선두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88.7%로 나타난 가운데 Viettel은 36.3%를, Mobifone과 VinaPhone은 각각 29.8%, 22.6%를 점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11.4%에 속하는 기타 사업자들로는 S-Fone, E Mobile, HT Mobile, Gtel Mobile 등이 있다.

베트남의 이동통신시장은 2008년 이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6개월 사이에 가입자 수가 4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인구 당 보급률이 이미 120%를 넘어선 만큼 향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시장 내 주요 사업자들의 3G 서비스가 전개되면서, 3G 서비스로의 가입자 전환 및 무선 브로드밴드 접속 시장의 확대 등 신규 시장 개척에 주력해야 할 시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각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3G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할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ARPU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바일 게임, 모바일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

아. 유선통신

시장조사기관 BMI(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2월 기준 베트남의 유선통화 서비스 가입 회선 수는 약 1,900만 회선으로 인구 당 보급률 21.6%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의 유선통신 가입자 수는 산업화 및 유무선 통신 인프라의 동반 확장에 따라 2000년 대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유선통신 시장은 2000년 이전까지 국영사업자인 VNPT가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00년 10월 Viettel이 Hanoi와 Ho Chi Minh 지역에 한정된 VoIP 서비스 사업을 개시하면서 베트남 유선 통신시장에도 경쟁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Viettel에 대한 정부의 사업 혜택 조치는 VNPT가 독점권을 행사하던 유선 통신 시장에 요금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2006년 12월 민영 통신업체인 FPT Telecom에 전국적인 유선 통신 라이선스를 허가함으로써 베트남 유선 통신 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분위기는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유선 통신 네트워크를 대체하는 모바일 네트워크의 증가로, 모바일 서비스 사업자에 대항하는 가입자 흡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VoIP 서비스가 점차 보편화되고 음성 통화 품질이 좋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은 VoIP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이며 베트남에서도 국제전화 이외에 국내 장거리 전화 시장에서도 VoIP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이다. VoIP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선 전화 신규가입자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선 통신 네트워크가 부족한 도외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개발을 목적으로 GSM 및 CDMA 기반 고정무선통신 서비스에 대한 주요 사업자들의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ICT 상품 수출입 현황 (총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표 4-45> 베트남 ICT 상품 수출입 현황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수출	5.1	5.6	3.8	N/A
수입	7.6	8.2	7.1	N/A

차. 한국의 对 베트남 IT제품 수출입 현황

<표 4-46> 한국의 对 베트남 IT제품 수출입 현황

(단위 : 천 달러, %)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9	435,188	115.3	100,057	144.8
2010	1,042,187	139.5	160,126	60.0
2011(1~9월)	1,806,070	179.4	161,795	56.1

3. 인증제도 분석

가. 제도 개요

베트남 공용 교환 전기통신망에 직·간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대부분의 전기통신 단말 장비 유형은 우정통신부(MP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기술 및 법률 요건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규제 대상 장비에 공식 인지를 부착하는 것을 토대로 하는 개정된 인증 절차가 실시되었다. 2005년 10월 5일자로 발령되는 MPT 결정 No.42/2004/QD-BBCVT는 다음 유형의 장비는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중선 아날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공용 서비스망(PSTN)에 연결되는 단말기
- 유선 자동 전화
- 무선 전화(교환 가입자형)
- 팩스 장비
- 외장 모뎀
- 핸드헬드 모바일 단말장치
- GSM 단말장치
- CDMA 단말장치
- PHS 단말장치

기타 장비 판매업체는 MPT와 교섭하여 해당 기기를 베트남에 수입, 판매, 사용하는데 제약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술 표준 준수를 입증하는 외부 시험 보고서 및/혹은 승인 증서를 취득하여 이를 검수 받아야 한다.

나. 인증 절차

인증 신청은 베트남 및 외국 기관으로부터 접수한다. 그러나 전기통신 장비를 베트남에 수입하기 전에 현지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은 신청 장비가 MPT Decision No.42/2004/QD-BBCVT의 규제를 받는 기기인지 확인한다. 해당하지 않는 기기일 경우,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MPT에 확인하고 자발적인 승인을 고려한다.

규제에 해당하는 기기일 경우 베트남 표준 준수를 입증하는 시험 보고서를 확보하고, 베트남어나 영어, 불어로 작성된 신청 서류를 준비한다. 신청서를 MPT에 제출하면 MPT는 신청서가 적합한지 평가한다. 조건에 만족하였을 경우 MPT는 승인 통지서와 인지 송장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인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기에 해당 인지를 부착한다.

다. 신청

통신 장비의 준수 인증 신청은 우정전기통신 정보기술품질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류는 다음 문서를 포함해야 한다.

-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해당 부서에서 구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서, 설립면허 혹은 (개인의 경우), 여권이나 베트남 ID 카드 공증사본
- 해당 요건 준수를 입증하는 시험 증서 사본
- 준수 인증을 위해 제출될 장비 수량을 기재한 문서 사본
- 수입 장비 관세 신고 사본

MPT는 베트남어, 영어, 불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인정한다. 베트남 단체뿐만 아니라 해외 단체의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지만, 현지 사무소를 개설하면 복잡한 행정절차 문제를 처리하는 데에 유리하다.

라. 시험

규제대상 장비는 베트남 기술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해야 한다. 시험 제품은 인터페이스, 전기 안전 및 EMC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베트남 국가 표준은 크게 ITU-T 표준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시험은 준수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베트남에는 시험 기관이 단 한 곳, 즉 우정전기통신연구소(RIPT)밖에 없지만, MPT Decision No.160/2004/ND-CP는 APEC 및 기타 베트남이 상호 인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한하여 공인기관의 시험 및 준수 보고서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IPT 시험 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며, 시험은 전화 핸드셋의 경우 1 내지 2일 가량 소요되지만 PABX의 경우 7일이 소요된다.

마. 인증

우정전기통신정보 기술품질평가부는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인에게 해당 장비에 부착할 필수 준수 인지를 제공한다. 승인 여부는 주로 신청 패키지를 접수한 이후 3일 내에 결정된다.

인증이 승인된 신청인은 인지를 수령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 인지 사용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는 인지를 발급하는 기기에 맞게 발급되며 해당 장비에만 사용해야 한다. 인지 수령인은 그 용도를 기록하고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록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 매년 12월 15일까지 인지 사용에 대한 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MPT 결정 No.42/2004/QD-BBCVT에 명시된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필수 기술 표준에 부합하는 장비 수입업자와 판매업자는 자발적으로 준수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MPT도 이를 장려하고 있다. 규제 면제 기기에 대한 자발적 준수 인증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는 해당 기술 표준 준수를 증명하는 외부 시험 보고서 및/혹은 승인 증서를 확보하여 이를 검수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장비의 기술이 변경될 경우, 국가망에 수입 및 연결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재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4. MRA 체결 현황

가. APEC TEL MRA (정보통신분야 MRA)

베트남은 MRA 1단계를 이행중이다. 한국과는 2005년 5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기존 유선통신기기만 해당되던 적용범위를 무선통신기기까지 확대하였다. 미국과도 APEC TEL MRA 1단계를 이행하고 있다.

나. ATRC (ASEAN Telecommunication Regulators' Council)
 베트남의 ATRC 회원기관은 Ministry of Post and Telematics이며,
 ATRC 내 MRA 체결 실적은 없다.

제 11 절 아세안 국가의 인증제도 등의 비교

<표 4-47> 아세안 국가의 인증제도 등의 비교

	ICT 지표	시험·인증제도 유무		MRA
브루나이	이동통신 이용률 106% (2010)	시험제도	O	* APEC TEL MRA 1단계 (03.12.)
	인터넷 이용률 12% (2010)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0.2% (2006)	인증제도	O	* 싱가포르와 MRA 체결(04. 5.)
	ICT 상품 수입 비중 6.6% (2006)			
캄보디아	이동통신 이용률 73% (2010)	시험제도	X	* ATRC
	인터넷 이용률 1.4% (2010)			* MRA 체결 없음
	ICT 상품 수출 비중 0.1% (2008)	인증제도	O	
	ICT 상품 수입 비중 4.0% (2008)			
인도네시아	이동통신 이용률 69.3% (2009)	시험제도	O	* APEC TEL MRA 1단계 (03.12.)
	인터넷 이용률 17.3% (2009)			* ATRC
	ICT 상품 수출 비중 5.7% (2009)	인증제도	O	* 싱가포르와 MRA 체결 (04.4)
	ICT 상품 수입 비중 9.7% (2009)			
라오스	이동통신 이용률 53% (2009)	시험제도	X	* ATRC
	인터넷 이용률 4.9% (2009)	인증제도	X	* MRA 체결 없음
	ICT 상품 수출 비중 N/A			
	ICT 상품 수입 비중 N/A	면허제도 운용		

	ICT 상품 수출 비중 38% (2009) ICT 상품 수입 비중 32% (2009)	인증제도	0	* ATRC * 싱가포르와 MRA 체결(05.1)
미얀마	이동통신 이용률 1% (2009)	시험제도	0	
	인터넷 이용률 0.2% (2009)	(시험시설 X)		
	ICT 상품 수출 비중 N/A	인증제도	0	
	ICT 상품 수입 비중 N/A			
필리핀	이동통신 이용률 81%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05) 2단계(06) * ATRC * MRA 체결 없음
	인터넷 이용률 6.5% (2009)	인증제도	0	
	ICT 상품 수출 비중 54% (2009)			
	ICT 상품 수입 비중 35% (2009)			
싱가포르	이동통신 이용률 140%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 : 호주, 캐나다, 대만, 홍콩(99.7) * MRA 2단계 : 일본(02.1) 미국(03.10) * ATRC * 인도네시아(04.4), 브루나이(04.5), 말레이시아(05.1)
	인터넷 이용률 73.3% (2009)	인증제도	0	
	ICT 상품 수출 비중 35% (2009)			
	ICT 상품 수입 비중 28% (2009)			
태국	이동통신 이용률 122%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06) * ATRC * MRA 체결 없음
	인터넷 이용률 25.5% (2009)	인증제도	0	
	ICT 상품 수출 비중 20% (2009)			
	ICT 상품 수입 비중 18% (2009)			
베트남	이동통신 이용률 100% (2009)	시험제도	0	* APEC TEL MRA 1단계 미국, 한국(05.5)
	인터넷 이용률 27.9% (2009)	인증제도	0	
	ICT 상품 수출 비중 3.8% (2008)			
	ICT 상품 수입 비중 7.1% (2008)			

제 5 장 방송통신분야에서의 시험·인증업무

수행 주체기관에 따른 장·단점 비교분석

제 1 절 시험·인증업무의 특성 및 현황분석

1. 시험·인증업무의 특성

일반적으로 시험·인증이란 제조, 수입, 판매자가 제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정부 혹은 단체가 정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로 확인하고, 이 시험결과의 적정성을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받는 것을 말한다. 시장의 관점에서는 시험·인증기관은 서비스 제공자이고 제조, 수입, 유통업자는 서비스 수요자이다. 아울러 중간 판매상은 2차 수요자이며, 구매자는 최종 수요자이다.

인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통상적으로 법적강제여부를 기준으로 법정의무, 법정임의 그리고 민간임의인증으로 구분된다. 또한 인증유형에 따라 각 인증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상이하다. 대체로 민간임의인증은 소비자에게 특정한 제품이 일정한 규격을 갖추고 있음을 홍보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간임의인증을 취득하지 못해도 제품의 제조와 판매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반면에 법정의무인증은 해당 제품이 취득하지 못하면 원천적으로 시장에 제품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즉, 법정의무인증마크는 판매허가증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시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제조사, 수입업자, 유통판매자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인증마크를 취득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시험·인증기관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업무처리 행태가 상이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험·인증기관이 공공기관이면, 이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비

업무처리 행태를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시험·인증기관은 업무 진행과정에서 시험·인증 관련 규정 준수와 이익 창출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기업의 경우 시험·인증 관련규정의 엄격한 준수는 서비스 제공 비용을 증대시키며, 동시에 시험·인증의뢰자의 시간과 비용도 증대시킨다. 따라서 민간시험기관에게 엄격한 관련 규정 준수는 커다란 비용이 될 수 있다.

시험·인증분야에서의 의뢰인과 수탁기관 간의 관계는 일반적 상거래 관계와 여러 면에서 상이할 수 있다. 즉, 시험·인증의뢰자는 제품의 조기출시 가능 여부 및 소요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험·인증기관을 선정한다. 아울러 시험·인증 의뢰자는 자신들의 의뢰가 없으면 시험·인증기관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즉, 시험·인증의뢰자는 가격을 흥정하면서 동시에 인증마크 조기 획득을 위한 여러 유형의 압력을 가한다.

시험·인증기관 역시 시험·인증의뢰가 없으면 시장에서 도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험기관의 재정 담당자는 이익창출을 위한 업무처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민간 시험·인증기관은 끝임 없이 조직 내·외부로부터 최저 수준의 규정준수 유혹과 압력을 받게 되며, 결국에는 이들의 요구에 굽복하게 될 가능성성이 높다. 따라서 시험·인증시장에서 시험기관이 피 시험기관에 의해 포획되는 현상(captured phenomena)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시험기관이 커다란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의뢰자의 의도에 따라 시험을 진행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한편, 경쟁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시험·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의 동향을 파악하여 시장에서 통용되는 최저의 시험·인증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이 포화된 경우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시험·인증시장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엄격성을 하락할 수 있다. 즉, 시험·인증시장에서 시험·인증기관

혹 부적절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제품은 사용자의 안전, 건강, 생명 등을 해치게 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2. 시험·인증시장의 특성에 따른 정부의 역할

시험·인증분야에서의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성숙단계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현재에도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정부는 시험·인증분야에서 시장 감시자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자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등을 포함하는 사기업이 충분한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직접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에 사기업이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정부는 시험·인증업무를民間에 위탁하고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정부가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면 시장이 성립되지 않아民間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民間에게 업무를 위탁하고 정부가 최소한의 개입 밖에 하지 않으면 ‘최저 엄격성 추구 경향’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시험·인증시장에서 과다경쟁과 최저 엄격성 추구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진입규제와 사후관리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진입규제는 시험·인증기관의 정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후관리란 법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혹은 시험·인증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등을 명령하거나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가. 시험·인증시장에서의 지대추구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험·인증기관은 자신들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다른 기관이 더 이

는 시장의 개방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완전한 개방은 역으로 과다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복지향상에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복지의 극대화 관점에서 적정한 숫자의 시험·인증기관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는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제도나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최저 엄격성 추구 경향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시험·인증기관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뢰자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자신의 비용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탐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험·인증기관은 법률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저수준의 엄격성만을 준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고의로 혹은 부주의로 법제도를 위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최소한의 법령 준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사법적 처벌을 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후관리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다. 개별 정부의 시험·인증시장에 대한 대응 현황

국가에 따라 정부가 취하는 시험·인증시장에 대한 대응은 각기 다르다. 즉, 사기업이 사회적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시험·인증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거나, 민간에 위탁하였더라도 사전-행정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부적절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정부가 시험·인증제도를 통하여 사전 진입규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 반면에 사기업이 사회적 신뢰성을 갖춘 국가에서는 사후-사법적 규제 원칙을 받아들여 기업의 책임 하에 제품을 출시하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사후-사법적 규제제도는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에게는 제품이 빠-

보상법규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보험제도가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제 2 절 시험·인증업무의 민간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민간화의 개념과 배경

민간화(privatization)란 1969년 E.S. Savas가 처음 사용한 단어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공공부분에서 민간부문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즉,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역할을 재조정하여 정부활동의 일부를 민간부분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공공부분의 민간화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서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대부, 보조금 등의 유인책과 제재를 통하여 계속적인 정부의 참여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민간화의 개념은 크게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민간화란, 비효율적인 공공부분의 기능, 활동, 조직을 자유 시장경제하에서 효율적인 민간주도의 기능, 활동, 조직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체의 시도를 의미한다. 이런 의미로 민간화가 사용될 때에는 민간화란 공기업의 매각만이 아니라, 각종 행정조직 내의 행정기능, 활동 등의 행정서비스를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도 포함한다. 즉, 민간화는 자유시장경제의 완성을 위한 경제정책 일반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로서는 공기업의 소유권이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됨으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때로는 필요에 의하여 정부의 지분이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되지 않은 소위 부분 민간화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업에 대한 지배권이 민간에게 있다면 본래의 의미에 합당한 민간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좁은 의미의 민간화는 민영화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민간화는 민영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한 관점에서 시험·인증업무의 민간화는 광의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시험·인증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행정서비스로 인식하고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서비스는 무상급부이지만, 시험·인증업무에 의해 편익을 제공받는 자가 한정되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공기업의 형태를 띤 적이 없고 정부 부처로서 존재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시험업무는 민간위탁의 형태로 민간화 되었다. 그러나 인증업무는 아직 정부가 직접 집행하고 있다.

정부의 업무를 민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배경에는 크게 4개의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가. 정부실패와 행정에 대한 불신

우리사회에는 정부실패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다. 1970년대 원유파동 시대를 배경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직면했던 정부실패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 동안 누적되어온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0년대부터 국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으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경제발전의 장애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정부가 국가경제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시장 주도의 경제발전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즉, 그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정부 기능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민간화의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 작은 정부지향이론의 대두

작은 정부론은 정부의 실패와 조세과중부담이라는 인식하에 거대 정부에서 나타나는 행정의 관료화와 비능률 현상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즉, 이 이론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간

다.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 정치적 민주화에 따른 주민욕구의 분출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비효율적인 기능은民間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라. 행정수요의 변화와 행정공급능력의 한계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수요가 양적으로 폭증하고 질적으로 다양화·전문화되었다. 그러나 기존 행정에 의한 직접적인 서비스공급방식은 행정부 자체에 내재된 경직성과 운영상의 관료성 때문에 급부행정서비스를 유효·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는 체제상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따라서 정부가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民間화를 대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2.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인증업무 민간화 요구 등장 배경

앞에서 논의되었던 맥락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분야의 시험·인증업무가 민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은 정부 지향이론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주장은 시험·인증분야에서도 설득력을 갖게 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사기업의 신뢰성 향상과 부적절한 제품으로 인한 피해의 감소는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분야에서의 시험업무는 이미 민간화 되었으며, 인증업무만 전파연구원이 집행하고 있다.

둘째, 국가 혹은 인정기구 간 MRA 등 새로운 국제 시험·인증환경의 등장에 절대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협체 시험·인증분야에서 정부

있다. 즉, 시험·인증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선진국 형으로 전환하여, 직접적 공급자에서 시험·인증 시장을 유지·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셋째,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신기술과 신제품의 수명주기가 과거보다 상당히 단축되어 행정부서에 내재되어 있는 경직성과 운영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시험·인증서비스를 유효·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술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출시를 원하는 제품이 늘어나 최근 기술기준이 부재한 제품에 대한 잠정 인증제도를 전파법 등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변화수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면에는 변화하는 상황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시험·인증분야에서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공공부문은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신속히 시험·인증을 끝내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여야 하는 제조업자에게는 비효율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자의 인식이 부적합 제품에 의한 피해가 감소되는 상황이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인증업무의 민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 3 절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내용과 방법

1. 공공서비스의 민간화 내용

정부의 업무나 활동 중 민간화의 대상 업무는 정책결정의 업무보다 정책이나 사업의 집행업무 중 서비스 전달의 업무나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단순한 업무 등이 적합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민관화 대상 업무가 될 가능성이

재 보다는 교육이나 주택공급과 같은 준공공재나 가치재가 민간화의 대상으로서 보다 적합하다.

준공공재의 경우 이들을 완전히 민간화 하는 방법도 있으나, 정부가 이들의 공급에 대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에 맞추어 민간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의 원칙과 기준, 비용 부담방식은 정부가 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위탁받은 사기업이 담당하며 정부는 감독권을 갖는다. 이러한 원칙은 공영주택의 건설, 직업훈련의 실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이나 치안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 통신기기나 군복, 식품의 생산과 정비 그리고 급식의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민간화의 내용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민간화의 유형은 대상에 따라 사무 민간화와 재산 민간화로, 정도에 따라 완전 민간화와 부분 민간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다음 표와 같이 4개의 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1> 민간화의 유형

분 류		정 도	
		완 전	부 분
대 상	사 무	민 간 이 양	민 간 위 탁
	재 산	민 유 화	민 영 화

공공사무의 민간화란 공공사무를 민간에게 이관하는 것으로 이것은 다시 민간이양과 민간위탁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민간이양이란 정부의 활동 중 사무나 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을 민간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 재정부담 모두를 민간에게 이전시키는 활동이다. 아울러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이 대신 실행하고, 다만 정부는 재정적 부담이나 최종 책임만 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위탁임무는 승인과 같은 형태로, 민영화로는 민영화조례, 민영화법, 민영화법률 등으로 표기된다.

의무 인증제도분야에서 시험·인증업무의 민간화는 근본적으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파법 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시험·인증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의 집행 일부 혹은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인증제도의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은 최종적으로 정부에게 남아 있다.

<표 5-2>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민간위탁의 예

항목	세부 서비스 항목
공공사업 및 교통관련 업무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에너지 시설 설계·운영·관리, 청소년 사업, 도로보수 및 관리
공공안전	범죄예방과 순찰, 차량견인
사회복지 의료	사회복지시설운영, 공공보건운영사업, 병원운영관리
공원 및 오락	스포츠센터 운영관리, 공원운영, 이동도서관운영
행정지원	건물과 대지관리, 행사개최운영, 판매장과 시장운영

정부재산의 민간화에는 국·공유재산 및 공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다. 민영화는 넓게 정부재산의 민간화를 포함하기도 하나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민영화로 사용한다. 재산의 민유화는 재산소유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재산이나 공기업을 완전 매각하면 소유주체가 달라진다.

한편 민영화란 재산의 위탁관리와 공기업주식의 매각으로 경영권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위탁관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소유하되 재산의 운영과 관리만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사용자에게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는다. 공기업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국민이나 사기업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도 민영화에 해당한다.

고 있는 인증업무의 민간화도 당연히 민간위탁의 행태를 떨 것이다. 전파법에 근거하고 있는 강제 인증제도의 특성상,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시험·인증 업무는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할 수 없다.

2. 민간화의 방법

민간화의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를 크게 일반적 민간화 방법과 유사 민간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 기자재 인증업무의 민간화 방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 민간화 방법

일반적 민간화 방법도 외주공급방법, 생산보조금지급방법 그리고 구매권 지급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외주공급(Contracting Out 혹은 Outsourcing)방법은 정부가 민간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맡기는 한편 그 제공에 대한 책임과 감독권을 갖고 있는 방법이다. 외주공급은 위에서 분류한 민간위탁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쓰레기 수거 업무를 특정 기업에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거나 청원경찰로 하여금 공공건물의 경비를 맡게 하는 것 등이다.

둘째, 생산보조금(Grant 혹은 Subsidy)지급방법으로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를 생산하는 사기업에게 생산을 장려하고 생산비용이 수입을 초래할 때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불한다. 때로는 조세공제 제도를 통해서 해당 기업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체가 무기를 개발하는데 보조금을 주는 경우나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주는 경우 그리고 시내버스회사에 일정한 조세 감면을 해주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구매권(Voucher)지급방법은 정부가 특정한 계층의 서비스 수혜자에게 특정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나. 유사 민간화 방법

유사 민간화 방법은 정부판매와 정부조직의 내부시장화 방법이 있다. 첫째, 정부판매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서비스나 재화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거나 사용료 혹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조직의 내부시장화란 정부기관 간 공개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창구를 다원화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의 민간화 방법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인증방법으로는 외주공급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민간위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며, 국제규정에도 부적합하다. 그러나 민간 위탁에 따른 인증비용의 상승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증업무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 새로운 시험 및 인증기술개발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시스템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공동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혹은 R&D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험업무가 민간이양될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정부는 시험업무를 수행할 기관에게 특별한 재정적 혹은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시장 수요가 충분하여 사기업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수입이 비용을 상회할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증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아닌, 간접적 지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다한 숫자의 인증기관이 제한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인증시장 진입규제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의 시장 진입규제를 실시하여 과다한 숫자의 민간인증기관이 난립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험·인증분야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자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 시장이어서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나치게 많아 과열 경쟁이 발생하-

<표 5-3> 민간화 방법 유형

방법	일반적 민간화 방법	유사 민간화 방법	방송통신기자재 민간화 방법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공급방법 · 생산보조금지급방법 · 구매권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판매 · 정부조직의 내부 시장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는 외주공급방식 (단, 간접지원을 고려 필요 있음)

제 4 절 민간화의 효용성·문제점 및 성공조건

1. 민간화의 효용성

영국, 미국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민간화에 성공하여 상당한 결실을 거두었다. 이들 국가에서 민간화를 통하여 얻어진 편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민간부문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재화나 서비스 제공 비용을 줄이고 자원의 최적 배분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민간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인 국민들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셋째, 정부는 집행적 성격을 가진 업무를 감축할 수 있어 정책결정 등 정부핵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 다수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해 준다.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를 민간화하면, 다양한 효용성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차원에서 인증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다.

둘째, 민간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 민간화의 문제점

모든 정책이 크기가 상이할 뿐이지 장점과 단점 모두를 가지고 있다. 민간화도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첫째, 민간화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기업이 이윤추구의 논리에 따라 공공의 이익에 크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민간화는 공·사영역의 구분을 어렵게 하여, 조세로 제공되어야 하는 재화의 영역을 불투명하게 한다. 즉,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기능을民間에게 이전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분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의 고유한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셋째, 민간화는 국가차원에서 서비스 공급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민간의 이윤 추구, 민간화 업무를 맡기 위한 사기업의 정부 로비활동, 정부의 민간부문 감독비용 등은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인상시킬 수 있다.

넷째, 민간화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 노사관계의 악화, 이윤 감소 등으로 민간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시키거나 품질을 낮추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민간화를 담당할 적당한 사기업이 없을 수도 있으나, 무리하게 추진하여 예기치 못한 역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섯째, 기존 재화나 서비스 공급자들이 민간화에 반발할 수 있다. 민간화 대상 분야나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직이나 임금의 삭감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항할 수 있다.

3.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간화에 따른 효용성과 문제점

민간화에 따른 통상적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방송통신기자재 인증 업무를 민간화하는 경우에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비용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인증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만을 수수료로 책정하여 의뢰인에게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비에 이윤을 더하여 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증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둘째, 사기업이 인증을 담당하게 되면, 인증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인 신뢰성이 손상될 수 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법규범의 준수보다는 이윤 추구가 우선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예를 들면, 법규정을 위반하여 받는 경제적 불이익보다도 법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이 클 경우, 사기업이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셋째, 관련 법률에 국가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강제인증의 경우, 국가가 원칙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그러나 이를 민간에게 위탁한 이후에 인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

4. 민간화의 성공조건

가. 민간화의 일반적 성공요인

민간화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 정치적 반대, 국민의 불신 등 다양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결하여야 민간화가 가능하다. 민간화 최종 결정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성공요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복수 공급자에 의한 시장의 경쟁 상태 유지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복수의 잠재적 공급자들이 있어야 한다.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 공급자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민간화가 불가능하다. 민간 공급자가 독점적인 경우에도 정부의 독점성을 타파하려는 민간화의 의미는 감소될 수 있다.

② 재화 제공 경비 절감

국가 차원에서 민간화에 의해 재화나 서비스 제공 비용의 절감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경비절감은 민간화의 주요 목표이므로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 만족도 증진

민간화에 의해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고, 소비자 만족은 증대되어야 한다.

④ 통제수단의 확보

정부는 해당 업무를 수탁한 민간 서비스공급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사기업은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지만, 정부는 해당 업무에 대한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⑤ 실책의 최소화

민간화에 수반될 가능성 있는 실책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이익침해의 최소화

민간화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이익의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5.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간화 성공요인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간화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적정 경쟁 체제 유지

이중업무의 특성상 이중의뢰자에 의해 이중업체가 포획될 수 있다.

여 법 규정을 적절히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경쟁이 치열할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독점체제는 부적절하지만, 일정한 숫자의 인증기관만이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② 통제 수단의 확보

정부는 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사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증업무의 경우에는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정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인증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 만족도 증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조업체나 수입업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성공적으로 민간화가 진행될 수 있다. 즉, 인증업무를 수탁한 기관이 인증의뢰자의 이익 대변에 급급해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 5 절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수행 주체 간 업무특성 분석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수행 주체는 정부 혹은 사기업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수행주체로서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과 경영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양자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차이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먼저, 정치행정일원론(기술적 행정학)의 입장은 행정을 정치로부터 분리하여 기술적 과정으로 인식하고 과학적 관리법이 경영과 거의 동일하게 행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하면서 행정과 경영 간의 유사점을 강조한다.

반면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장은 행정기능의 변질과 더불어 행정의 정

조한다. 중립이론은 앞에서 언급된 두 이론을 절충한 중간이론이며, 두 조직 간의 차이는 질적인 문제보다는 양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입장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세하느냐 하는 것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세한 입장이 바뀌어 왔다. 그러나 현재에는 대체로 행정과 경영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여기에서는 행정과 경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통설을 토대로 정부나 사기업이 시험업무 수행주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마케팅 단계, 인증업무 집행단계 그리고 자료해석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1. 마케팅 단계

정부가 인증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없어도 모든 인증업무가 정부에 집중된다. 반면에 민간화가 되면 궁극적으로는 인증분야에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채택할 것이다. 정부가 인증업무를 독점하면 실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만 비용으로 발생하나, 민간화가 되면 이러한 비용 이외에 마케팅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이는 가격인상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2. 인증업무 집행단계

정부는 인증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려고 노력한다. 반면에 사기업은 법률의 엄격한 준수보다는 효율성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법규 준수와 허용된 기간 내에 인증업무 일정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인증업무를 집행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는 주어진 기간 내에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 할 것이다. 반면에 사기업은 주어진 기간 내에는 물론 가능하면 의뢰자 의 요구나 그들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조기에 종결하려고 야간근무, 주말근무 등도 할 것이다.

3. 결과의 판정단계

정부는 인증제도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시험 결과를 판정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民間 인증기관은 인증제도의 대상 집단이면서 동시에 의뢰자인 제조자, 유통업자, 수입업자 등의 관점도 고려하여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증업무가 민간화 되면 비교적 느슨한 판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업무단계별 수행주체 간 차이점

유형 단계	정부	사기업
마케팅단계	비용 전무	비용 발생
집행단계	법률 준수 강조	법규 준수 및 효용성 동시 고려
판정단계	엄격한 기준 적용	유연한 기준 적용

결론적으로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상이하다. 즉, 정부는 국민편의 증진이 목적이고, 사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인증업무행위가 단계별로 상이할 수밖에 없다. 즉, 법률 준수성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우수하고, 사기업은 의뢰자의 요구 충족 측면에서는 우수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 6 절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업무 민간 위탁방안

1. 인증업무 위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확정

인증업무 위탁은 정부와 민간 사이의 역할과 기능을 재분배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즉, 시험·인증분야에서의 국가기능의 틀(Framework)을 변화시키는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행위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혹은 전파연구원 내부에 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거나 연구원 내부에 임시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특히, 담당 정부부처는 위임방식의 결정, 수임 기관의 선정·통제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기능 진단, 기능 수행에 대한 사후적인 실태 점검 및 시험기관 등과 같은 연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인증기관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든지, 혹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조직에서는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기관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개경쟁방식이 아닌 지정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위원회는 내부 공무원, 학계 전문가, 산업체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바람직하다.

전담부서가 직접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간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다.

<표 5-5> 수탁기관선정 조직 형태에 따른 장단점

	전담부서	위원회
장점	-선정업무가 신속하게 완결될 가능성이 높음 -수탁기관의 수 및 선정기준에 대한 조속한 합의 가능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가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용이 비교적 용이함
	-선정결과의 객관성에 대한	-선정업무가 지역별 가능성이 높음

전담부서는 인증업무를 수탁한 기관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증의뢰자,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게 환류(Feedback)시켜 주거나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선 가능성성이 희박한 경우 위탁주체를 변경시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인증업무 위탁기관 선정 방식

민간위탁의 대상을 발굴하는 방안은 다양할 수 있으나 크게는 상향식 방법과 하향식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방식 중 반드시 하나를 택일하여 선정할 필요성도 없다. 즉, 두 방식을 혼합하여 선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향식 접근방식으로 대상자를 압축한 후 최종적으로는 하향식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접 순수사기업에게 위임하여 방식과 비영리기관을 거쳐 영리기관으로 위탁하는 단계별 위임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하향식 방법은 정부에서 위임대상기관을 설립, 발굴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상향식 접근방식은 정부는 제3자격 입장에서 견지하고 심의위원회가 위임대상 기준과 선정기관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증업무의 위탁을 확정하면,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위탁기관 선정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가. 하향식 접근방식에 의한 수탁대상 기관 선정

정부의 전담부서가 주도적으로 인증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을 일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기관으로서는 현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증기관, 순수 민간시험기관,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협회 등이 일차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기관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기를 거부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현재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파연구원 내부 공무원을 극

나. 상향식 접근방식에 의한 수탁대상 선정

전파연구원을 포함한 정부부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에만 간여하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모든 것을 여기에 맡기는 방식을 취한다. 여기에서 인증업무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인증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이 때, 선정 시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은 ISO Guide 65 등이다. 아울러 선정되는 인증기관의 숫자는 사전에 담당 정부부서와 심의위원회가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 혼합방식에 의한 수탁대상 선정

하향식과 상향식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혼합방식은 다양한 형태를 띸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파연구원에서 일차적으로 수탁기관을 복수의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복수의 대상 기관을 확정하고, 전파연구원에서 최종 확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 최종 확정은 전파연구원에서 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혼합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증업무의 단계별 위탁 방안

인증업무의 민간화는 직접 순수 사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안과 단계적 위탁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단계적 위탁방안이란 순수 사기업에게 업무를 위탁하기에 앞서 소수의 비영리기관에게 인증업무를 위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인증 업무를 순수 사기업에게 위탁하는 방안을 말한다. 위탁방안 채택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는 위탁가능 대상기관의 수, 최종 위탁대상의 수, 위탁대상기관의 사회적 신뢰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단계별 위탁방안을 채택하여 민간화 하였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 사기업에게 위탁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방안이 우월하다기 보다는

마. 인증 업무 위탁기관별 장단점

현재 인증업무를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크게 현재 다른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현재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현재 시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 그리고 필요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에서 인증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면 현재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을 신설하고 여기에 인증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위탁가능 기관별 장점과 단점을 예시한 것이다.

<표 5-6> 위탁대상기관에 따른 장단점

	현재 시험-인증업무 수행기관	현재 시험업무 수행 영리기관	현재 시험업무 수행 비영리기관	신설법인
장점	-축적된 노하우 활용가능 -인증업무 수행능력 검증 완료	-방송통신분야 시험 업무수행 경험	-방송통신분야 시험업무수행 경험 -효율성과 준법성 양립추구경향	-방송통신분야 인증경험 축적 -효율성과 준법성 양립추구경향
단점	-방송통신분야에 대한 제한적 경험과 노하우	-인증업무 수행 능력 검증 필요 -효율성 추구경향	-인증업무 수행 능력 검증 필요	-정부의 신규 투자 필요

제 6 장 국내외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관한 동향 조사

제 1 절 국내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관한 동향 조사

1. 법정의무 인증제도 개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법정인증제도와 인증관련기관이나 업종별 단체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민간인증제도가 있다. 또한 법정인증제도는 임의인증제도와 의무인증제도로 구분된다. 법정임의 인증제도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에 의해 시행하는 인증이다. 법정의무 인증제도는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법정의무 인증제도는 관련 부처별로 운영하는 적합성평가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국가시험·검사 및 교정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산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교정기관이나 검사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시험 기관에 대한 인정을 KOLAS가 주관하고 있다.

법정의무 인증제도는 KOLAS 수용 타 입법례와 KOLAS 미수용 타 입법례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KOLAS 미수용 타 입법례라는 것은 KOLAS에서 인정을 받지 않아도 관할 행정부처가 지정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KOLAS 수용 타 입법례는 6개 부처 23개 법령으로 KOLAS 인정기관을 시험검사기관으로 의무화한 법령은 12개, 선택하도록 한 법령은 11개이다. KOLAS 미수용 타 입법례는 시험기관과 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법정의무 인증제도에 관하여 안전, 품질, 환경, 보건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고, 각 주제와 관련 있는 법정의무 인증제도의 법 규정(지정요건, 제재요건)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안전과 관련된 분야로 고압가스가 있는데, 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근거규정이며, 소관부처는 지식경제부이다.

법률에 따라 시험·인증제도와 관련한 지정요건 및 제재요건이 대동소이하였다. 그리고 정교성이나 포괄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법 조항이 지정요건이나 제재요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법률도 있었고, 몇 개의 조문으로 포괄적으로 서술한 법률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품질에서 농산물분야의 지정요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제19조(농산물의 검사),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7조(농산물의 검정 등)이며,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제15조의 9, 제21조의 5, 제36조, 제43조의2, 제43조의3에서 다루고 있다. 농산물분야의 제재요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2(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24조(검사판정의 취소), 제26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이며, 세부사항을 시행규칙 제15조의12, 제21조의7, 제39조, 제43조의4에서 다루고 있다. 즉, 농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시험·인증제도에 관한 내용은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에너지 분야의 지정요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이며, 세부사항을 시행령 제20조에서 다루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제재요건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와 세부사항을 시행령 제21조에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 관련 분야는 다른 분야의 규정과 비교할 때,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법정의무 인증제도 현황을 간략하게 표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안전, 품질, 환경, 보건 4가지 주제로 각 부처에서 어떠한 분야에 대하여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개별 법규의 지정 및 제재요건의 구체적인 내

<표 6-1> 법정의무 인증제도 현황

구분	소관부처	대상분야	근거규정	지정요건	제재요건	비고
지식경제부	고압가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 제35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8조	법 제35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8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법 제13조, 제17조, 18조, 시행규칙 제7조, 제18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안전	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법 제24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선박	선박안전법	법 제18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36조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46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선박 (콘테이너)	선박안전법	법 제23조,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시행령 제60조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지정시험기 관)	
국토해양부	철도	철도안전법	법 제27조,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시행규칙 제53조, 제63조, 제69조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지정시험기 관)	
			법 제60조,	시행규칙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구분	소관부처	대상분야	근거규정	지정요건	제재요건	비고
안전	방송통신위원회	전파	전파법	법 제58조의5 시행령 제77조의8	법 제58조의7 고시 제9조, 제12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행정안전부	소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시행규칙 제43조, 제45조, 제47조	법 제38조, 시행규칙 제49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안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법 제12조,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8조의4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 제24조	법 제25조, 시행령 제13조의2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품질	지식경제부	계량	계량에 관한 법률	법 제20조, 제21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법 제22조, 시행령 제24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서유	석유 및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구분	소관부처	대상분야	근거규정	지정요건	제재요건	비고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법 제13조, 시행령 제20조	법 제15조, 시행령 제21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국토해양부	건설	건설기술관리법	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48조	법 제26조, 시행령 제91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품질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법 제6조, 제14조의2, 제19조, 제26조,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21조의5, 제36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법 제6조의2, 제14조의3, 제24조,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12, 제21조의6, 제21조의7, 제39조, 제43조의4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물	수산물품질관리법	법 제29조, 제30조, 제34조, 시행령 제32조의2	법 제35조, 시행령 제32조의5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환경	염관리	염관리법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법 제10조의2, 제11조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제20조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구분	소관부처	대상분야	근거규정	지정요건	제재요건	비고
환경부		악취	악취방지법	법 제17조,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	법 제19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법 제14조의2, 제16조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자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0조의4	법 제25조의4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법	법 제74조, 제74조의2, 시행규칙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3조의2	법 제74조의3, 제75조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	공중위생관리법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5조	법 제9조의2	KOLAS 수용 법령 입법례
		식품위생	식품위생법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실종아동보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법 제12조	KOLAS 미수용 법령 입법례 (검사기관)

2.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규정 현황 분석

법정의무 인증제도는 국민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별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관련 법령에서는 시험·인증 관련 내용이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제재요건으로 나뉘어 규정하고 있다. 지정요건은 인증 관련 시험·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지정조건에 대한 내용이며, 제재요건은 지정기관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내용이다. 처벌규정은 일반적으로 처벌주체, 처벌유형, 재지정 제한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인증제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는 법에서 규정한 시험 및 검사기관 처벌 규정에 대해서 처벌주체, 처벌유형, 재지정 제한 규정을 통해 비교·분석하도록 하겠다.

가. 처벌주체

처벌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이 하위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시·도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장이다. 이를 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시험 혹은 검사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처벌의 주체로 하고 있으며, 일부 법률에서만 하위 지방 행정기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부분의 법률이 중앙행정기관의장을 처벌의 주체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염관리법의 처벌규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있다. 아래는 염관리법 제10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이다.

염관리법 제10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상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품질검사기관에 서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와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에 속한 하위 지방행정기관의 장도 처벌 주체가 되기도 한다. 선박안전법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음은 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 승인의 취소 등)의 내용이다.

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지정시험기관에 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상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토해양부장관이 업무 정지 및 지정취 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규칙에서 국 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형식승인에 관해서 처벌규정에 대한 정지기간의 효력범위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 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선박안전법의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이 하위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속한다.

(3)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률에 의해서 처벌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로 위임되기도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아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상기 법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직접 검사기관이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했을 시,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처벌유형

처벌유형은 00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과 기관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으로 구분된다. 지정기관을 취소하는 조항은 제재요건 중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법률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각 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 2) 검사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처벌규정으로서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파법은 공통 사항뿐만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어 다른 법과 비교해봤을 때 처벌규정이 엄격하다.

뿐만 아니라, 전파법은 다른 법과 비교하여 다른 법이 대체로 6개월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다고 명시한 것에 반해 ‘1년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교적 제재규정이 엄격하다. 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전파법의 처벌규정은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으로 업무 정지의 내용은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전파법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파법은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악취방지법의 처벌규정은 제19조

악취방지법 제19조(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악취방지법은 제1호를 제외한 제2,3호의 경우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며, 6개월 이내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

다음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 내용은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으로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지정기관이 이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게 되어있다. 전파법과 다른 법 모두 지정취소라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장 엄격하고, 모든 법률에 공통된 사항이다. 하지만 전파법은 공통 사항에다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가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법과 비교해봤을 때, 지정취소 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파법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처벌규정은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로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경우, 업무의 정지와 취소를 동일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취소에 관한 경우는 제1항, 제2항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재지정 제한

재지정 제한은 지정시험기관이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에 다시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최소한 시험·인증 폐지 기간을 의미한다. 일부의 법률은 재지정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일부 법은 재지정 제한 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3년까지 규정하여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 바로 재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에서 재지정 제한 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품질검사)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호의 요건 중 제3호는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된 자가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정 취소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라. 처벌주체, 처벌유형 및 재지정 제한의 관점에서 전파법 분석
앞서 살펴본 처벌규정의 처벌주체, 처벌강도 및 재지정 제한 규정에
대한 전파법의 규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전파법의 처벌주체를 전파법의 처벌규정인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전파법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파법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시험기관이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와 지정 취소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전파법은 중앙행정기관 혹은 담당 해당 부서의 장이 처벌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처벌유형은 전파법이 다른 법에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처벌규정 수준뿐만 아니라 처벌규정으로 하나가 더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조항’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에서는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이 처벌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파법은 1년 이내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은 재지정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즉, 법 논리적으로는 재지정 제한 기간을 명시해둔 법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이 지정 취소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소된 직후 바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파법에서 재지정 제한 법

다음은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규정에 대해서 표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표에서는 처벌규정에 속하는 처벌주체와 처벌유형, 재지정 제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1) 처벌주체

<표 6-2>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주체에 따른 처벌규정 현황

처벌주체	법
중앙행정기관 혹은 담당 해당 부서의 장	<p>염 관리법 (농림수산부장관)</p> <p>축산물위생관리법 (농림수산부장관)</p> <p>농산물품질관리법 (농림수산부장관)</p> <p>약취방지법 (환경부장관)</p> <p>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식경제부장관)</p> <p>철도안전법 (국토해양부장관)</p> <p>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지식경제부장관)</p> <p>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p> <p>건설기술관리법 (국토해양부장관)</p> <p>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장)</p>
중앙행정기관이 하위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선박안전법 (국토해양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받은 시·도지사, 흙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처벌유형

(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00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표 6-3>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유형에 따른 처벌규정 현황 1

사례	처벌 규정	처벌 1개월 이내	처벌 3개월 이내	처벌 6개월 이내	처벌 1년 이내	처벌 지정 취소	비고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축산물안전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악취방지법	<u>전과법</u>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철도안전법 축산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u>전과법</u>		전과법의 처벌 규정을 타 법의 처벌 규정과 비교한 결과, 처벌이 엄격함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철도안전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염 관리법 악취 관리법	<u>전과법</u>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철도안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염 관리법	<u>전과법</u>		

(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표 6-4> 법정의무 인증제도 처벌유형에 따른 처벌규정 현황 2

사례	처벌 1년 이내	처벌 지정 취소	비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u>전파법</u>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선박안전법 철도안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염관리법 악취방지법	전파법의 처벌규정을 타 법의 처벌규정과 비교한 결과, 지정업무에 대한 취소의 처벌강도는 비교적 유사하나, 업무처벌에 대한 강도가 1조항 추가되어 가중되었다고 할 수 있음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u>전파법</u>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철도안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염관리법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u>전파법</u>	

(3) 재지정 제한 조건

<표 6-5> 법정의무 인증제도 재지정 제한 조건 따른 처벌규정 현황

재지정 제한 조건	법
재지정 제한 조건 1 (재지정 제한 조건이 없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선박안전법 철도안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염관리법 악취방지법 전파법
재지정 제한조건2 (2년 이내에 재지정 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재지정 제한조건3 (3년 이내에 재지정 불가)	식품위생법

제 2 절 해외 인증 및 시험기관의 지정요건과 운영 등에 관한 동향조사

1. 미국

가. 시험 기관 지정관련 규정

미국의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은 FCC의 4가지 인증제도인 Verification, SDoC, DoC 및 Certification 등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미국의 시험기관 지정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각 인증 별 시험기관의 지정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각 인증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제도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Verification

<표 6-6> 미국의 Verification

관련 규정	제품종류	시험소 지정 절차
Part 15B	TV & FM Receivers, Other Class B digital device, Class A digital device, External Switching Power Supplies, All other digital device, CATV Relay Transmitter, Stand-alone cable input select switch	Part 2, Section 2.948
Part 18	Most ISM Equipment	

(2) DoC

<표 6-7> 미국의 DoC

관련 규정	제품종류	시험소 지정 절차
Part 15B	PC and Peripherals, Most Receivers, TV Interface device Cable System Terminal Device	Part 2, Section 2.948 or MRA Phase I

(3) Certification

<표 6-8> 미국의 Certification

관련 규정	제품종류	시험소 지정 절차
Part 15C~F, Part 22/24/74/ 90/95등	Scanning receiver, Rader Detector, Access BPL, PC and Peripherals, TV Interface device, Most Receivers, Main Board, Add-on Card, SMPS for PC Low Power Transmitters Cellular/PCS Phone, Amplifier, Repeter, Wireless Microphone, Personal Radio Service Most Transmitter	Part 2, Section 2.948
Part 18	Consumer ISM Equipment	

(4) SDoC

<표 6-9> 미국의 SDoC

관련 규정	제품종류	시험소 지정 절차
Part 68	Telephone Terminal Device	N/A

상기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FCC의 시험기관 지정절차는 Part 2 Section 2.948 및 MRA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규정 별 지정절차에 따라 국가별로 등록 및 지정된 시험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10> Section 2.948에 따라 등록된 시험소

국가	등록시험소	국가	등록시험소	국가	등록시험소
Australia	6	Austria	2	Brazil	1
Canada	13	China	107	Denmark	1
Finland	5	France	5	Germany	30
Hong Kong	11	India	7	Indonesia	1
Ireland	2	Israel	8	Italy	6
Japan	127	Malaysia	4	Netherlands	3
New Zealand	2	Norway	2	Singapore	6
Korea	38	Sweden	4	Switzerland	3
Taiwan	69	Thailand	1	Ukraine	1
United Kingdom	20	USA	125	Total	610

전 세계적으로 미국 FCC에 자국의 시험소를 등록한 나라는 29개이며, 시험기관은 610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대체로 서구 선진국이거나 교역 중심의 경제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다.

<표 6-11> MRA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지역/국가	국가	등록시험소	국가	등록시험소
APEC TEL MRA	Australia	2	Canada	10
	Hong Kong	4	Singapore	2
	Korea	26	Taiwan	37
	Vietnam	-		
US-Japan	Japan	32		
US-EU	Australia	1	Belgium*	2
	Finland	4	France	7
	Germany	10	Italy	3
	Netherlands	5	Slovenia	1
	Sweden	1	Spain*	4
	United Kingdom	12		
Others	Israel			3

미국이 지정한 시험기관을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상대 국가와 MRA를 추진하여 미국 내 제조업체의 수출을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지정제도

미국의 시험기관 지정제도는 시험기관 지정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증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이를 재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6-12> 시험기관 지정제도

인증종류	지정 절차
Verification/Certification	Section 2.948에 따른 서류를 FCC의 OET에 제출/검토 후 인정
DoC	미국역내의 시험소의 경우, A2LA 또는 NVLAP에 따라 ISO 17025에 근거하여 지정 역외의 경우 상대국간의 MRA Phase I단계 및 상대국 승인기관의 규정에 따라 ISO 17025에 근거하여 지정
TCB	미국역내의 경우에는 NIST로부터 NVCASE Program에 따라 A2LA 또는 ANSI로부터 ISO/IEC Guide 65에 따라 지정됨 역외의 경우 MRA Phase II 단계 및 상대국 승인기관의 규정에 따라 ISO/IEC Guide 65에 근거하여 지정
비고. MRA Phase II를 진행하기 위해선 ISO/IEC Guide 65에 따른 별도의 조직이 필요함.	

미국의 시험/인증기관 지정 제도는 국내 지정과 MRA 협정에 따른 국외 시험기관 지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공히 국제규격인 ISO 17025 와 IEC/ISO Guide 65를 준용하고 있다. 아울러 MRA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다.

(1) Regulatory Authority (RA)

FCC가 담당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요구 사항과 CAB의 지정 책임을 맡고 있다.

(2) Designating Authority (DA)

NIST로서 CAB 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3) Accreditation Body (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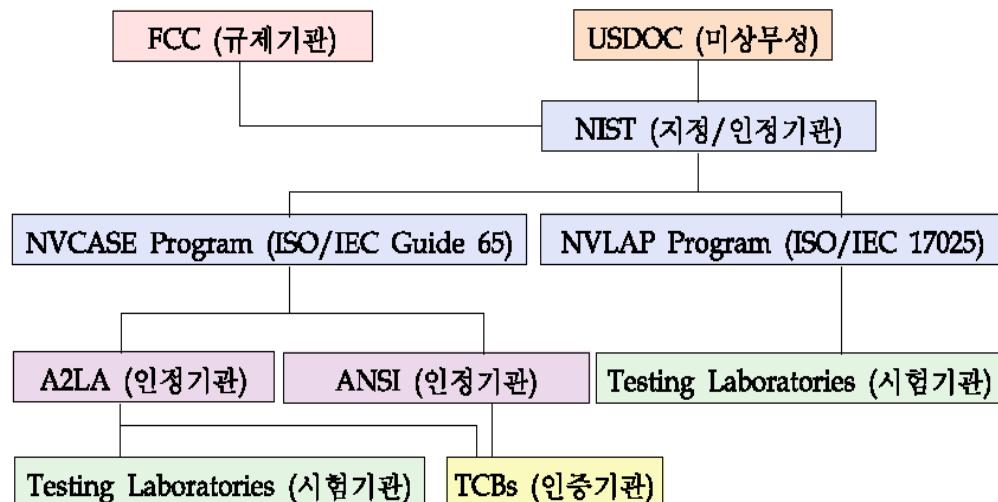
시험기관 및 승인기관의 지정을 위해 책임 있는 기관으로 NIST는 시험소의 지정은 A2LA 와 NVLAP을 두고 있고, 승인기관은 NIST National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 Systems Evaluation(NVCASE) Program을 통해 A2LA와 ANSI를 두고 있다.

(4) Conformity Assessment Body(CAB)

이 기관은 시험 인증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상기 기관들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1> 시험기관 지정제도 관련기관



미국은 국외의 경우 MRA를 체결하여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국가별 MRA를 추진하고 있는 당국/기관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13> 미국과 MRA 추진 국가 및 기관

MRA 종류	MRA 현황	해당국가	관계당국
APEC TEL MRA	Phase I	Australia	ACMA
		Canada	IC
		Hong Kong	OFTA
		Korea	RRA
		Singapore	IDA
		Taiwan	BSMI/NCC
		Vietnam	MIC
	Phase II	Canada	IC
		Singapore	IDA
		Hong Kong	OFTA
Japan MRA	Phase I	Japan	MIC
EU	Phase I/II	Australia	ACMA

<표 6-14> FCC에 등록된 유럽의 각 국가별 Authority

국가	인정기구	국가	인정기구
Austria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Arbeit	Luxembourg	Service de l'Energie de l'Etat
Belgium	Ministere des Affaires Economiques -Administration de l'Energie	Netherlands	Radiocommunications Agency Netherlands
Denmark	National IT and Telecom Agency	Portugal	Autoridade Nacional de Comunicacoes (ANACOM)
Finland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pain	Ministerio de Industria, Turismo e Comercio, Direccion General de Politica Tecnologica
France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Sweden	Swedish National Electrical

국가	인정기구	국가	인정기구
Germany	Bunde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Arbeit (BMWA)	United Kingdom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BERR)
Greec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General of Communications	Slovenia	Ministry of the Economy
Ireland	Commission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Czech Republic	Czech Offic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Testing
Italy	Ministero delle Comunicazioni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간 활발한 MRA를 추진하기 위해선, 별도의 공인심사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MRA Phase II를 추진한 나라들의 인증제도를 살펴보면 민간인증제도인 TCB (Technical Certification Body)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MRA Phase II를 추진한 나라들의 TCB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15> 미국과 MRA Phase II를 추진한 국가의 TCB 현황

Country	Number of TCB Recognized by the FCC
United States	18
Europe	12
Canada	2
Singapore	1

위의 표 및 그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시험기관 지정제도는 FCC Rule Section 2.948에 따라 직접 등록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FCC

Certification를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험소의 경우에는 FCC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평가 기관인 A2LA, NIST 또는 ANSI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시험기관 지정 기관별 요건과 재제 조치

(1) NVLAP

① 인정 요건

NVLAP 프로그램은 NIST handbook 150에 의해 인정되며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핸드북 부록 C 참조)

- NIST 핸드북 150 및 관련 기술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은 NVLAP 요구 사항의 상시 준수(ISO/IEC 17025:)
- 인증 절차를 수행 받게 될 때 결과에 상관없이 수수료 및 유지비용을 납부
- 필요에 따라 숙련도 시험에 참여
- 인증 상태를 참조하는 NVLAP 조건 수행
- 모든 부적합성 문제의 해결
-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30일 이내에 NVLAP에 신고
 - 법률적, 상업적, 조직 또는 소유권 상태 변경
 - 조직 및 관리 직원의 변경
 - 적절한 선에서의 정책 또는 절차 변경
 - 연구소 소재 위치 변경
 - 인력, 장비, 설비 및 작업 환경의 중대한 변경
 -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변경
 - 기타 실험실의 능력 또는 인증 활동 그리고 NVLAP에서 요구한 사항의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문제의 발생

② 운영 지침 위반 시 실질적 제재 조치

NVLAP 매뉴얼 3.11 항에서는 인증의 무효와 소멸에 대해서 다룬다. 인증기관이 잘못 인증을 수행했을 때 또는 운영 지침을 위반했을 시 NIST는 NVLAP의 운영 지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절차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때 위반 정도에 따라 시험기관의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3.11.1 NVLAP이 시험 기관에 대한 인정을 취소 또는 거부했을 때 NVLAP은 인정 취소 또는 거부 사유를 시험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이의 신청 방법을 알려 주어야만 한다.

3.11.2 시험기관은 인정 취소가 통보된 뒤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을 한다면 시험기관의 인정은 이의 신청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지만, 시험소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0일 뒤에 인정은 소멸된다.

3.11.3 만약 인정이 취소된다면, 시험기관은 자발적으로 인정을 포기할 수 있다.

3.11.4 인증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보고서, 광고 등에 NVLAP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시험기관이 발급하였던 인증과 증명서를 반환할 필요성은 없다. 정지 기간 동안만 NVLAP의 마크를 사용하지 못하며, 다시 인정이 회복되면 시험기관은 다시 예전의 인증 역할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3.11.5 인정이 취소되거나 소멸된 시험기관은 후에 NVLAP 프로그램에 재신청을 할 수 있다.

(2) NVCASE(National Voluntary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 Systems Evaluation)

미국 내에서 시험기관 또는 인증기관을 인정을 해주기 위해 NIST는 NVCAS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이

또 이 가이드에서는 미국과 타 국가와의 MRA 체결 현황에 따른 상대국 시험기관 / 인증기관 인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① 인정기관의 자격 요건

시험기관/인증기관/관리감독 기관을 임명하는 인정기관은 NVCASE 부록에 나와 있는 인정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2.1 ISO/IEC 17011:2004 - Conformity assessment - General requirements for accreditation bodies accrediting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or its replacement)을 만족시켜야 한다.

2.2.a 고위 경영진이 인증 전반에 대한 경험과 국내 및 국제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영진은 경영 원리, 기술 지식,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2.b 인증자는 NIST에서 시행하는 인증에 대해 기술의 세부적인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 적절한 전문가나, 전문 서비스 및 자원에 쉽게 연결될 수 있어야만 한다.

2.2.c 인증기관 내 기술 전문가/평가자는 인증기관 및 연구기관의 인정을 받기 위한 자세한 MRA 및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알아야 하며, 기관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야만 한다.

② 시험기관의 인정 기준

3.1 인정을 받고자 하는 시험 기관은 ISO/IEC 17025:1999,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competence of testing and calibration laboratories (or its replacement)을 완벽히 만족시켜야만 한다.

3.2. 세부 요건

- EU안에 위치하고 있는 시험소는 US-EU MRA phase 1에서 정한 규

가포르)는 APEC MRA phase 1에 대한 규칙에 따라 인정한다.

- 기타 미국 외에 위치한 시험소는 해당 국가와의 MRA 체결 현황에 따라 그 규칙을 따라 인정한다.

③ 후보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3.1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든 후보 인증기관(TCB)은 ISO/IEC Guide 65 - General Requirements for Bodies Operating Product Certification Systems (or its replacement)을 완벽히 만족시켜야만 한다.

3.2. 세부 요건

- 통신 분야의 TCB는 FCC에서 지정한 아래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http://www.fcc.gov/Bureaus/Engineering_Technology/Public_Notices/1999/da991640.txt

- EU 안에 위치한 후보 인증기관은 EU-US MRA 규칙을 준용한다.
- APEC MRA phase II가 실행된 국가(캐나다, 홍콩, 싱가포르)들은 APEC MRA 규칙을 준용한다.
- CITEL MRA phase II가 실행된 국가들은 CITEL MRA 규칙을 준용 한다.

④ NVCASE 프로그램의 정지 및 취소

NVCASE는 프로그램에 의해 인정받은 시험, 인증기관이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NVCASE Handbook에 나온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3 NIST는 만약 NVCASE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중대한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전체 적합성이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인증 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5일 이내에 정지를 받은 인증기관은 NIST에 확인했다고 통보해야만 하며, 통보 확인일로부터 정지 기간이 계산되어 적용된다.

5.4 인증의 소멸

NIST는 인정자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있다고 판단될 때, 인정자의 인정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인정자가 사기 또는 불법적인 행위 등 NVCASE 요구 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때 적용된다.

5.4.1 비자발적 인정 소멸 절차

인정이 비자발적으로 소멸될 일이 발생하였을 때, NIST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인정을 소멸시킨다.

NIST는 먼저 인정이 소멸될 일이 생기게 되었으면 해당 기관에게 서면으로 인정이 취소되는 이유를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뒤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NIST에서 지적한 해당 결함을 수정하여야 한다.

30일안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NIST는 자동적으로 인정을 폐기한다. 하지만 만약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NIST는 이를 검토하고 인정 폐기날짜를 늦추거나 인정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이의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면, NIST는 인정을 폐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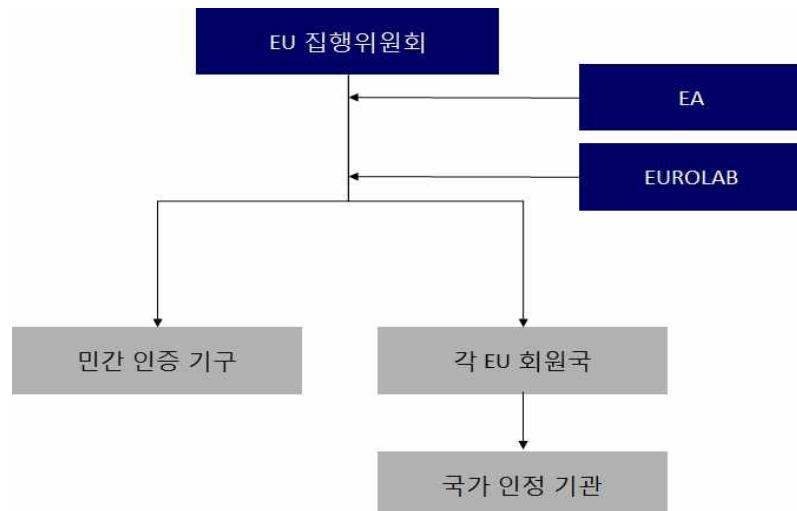
시험 및 인증기관이 인정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경우 NIST는 모든 다른 인증 및 시험기관들에게 인정이 폐기되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만 하고, 언제부터 인정이 폐기되는지 알려야만 한다. 또한 인정의 폐기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시험 및 인증기관은 인정 취소 사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위 변화가 없음도 통보하여야 한다.

인정이 취소된 인정기관은 인정이 취소된 이후, NVCASE에 필요한 여건을 다시 갖춘 후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EU

Notified Body)을 지정한다. 각 EU 회원국의 사정에 따라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지침은 국가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상호 협력을 위해 인정기관협회(EA :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및 시험기관협회(EUROLAB)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6-2> EU 집행위원회 구조도



나. 인정기관의 인정

(1) 인정기관의 인정 기준

EU 회원국이 인정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유럽공동체에서 2000년에 발행한 “접근방식 및 총괄적 접근방식을 근거로 한 지침의 이행을 위한 안내서”를 준용한다.

기본적으로 공인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 기관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회원국의 영토 안에 설립되어야 하며 회원국의 사법권 내에 위치한 법인이어야 한다. 또한 공인 기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EU 국가별 관할 기관이 그 증명을 요구할 때 기관이 고고한 신임을 갖도록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에

공인은 EU 회원국의 재량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회원국이 공인기관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증명서를 EU 회원국의 인증 관련 기관에 통고할 의무는 없다. 또한 회원국은 국가별 지침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에 대하여 타국 기관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설사 통보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국은 각국의 지침에 기초한 적합성 평가 절차 중 하나 이상을 거친 제품의 경우에는 출시를 금지할 수 없다. 이는 모든 EU회원국이 지침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은 공인 기관의 역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공인 기관이 되려는 기관의 역량을 검증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해당 국가는 적합성 평가 절차에 규정된 기준과 필수 요건을 기반으로 검증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국 지침에 기재된 역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표 6-16> Notified Body와 관련된 EN 45000 규격 시리즈

구 분	인증기관/기구	시험 기관	검사 기관
인가 기관 기준	EN 45010	EN 45002 EN 45003	EN 45010
인가 및 평가 기준	EN 45010	EN 45002	EN 45010
운영 기준	EN 45011 EN 45012 EN 45013	EN 45001	EN 45004

EN 45000 규격은 일반적으로 기관의 조직 및 경영에 관한 부분과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기술적 요건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합성 평가 절차의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그 두 가지 부문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EN 45000 규격은 총괄적으로 고려된다. 다음 표는 표 6-16과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 표로 표 6-17이다.

<표 6-17> 모듈 별 EN 45000 시리즈의 관련 규격

모듈	해당 EN 45000 규격
Aa1, Aa2	EN 45001(+적합성 평가 및 결정 능력) 또는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B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Cbis1, Cbis2	EN 45001(+적합성 평가 및 결정 능력) 또는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D, Dbis	EN 45012(+지식 관련 제품)
E, Ebis	EN 45012(+지식 관련 제품)
F, Fbis	EN 45001(+적합성 평가 및 결정 능력) 또는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G	EN 45004(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EN 45011(EN 45001 요구되는 시험에 대하여 준수됨)
H	EN 45012(+지식 관련 제품)
Hbis	EN 45012 + EN 45004 또는 EN 45011

EN 45000 시리즈에 대한 적합성의 증명은 단지 시리즈에 명시된 지침만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완벽히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능력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과정이 생략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N 45000 시리즈의 관련 규격에 따른 역량의 평가는 EN 45000 규격이 지침에 따라 수행할 특정 업무와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기준에 대하여 적합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지식, 적합성 평가 절차, 관련 기술 및 규격의 자발적인 평가 기준 등의 요소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제품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요청은 품질 시스템(모듈 D, E, H 및 그 변형 모듈)과 연관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특히 중요한데 이는 품질 시스템이 해당 제품

공인 기관이 서로 다른 모듈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운용하는 경우 공인 기관은 다수의 EN 45000 규격을 적용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규격과 마찬가지로 모듈도 서로 다른 기술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관에게 각각의 해당 규격에 따른 완전한 평가나 재평가는 주요 목적이 항상 일관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경영 요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영 요건은 서로 다른 공식으로 표시되더라도 EN 45000 규격 사이에 하나의 공통 요소로서 간주된다. 기술적 역량(장비, 교육 및 직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각 관련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공인 기관의 평가에 관하여 회원국들 간에 신뢰성을 축적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항목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와 같은 요건은 EN 45003 및 EN 45010에 규정되어 있다. 회원국 국내의 인정 기관의 대부분은 그러한 규격의 요건을 이행하고 그에 따라 운영되며 인정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을 얻기 위해 동등한 평가 계획을 시행한다. 동등한 평가 계획은 국가별 인가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여야 하며 그들이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기관이 동일한 규칙, 기준 및 역량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회원국은 공인 기관이 그들의 역량을 항상 유지하고 그들이 공인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은 회원국이 선택할 사항이다. 그러나 인가 기관에서 개발한 감독 및 재평가에 관한 관행은 준수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제한된 시간 동안 특정 기관을 공인하여 추후의 공인을 갱신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공인 기관의 기술적 역량을 확인하지 않으며 과거에도 이를 확인한 적이 없다. EN 45000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할 수 없는 공인 기관을 가지고 있는 회원국은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인증이 수행된 기반이 되는 적합한 근거 서류를 제공할 것이 요청될 수 있다.

(2) 인정기관의 공인 절차 및 공인 취하

① 공인 절차

회원국은 지침이 채택된 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특정 기관을 공인할 수 있다. 증명서가 지침이 최초로 적용되는 일자로부터 부여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유예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공인 기관은 지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인증서를 발행할 수 없다.

공인은 집행위원회가 공인 기관에게 식별 번호를 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각 기관은 공인을 받은 지침의 번호에 관계없이 하나의 번호를 수령한다. 번호의 배정은 단지 공인 기관의 목록을 일관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행정상의 행위일 뿐이다.

회원국은 번호를 배정 받은 후 3개월 안에 자국의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러한 기한이 만료되면, 집행위원회는 기관에 배정된 번호를 회수할 수 있다.

특정 기관에 대한 공인은 필요한 모든 정보와 각 기관에 사전 배정된 식별 번호가 일반적으로 해당 지침의 이행 및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국가별 행정 부서에 의해 대표부를 통하여 집행위원회(사무총장) 및 다른 회원국(각 국의 대표부를 통해) 전송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인은 집행 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 전달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인의 취하

EU 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은 각국의 공인 기관의 역량에 관한 불신이 제기될 때 공인 시나 그 이후에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집행위원회가 자체적 발의에 의하거나 또는 고소장을 받은 후에 특정 공인 기관이 요건을 준수하고 있지

거와 관련된 합당한 입증서류를 요청한다. 회원국이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집행위원회는 이를 다른 회원국들에게 알려서 협의하거나 공인한 회원국에 대하여 유럽공동체 조약 제226조에 의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에 의해 공인된 기관이 요건이나 그 의무를 적합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유럽공동체 조약 제227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EU 조약 제 226조 또는 제 227조는 해당 회원국이 부적합한 일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권한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다. 공인 기관이 요건이나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회원국은 해당 기관에 즉시 연락한 후 공인을 취하하거나 적합한 경우 이를 정지시켜야 한다. 회원국은 또한 이러한 정보를 공고해야 하며 공고 절차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 및 다른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소가 공인의 취하를 지연시키게 되는지 여부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의 담당 기관은 단독으로 공인을 취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공인담당기관이 공인을 취하하거나 또는 유럽공동체 조약 제226조 및 제227조에 따른 위반 소송의 결과 특정 회원국의 공인기관이 해당 지침을 위반하였으며 그에 따라 공인은 무효가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되는 경우 단지 통합 명부에서 공인 기관을 삭제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공인 기관 및 적합성 평가

공인 기관은 필수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요건이 해당 지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일관성 있게 기술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받기 위한 평가를 받는다. 공인 기관은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기술적 업무 및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 기관은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합한 품질 관리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수 없는 한 세트의 개별적 모듈로 분류된다. 이는 공인 기관이 완전한 하나의 모듈이나 또는 다수의 완전한 모듈을 기반으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인 기관은 한 가지 모듈의 일부에 대하여 공인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H모듈에 대하여 특정 기관은 설계 단계에 관한 것만으로는 공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모듈 D, E, H 및 그 변형 모듈에 대하여 공인을 받은 기관은 관련된 품질 시스템의 측면 및 제품 관련 요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지, 공인 기관은 그의 작업 과정 중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줄 수 있다.

다수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인 기관은 각 업무의 관련 요건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해당되는 서로 다른 절차에 대한 요건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 접근방식 지침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요소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 기관은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그 범위 내의 한정된 제품에 대해서만 자격을 갖추면 된다.

공인 기관은 적합성 평가의 수행 및 증명서 발급이 검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한 구조와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관련 절차에는 증명서의 중지 및 취하, 제조업자에게 정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할 기관에의 보고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란 규정 범위 내에서 특정 책임을 이행하는 것과 별도로, 공인 기관은 산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라고 자신을 간주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 기관은 제조업자 및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에게 해당 지침에 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제조업체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시행하며 추가 증명이나 부가 가치가 없는 마크의 표시를 제안하는 것 등을 삼가야 한다.

제조업체에 대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 기관에 제공되는 기술 문서는 단지 지침에 대한 적합성 평가의 목

한 제품 범주나 다른 제품 범주에 대하여 모듈 D, E, H나 그 변형 모듈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공인 기관은 증명서가 지침의 해당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품질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현할 필요성은 없더라도 공인 기관은 또한 (신)제품 범주와 특별하게 관련이 있는 적절한 보완적 감사를 요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공인 기관은 공인 회원국의 영토 안에 설립되어야 하지만, 그 회원국 내부에서만 한정하지 않고 타 EU회원국 또는 EU공동체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그 외부에서 직원을 둘 수 있다. 그러나 증명서는 항상 공인 기관에 의해 그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공인 기관은 공인을 지정한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서 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인 기관은 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 함에 따라 그 전체적인 기관을 확실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공인 담당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감시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공인 담당 기관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공인을 취하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다. 영국의 인증제도

유럽의 인증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을 소개하면, 2007년 이노베이션·대학·기능성(이하 DIUS)이 신설하여 NB(Notified Body)지정업무를 DIUS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이때 DTI에서 정한 UKAS 만이 영국이 지정한 Notifying Authority(NAB, National Accreditation Body)이다. 그래서 영국은 UKAS가 인정한 단체만 NB(Notified Body)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인정에 의해 단체는 EMC 분야의 NB 또는 R&TTE 분야의 NB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UKAS 문서 "P16 Assessment of approved and notified body"에 NB의 평가와 인정에 대해 설명이 되어있다.

한다. 이러한 UKAS 평가는 영국 법률과 기관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 평가들은 다른 영국 기관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진다.

(2) 판정기준

UKAS는 기관에 대한 평가 시 영국 법률 또는 Competent Authority에서 발행한 지정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이 판정기준들은 대부분 ISO17000시리즈에 기반한 EN45000 시리즈에 서술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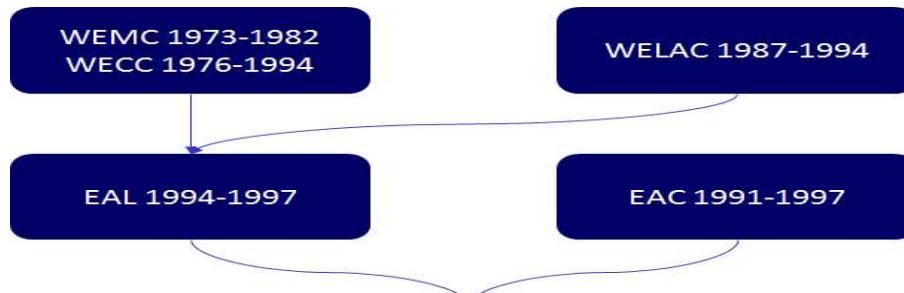
(3) 신청과 평가

UKAS가 지정평가 신청을 받게 되면 UKAS는 신청기관이 관련기준과 정해진 요구사항을 준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시작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종합하여 Competent Authority에 지정을 추천한다. UKAS는 직원의 ff의 일부를 전담 인력으로 지정하여 평가과정을 조율하고 관리하게 하며, Competent Authority에 규정된 평가 지침에 EN 45000/ISO 17000시리즈의 요구사항과 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UKAS는 평가 결과를 Competent Body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 Competent Body는 신청기관에게 지정결과를 통보한다.

라. 인정기관 연합(EA :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

(1) 소개

<그림 6-3> 인정기관 연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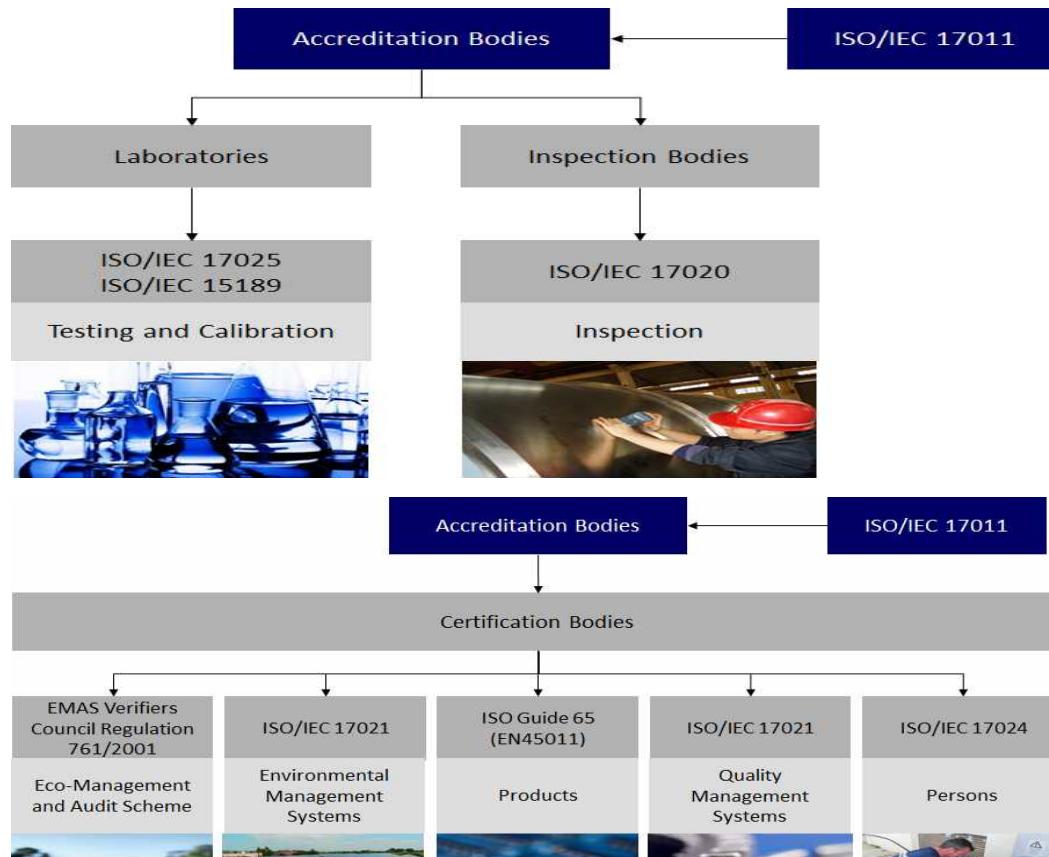


EA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그 전신 조직들은 위와 같다. EU 33개국을 대표하는 33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의 인정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인정기관의 연합인 EA는 인정기관 간 MRA를 체결하여 국가별로 다른 인증 및 체계적 조항에 대해 협력을 맺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EU 국가 간 상이 할 수 있는 상품 및 인증 제도를 국가 간 인정하게 함으로써 EU 국가 간 편리성을 도모한다.

(2) EA에서 지정하는 인증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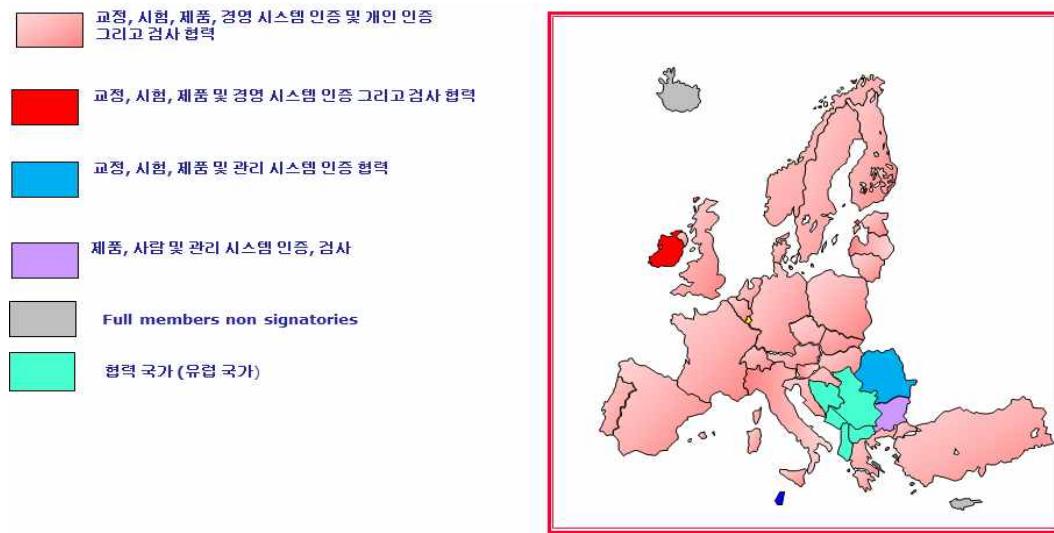
<그림 6-4> EA에서 지정하는 인증 표준



(3) 회원국 현황

EA는 MRA를 통해 인정 및 인증제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래 그림은 MRA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의 현황 및 그 범위를 나타낸다.

<그림 6-5> MRA 협약에 서명한 국가 현황



마. EUROLAB

(1) 소개

유로랩은 비영리 민간 법인으로써 유럽 표준 협회(CEN)의 가입국의 시험기관 간 협력과 연구방법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가입 조건은 CEN 회원국이면 가능하며 각 국의 한 개 이상의 NB가 이에 참여한다. 여기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조항은 없으며, 정관과 행동 강령을 통해 운영한다.

(2) 목적

국제 비영리 단체로써 시험기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험방법 연

(3) 업무

- 측정, 시험 및 분석 분야에서 과학 기술 협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
- 시험기관의 홍보 및 협력 연구를 촉진. 그리고 과학적 시험 방법에 대한 긴밀한 관련 프로그램 연구
- EN 표준의 개발 및 구현에 기여함으로써 검사 방법의 개발 및 해석을 위한 협력
- 실험실 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유도

(4) 회원 자격

① 정회원 / Associated members

EU 또는 EFTA 회원국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써 국가의 측정 및 시험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회원국 법률에 적합하게 설립된 법인은 회원 신청의 자격이 있다.

② 국제 제휴사

측정 및 시험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써 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률에 적합하게 설립된 법인은 참여할 수 있다.

(5) 입회 절차

회원 자격이 있는 법인이 회원 가입 신청을 하였을 때 정회원의 2/3 찬성을 통해 입회를 승인한다.

(6)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회원이 회원으로써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EUROLAB의 결속을 저해하려는 행동을 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다.

(7) 제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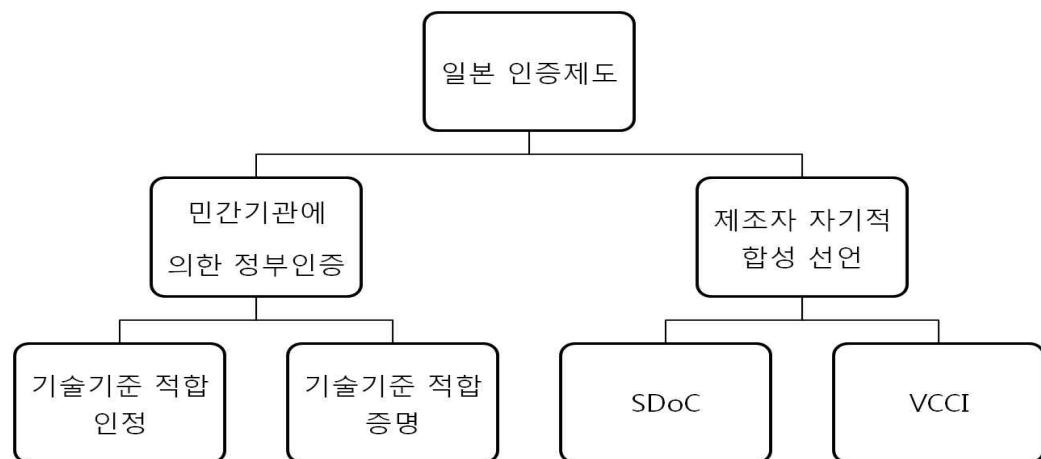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 찬성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

3. 일본

가. 인정 및 인증제도 현황

일본의 인증제도는 크게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과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이 있다.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 인증의 종류로는 JATE, PSE 등이 있고,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에는 기술기준 적합 자가확인제도(SDoC)와 단체 자율인증제도(VCCI)가 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6-6> 일본의 인증제도



이 모든 규제 및 시험기관의 지정은 경제산업성(METI)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 또한 경제산업성에서 주관하고 있다.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의 인증기관은 주로 JATE, TELEC, DSPR, Chemitox, JARD 및 TÜV가 있으며, 제조자 자기적합선언의 단체 자율인증제도로 VCCI가 인증기관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에도 크게 기술기준 적합인정과 기술기준 적합증명이 있다. 기술기준 적합인정에는 유선통신기기가, 기술기준 적합증명에는 무선통신기기가 해당된다. 시험기관도 각각 인정시험사업자와 인정점검 사업자로 나뉘어 심사가 되게 된다. 이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6-18> 일본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 비교

		민간기관에 의한 정부인증	
구분	기술기준 적합인정	기술기준 적합증명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전화망에 연결되는 단말기기(전화기, 교환기, 키폰, 모뎀, 팩스 등)	-면허를 요구하지 않는 특정무선기기(13종)	
	-무선페이지설비에 연결되는 단말기기	-포괄면허에 해당하는 특정무선기기(24종)	
	-ISDN망에 연결되는 단말기기	-검사를 면제받는 특정무선기기(59종)	
규제	-임대회선 또는 디지털전송설비에 연결되는 단말기기	-특별특정무선기기(자기입증대상기기)(8종)	
지정	경제산업성		
승인	경제산업성		
인정	인증기관인정 시험기관인정	JAB	
등록기관		경제산업성	
인증기관	등록인정기관(개편전: 지정인정기관) (JATE, TELEC, DSPR, Chemitox, JARD, TÜVR)		
시험기관	인정시험사업자	인정점검사업자	
	제조사 자체 시험성적서 발행	또는 일반시험기관 시험 의뢰	
인증절차	1. 단말기기 제조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무대신, 등록인정기관 또는 승인인정기관이 단말기기의 기술기준 적합에 대해 심사 2. 심사 결과 적합하면 성령으로 지정한 표시를 단말기기에 부착	1. 특정 무선설비의 제조업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총무대신, 등록증명기관 또는 승인증명기관은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에 대해 심사 2. 심사 결과 적합하면 성령으로 지정한 표시 부착	
사후관리	인증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기 미인증기기	총무성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도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시행된다. 하나는 SDoC로 제조자가 직접 자체 또는 외부시험소를 통해서 시

도를 이용하여 제품의 인증을 VCCI에 위임하여 VCCI 지정 시험소에 시험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표 6-19> 일본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비교

		제조자 자기적합선언			
구분	기술기준적합 자기확인제도 (SDoC)	단체 자율인증제도			
	일부 유·무선기기 (특정소출력기기 및 단말기)	정보기기			
	기술기준적합승인대상기기/특별특정무선기기	정보기기류			
규제	경제산업성				
지정	경제산업성				
인증기관	SDoC	전자파자주 규제협의회(VCCI)			
시험기관	제조자 자체시험 또는 외부시험소 이용 가능	VCCI 승인 시험기관			
인증절차	1. 총무성이 정한 시험방법 및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공급자가 직접 시험을 수행하거나 외부시험소에 이용 2. 적합성 확인 후 관련문서를 총무성에 제출(제품생산완료후 10년간 보관)	VCCI 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통해 VCCI 자체 SDoc			
사후 관리	인증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기 미인증기기	총무성			

나. 인정제도 현황

(1) 개관

일본은 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시험기관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3개 기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 인정기준은 대체로 ISO/IEC 17025를 따른다. 있으나 일부 기관은 자체적인 시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표 6-20> 일본 IT관련 시험소 인정기구별 특징

인정제도	인정기준
VLAC	ISO/IEC 17025
JAB	ISO/IEC 17025
IAJapan	ISO/IEC 17025

인정기구	VLAC	JAB	IAJapan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CCI(전자파자주규제협의회)의 시험소인정센터가 1999년에 법인 분리된 것 - EMC 시험소 인정(2005.5 기준 14개 시험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지원을 받는 사적비영리재단 - 적합성평가체계 하의 거의 모든 분야의 인정(경영 시스템, 시험소, 요원, 제품) - MRA법에 의한 지정인정기관 (Designated Accreditation Bod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행정법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의 인정담당부서 - IAJapan의 인정프로그램 : MRAP(측량), JCSS(교정), JNLA(시험), ASNITE(교정/시험) - JNLA가 2005.12 기준 약 63여개의 시험소 인정
인정영역	시험소 (테스트)	경영시스템/시험소 (시험, 교정)/요원/제품	시험소 (측량, 테스트, 교정)
IT관련	EMC 특화	전기(EMC)분야 포함	전기/전자 분야포함

(2) VLAC

(가) 개요

관계 관청의 지도에 의해 관련 4단체가 추진 모체가 되어 1985년에 VCCI를 설립하여, ITE(정보기술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전자 방해파의 자주규제를 개시하였다. VCCI는 창설 당초보다 전자 방해파를 측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전자 환경 시험소(측정 장소, 측정기기)의 특성

리적 요건」의 서면 심사에 의한 「측정 설비 등록제도」를 도입했다.

국제적인 시험소 인정의 흐름에 정합시키기 위해 ISO/IEC가이드58(교정 기관 및 시험소의 인정 제도-운영 및 승인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에 근거하는 시험소 인정 기관의 운용 및 ISO/IEC가이드25(교정 기관 및 시험소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에 근거하는 전자 환경 시험소의 심사 인정을 수행하는 「VCCI 시험소 인정 센터」를 1998년에 VCCI 내부에 설립했다. 새로운 시험소 인정 제도와 기준의 측정 설비 등록제도는 공존 하였다.

VCCI 시험소 인정 센터는 ISO/IEC가이드58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1999년에 VCCI에서 분리·독립해 「VLAC(주식회사 전자 환경 시험소 인정 센터)」라고 하는 명칭의 법인을 가지는 인정 기관이 되었다. VLAC의 설립에 의해 VCCI의 측정 설비 등록제도로 축적한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ISO/IEC 17025에 근거해 전자 환경 시험소의 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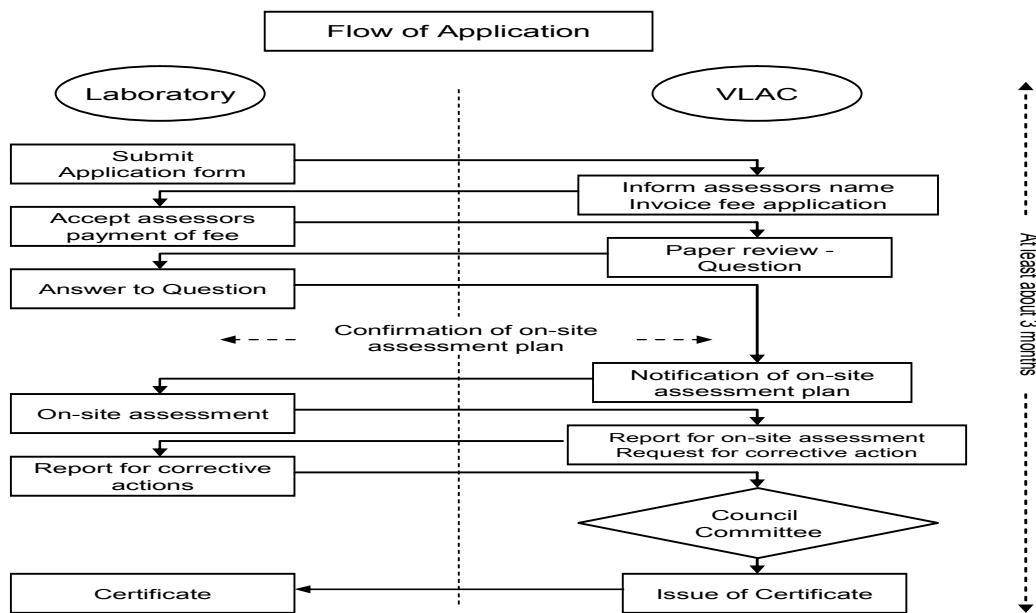
(4) 주요 업무

사업 내용으로는 국제기준에 근거한 EMC 시험소의 인정, EMC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EMC에 관한 기술·관리 교육, EMC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출판 및 EMC 측정 설비의 심사·등록 사업의 수탁 등이 있다.

(5) 인정 요건

- 인정대상 : 단일의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시험장 및 측정설비
- 서류심사 : 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류 심사
- 현지심사 : 품질 메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 상황 및 측정 설비를 포함한 시험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
-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하여 심사·인정
- 인정범위 : VCCI기술기준, CISPR22/CISPR24/CISPR11의 일부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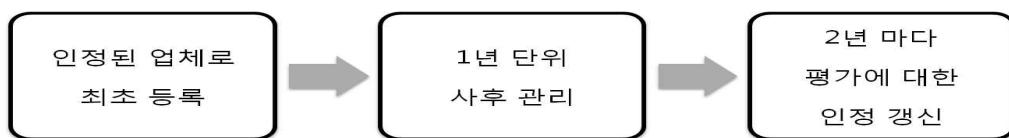
<그림 6-7> VLAC의 인정 절차



(라) 관리제도

VLAC의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2년에 1회씩 갱신하여야 한다. 사후 관리는 인증서 발급 후 1년부터 관리하기 시작하며, 작성한 문서 위주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림 6-8> VLAC의 관리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VLAC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시험소가 자발적으로 등록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시험소가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

(3) JAB

(가) 개요

일본의 적합성 평가 인증위원회 (JAB)는 민간 비영리 단체이며, 일본 유일하게 적합성평가제도 산하의 모든 인증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JAB는 1993년 11월 “품질 시스템 등록을 위한 일본인증 기관(“The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Quality System Registration”)” 이란 이름으로 일본경제연합위원회의 후원 아래 35개 산업 단체의 지원을 위한 일본산업규격위원회로 품질 경영 시스템 등록제도 산하의 Accreditation Body처럼 설립되었다. 그 이후, 세계의 움직임 및 일본의 시험기관 인가 등록을 설립하기 위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관리 시스템 등록 체계를 수립하였다. 1996년 6월 JAB는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시기에 “일본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증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이 조직의 핵심 활동목표는 일본 산업표준(JIS) 및 국제표준과 관계된 활동으로, 일본의 적합성 평가제도의 발전과 설립,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체계(MRA)를 발전시키고 설립함으로써 일본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기여 하는 것이다.

(나) 주요업무

JAB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소인정은 ‘시험소’, ‘교정기관’, ‘임상검사실’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분야에 대해 인정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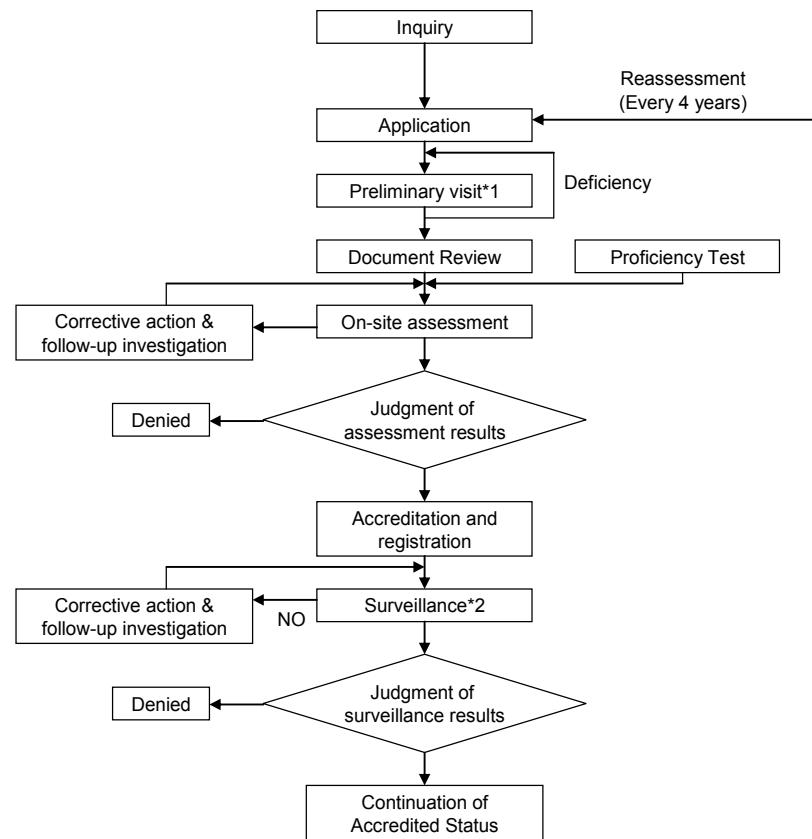
<표 6-21> JAB의 시험소인정 범위

구분	세부사항
시험소	전기시험
	기계 · 물리시험
	화학시험
	복합시험
	선박시험
	전자기량(직류/저주파)
	전자기량(라디오주파/마이크로파)

(d) 인정 요건

- 인정대상 : 단일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복수시험장(사이트) 및 측정 설비 등
- 서류심사 : 신청서의 관리 기준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류 심사
- 현지심사 : 품질 메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 상황 및 측정 설비를 포함한 시험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
-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해 심사·인정
- 지정절차 :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6-9> JAB의 지정 절차



(라) 관리 제도

인정기관(JAB 등)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 즉 JIS Z 9361 (ISO/IEC 안내서 61), "인증/등록기관의 평가 및 인정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은 인정기관이 인정 정지에 대한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JAB는 인정 정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인정의 정지 : 인정과 관련된 결정권이 있는 위원회(JAB에서는 '인정위원회'로 언급되어 있음)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 인정 상태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하며, 정지의 원인이 해소되고 인정위원회의 회복 승인이 확정된 때에 인정 상태를 회복한다."
- JAB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인정의 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인정 상태에 대한 주장과 인정 마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하지만, 활동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인증/등록 기관이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인정 범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다. (JAB R/T/C/CP213-2001 11.1)

- JAB 인정 절차에 명시된 감독, 개선 평가 또는 재평가 기간 중 JAB의 인정 기준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그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JAB에 대하여 고지/보고의무를 태만하거나 거짓으로 고지 또는 보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JAB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절, 방해, 기피한 경우 또는 JAB 규정에 기초한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을 거절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경우
- 6개월 이상 수수료를 미납한 경우

(4) IAJapan

(가) 개요

일본 인터넷 협회(IAJapan : Internet Association Japan)는 비영리 단

부(MIC)에 의해 2001년 7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설립 목적은 인터넷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고도 정보사회의 형성에 기여하여, 일본의 경제 사회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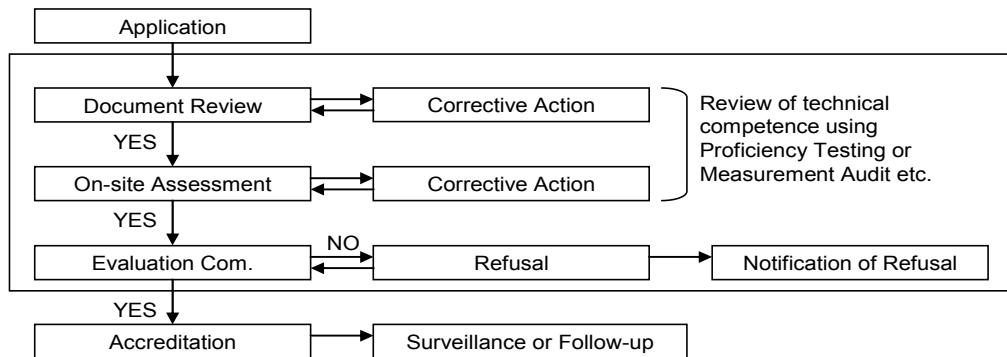
(나) 주요업무

- 인터넷 최신 기술 및 최신 동향에 관한 각종 세미나 개최
-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등급 시스템의 구축 운용
- 각종 부회 활동으로 인재 육성
- 인터넷 관련 기술의 개발과 실증
- 인터넷 관련 기술의 표준화 추진
- 네트워크 음악 저작권 협의회(NMRC : Network Music Rights Conference)
- 인터넷 핫라인연락 협의회(IHJ : Internet Hotlines in Japan)의 사무국 업무
- W3C, IETF, ISOCICANN, ICRA, APIA, APNG 등의 국제 조직과의 협동

(다) 인정요건

- 인정대상 : 단일 품질시스템을 적용하는 복수시험장(사이트) 및 측정 설비 등
- 서류심사 : 신청서의 관리 기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서류 심사
- 현지심사 : 품질 매뉴얼에 근거하는 시험소 관리 상황 및 측정 설비를 포함한 시험 기술의 적합성에 대해 심사
- 인정방법 : ISO/IEC 17025에 근거해 심사·인정
- 지정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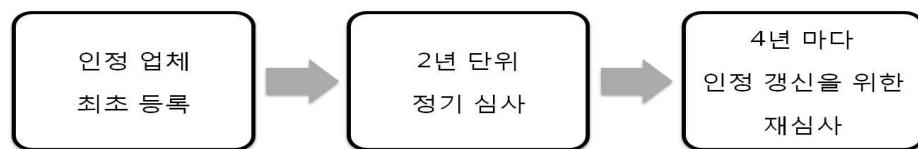
<그림 6-10> IAJapan의 지정 절차



(라) 관리제도

IAJpn중 JNLA는 자체 기술 문서를 통해 2년에 1회 정기 심사를 진행한다. 또 등록은 4년간 유효하며, 4년 후에는 재심사를 통해 인정을 연장하여야 한다.

<그림 6-11> JNLA의 관리제도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이 우리나라의 국제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교역 촉진을 위한 시험·인증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방안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국제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방송통신분야에 특화된 새로운 인정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엄격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전파법의 시험기관지정요건과 제재규정에 대한 검토도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인증제도 및 MRA 체결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험·인증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라오스는 인증제도가 없었으며, 캄보디아는 시험제도가 부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들의 시험과 인증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정보통신시장의 규모는 국가별로 크게 다르나, 대체로 빠른 속도로 신장하고 있다. 특히, 무선통신시장의 규모는 경제발전과 기술발전에 따라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시장규모와 시험·인증제도의 분석을 토대로 인정기구 간 혹은 국가 간 MRA를 체결하여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무선분야의 진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인정 서비스 시장은 KOLAS만이 인정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독점적 체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략 미흡 등 이전 서비스 시장의 독점되어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

게 변화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특화된 시험·인증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신설 인증기구(KCAS 가칭)의 설립을 전제로 이 기구가 국제 인정기구협회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PLAC의 경우, 직접 서명회원으로 진출하는 방안과 정회원-서명회원으로 단계적으로 진출하는 방안이 있다. 두 방안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서명회원으로 직접 진출하는 방안이 MRA 체결의 촉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국가 이익 및 전파연구원의 내·외부 환경을 조사하여 보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넷째, 전파연구원이 주체가 되는 특화된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인증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파연구원은 인증업무의 수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률 준수의 측면에서는 정부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민간이 우월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인증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이후에는 기관 및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과거보다 엄격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험·인증기관 지정조건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법률에 따라 제재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전파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처벌규정의 유형이 다른 법률보다 한 조항 이상 많고, 처벌 강도도 대체로 동등하거나 높다. 그러나 지정취소를 받은 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한 규정이 없어, 시험기관이 지정 취소된 이후 바로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지정취소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지정신청 제한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미국, 일본, EU 국가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정시험 및 인증기관의 인정기구 및 절차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시험기관을 지정할 때 관련 규정으로 ISO 17025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국가별로 지정요건은 대동소이하였다. 또한 치별규정도 상당히 유사하였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한 정책적 제언이 관계 기관에게 전달되어 연구결과가 법제도에 반영되기를 기원한다.

참고 문헌

- 김창수(2001), “21세기 표준과 인증의 이해”, 대광서림
- 기술표준원(2001), “2001기술표준백서”
- 구제길 외(2006), “정보통신 해외인증제도 조사, 분석연구”, 전파연구소
- _____ (2006), “정보통신 통합인증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연구”, 전파
연구소
- 이용규(2006),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시스템”, 박영사
- 전파방송기획단(2007), “정보통신기기 인증체계 개선방안”
- 전파연구소(2008), “인증제도 혁신에 따른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전파연구소(2009), “방송통신기기 국제 시험기관간 협력체계 방안 마련
연구”
- 전파연구소(2009), “방송통신 인증제도 개선 및 상호 인정협정 추진 연구”
- 정보통신부(2005),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 및 MRA연구(Ⅱ)”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2008), “기술표준백서”
- 방송통신위원회(2002),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제도, 상호인증에 관한 연
구 및 표준화 관련 국제협력(MRA)연구”
- 방송통신위원회(2009), “지정시험기관 관리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7), “주요국의 정보통신 시험·인증제도 및 체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6), “미국인증제도”
- _____ (2006), “일본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 (2007), “글로벌 표준화 협력체계”

한국전파진흥원(2008), “정보통신분야 인정기구 설립방안 연구”

<http://www.ilac.org/>

<http://www.aplac.org/>

<http://kolas.ats.go.kr/>

<http://www.mke.go.kr/>

<http://www.scc.ca>

<http://www.cala.ca/>

<http://www.jab.or.jp>

<http://www.nite.go.jp/asse/iajapan>

<http://www.vlac.co.jp>

<http://www.a2la.org>

<http://www.aclasscorp.com>

<http://www.iasonline.org>

<http://www.l-a-b.com>

<http://www.nist.gov/nvlap>

<http://www.pjlabs.com>

<http://www.aihaaccreditedlabs.org>

<http://www.worldbank.org/>

<http://www.kita.net/>

<http://www.kotra.or.kr/wps/portal/dknew>

부 록 1 목 차

1. 안전	315
가. 전파	315
나. 고압가스	319
다. 전기용품	326
라. 공산품	330
마. 에너지	336
바. 선박	340
사. 소방	346
아. 선박(콘테이너)	352
자. 철도	358
차. 축산물	368
카. 항공	374
타. 생명윤리	377
2. 품질	379
가. 계량	379
나. 석유	383
다. 에너지	392
라. 건설	395
마. 농산물	400
바. 수산물	413

3. 환경	428
가. 약취	428
나. 유해화학물질	431
다. 자원	435
라. 대기환경	437
4. 보건	443
가. 공중위생	443
나. 식품위생	445
다. 실종아동보호	449

1. 안전

가. 전파

- (1)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2) 근거규정 : 전파법
- (3) 지정요건 : 법 제58조, 시행령 제77조의8
- (4) 제재요건 : 법 제58조의7, 전파연구소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2조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 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반을 사항이 변경 또는

- 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 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 ① 법 제58조의5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기안전 분야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9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 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2.31.]

(나) 제재요건

전파법

제58조의7(지정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에 관한 절차, 측정설비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떤 일의 저부 또는 일부의 저지를 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나 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시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시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지정시험기관이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방송통신기자재 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제3장 시험기관의 변경 등

제9조(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 ①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전부폐지한 때에는 시험기관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업무의 중지 또는 폐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소장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관보에 공고여야 한다.
- ③ 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험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나. 고압가스

- (1)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2) 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35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58조
- (4) 제재요건 : 법 제35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 (5) 근거규정예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 ①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범위의 변경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이 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한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1>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 기준·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 ⑤ 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전문개정 2007.12.2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 · 재지정)

하는 공인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②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9.>

1. 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것

다.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자산능력이 있을 것

라. 삭제 <2009.11.19>

마. 검사기관의 검사시설 설치계획·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을 것

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의무·기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공인검사기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 검사대상시설 또는 제품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거나 가스시설의 안전업무를 할 능력이 있을 것

다. 제1호마목·바목의 요건을 갖출 것

- ③ 검사기관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9.>

④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기준과 지정·재지정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9.>

[전문개정 2008.6.20.] [제목개정 2009.11.1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의 서류는 하나의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
3. 검사기관의 운영규정
4.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5. 검사장비의 규격·성능 표시

② 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재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8조의2제4호에 따른 검사기관의 대표자의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에 변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다만,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36과 같다.
- ⑤ 시·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11.20.>
- [전문개정 2008.7.16.] [제목개정 2009.11.20.]

(나) 제재요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2(지정의 취소)

- ① 시·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2.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검사부적정(검사불적정)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2.21]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4조제1항 후단이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후단, 제5조의3제1항 후단이나 제5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성 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1.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7조나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이나 제22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다. 전기용품

- (1)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2) 근거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7조
- (4) 제재요건 :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8조

(5) 근거규정예시

- (가) 지정요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자율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심사원(認證審查員)과 시험설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

3.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④ 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전기용품군별 분류에 따라 안전인증, 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수행 범위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 일자 및 지정 번호
4. 업무수행 범위

⑥ 안전인증기관은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술표준원장은 제6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때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나) 제재요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0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6.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①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 공산품

- (1)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2) 근거규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6조
- (4) 제재요건 : 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 제18조
- (5) 근거규정 예시
 - (가) 지정요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안

위하여 필요한 시험·검사설비 및 심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09.6.30.>
- ③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별로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산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재요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3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5.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건을 불인 경우
6.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조치를 받은 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인증의 취소)

②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다른 안전인증기관, 시·도지사 및 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체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명칭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의 내용·일자 및 사유(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포함한다)

마. 에너지

- (1)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2) 근거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3) 지정요건 :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 (4) 제재요건 : 법 제24조
- (5) 근거규정 예시
 - (가) 지정요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높아 보급을 촉진할 필요

하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각 기자재별 적용범위
2.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인증 기준·방법 및 절차
3.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성능 측정방법
4.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이 우수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5. 그 밖에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기자재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표시를 하려면 해당 에너지사용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고효율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측정을 받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된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에 따라 이증은 반은 자가 아닌 자는 해당 고효율에너지인증대

-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⑦ 제2항의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다.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 라. 가목 및 나목의 연구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이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곤단에 이증을

1.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 결과
2. 에너지효율 유지에 관한 사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효율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효율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의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 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나) 제재요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관리시험기관, 대기전력시험기관 및 고효율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시험한 경우
 5. 제15조제5항, 제19조제5항 또는 제22조제7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2항 단서,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체 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바. 선박

- (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2) 근거규정 : 선박안전법
- (3) 지정요건 : 법 제18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36조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선박안전법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자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

같다.

-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당해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당해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사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 기관에 해당할 것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6조(형식승인의 신청 등)

- ①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

승인시험합격증서에 갈음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제4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이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한 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등 관련 서류 또는 제35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나) 제재요건

선박안전법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실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정지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지정시험기관에 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사. 소방

- (1)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2) 근거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지정요건 : 법 제36조, 제39조, 제42조, 시행규칙 제43조, 제45조, 제47조
- (4) 제재요건 : 법 제38조, 시행규칙 제49조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제36조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8.4.>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8.4.>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⑤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8.4.>
- ⑥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구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39조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

-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대상·절차·기술기준·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가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성능 시험을 위하여 서는 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다)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시험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26.>

1.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임원을 업무책임자로 하는 성능시험 전담조직을 갖추고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분야별 전문 인력을 각 2명 이상 보유할 것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대상품목중 지정을 받고자 하는 품목별로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지정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험시설을 갖출 것
4. 성능시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시행절차 및 시험시설유지관리방법 등을 규정한 성능시험업무규정을 갖출 것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 및 검사 기관일 것

제45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 ①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성능

1. 정관 사본 1부
 2. 삭제 <2006.5.26.>
 3. 대표자, 성능시험 전담조직의 책임임원 및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4. 시험시설의 명칭·수량·성능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5. 성능시험업무규정 1부
 6. 성능시험외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5.26.>

제47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44조의 규정에 의 한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지 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의 명칭·대표자·소재지·성능시험품목 및 업무개시일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나) 제재요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을 얻은 때
2.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때
4. 제품검사시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때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얻은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성능시험기관의 휴업·재개업 및 폐업)

- 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 10일 전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성능시험기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
- ② 성능시험기관은 제1항의 통보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통보사실을 제품승인을 받은 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아. 선박(콘테이너)

- (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2) 근거규정 : 선박안전법
- (3) 지정요건 : 법 제23조, 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1조
- (4) 제재요건 : 시행령 제60조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제23조(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 ① 선박에 적재되어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그 바닥의 면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컨테이너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관(이하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컨테이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정(이하 "컨테이너검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⑤ 컨테이너의 제조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형식승인판(이하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동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검정을 받은 때
3. 컨테이너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컨테이너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의 절차,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형식승인시험의 기준, 컨테이너형식승인을 얻은 자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⑧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이 부착 되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8조(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신청)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1호서식이 컨테이너형식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로 신청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만 첨부 한다)를 첨부하여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컨테이너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컨테이너의 제조 및 검사설비개요서
-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 ③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컨테이너 및 재료를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험비용은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별표 27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은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별지 제62호서식의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이하 "컨테이너시험성적서"라 한다)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이 날인 또는 각인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합격증서,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성적서 및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를 관할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59조(컨테이너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컨테이너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4호서식의 컨테이너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은 별지 제65호서식과 같으며, 그 컨테이너형식승인판에 컨테이너검정의 합격을 나타내는 확인표시는 별표 28과 같다.

제61조(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또는 선급법인일 것
2.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검사를 담당할 검사원이 있을 것

②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검사를 담당할 조직의 인력 구성
 5. 컨테이너형식승인시험의 방법 및 절차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지정시험기관이 대행할 업무의 범위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나) 제재요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0조(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 ①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효력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4.>
- ③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자. 철도

(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2) 근거규정 : 철도안전법

(3) 지정요건 : 법 제27조, 제28조, 제35조,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36조

(4) 제재요건 : 법 제28조, 제33조, 제35조, 시행규칙 제53조, 제63조, 제69조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철도안전법

제27조 (철도용품의 품질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에 사용되는 부품·기기 또는 장치 등(이하 "철도용품"이라 한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절차의 전부를 면제받은 철도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제품·포장 또는 용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8조 (품질인증기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품질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결과 품질인증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① 차량제작자등은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하 "성능 등"이라 한다)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확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성능시험"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의 성능등을 변경(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은 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성능시험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성능시험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① 차량제작자는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제작·조립된 철도차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철도차량은 제작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작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제작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성능시험기관과 제작검사기관은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겸하여 실시할 수 없다.

⑥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5조제6항 및 동조제7항의 규정은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제작검사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제작검사"로 본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4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품질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
으로써 품질인증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0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이하 "성능시험기관"이
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성능시험기관의 업
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
부, 성능시험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한 때
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1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

1.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4.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성능시험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성능시험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5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①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이하 "제작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제작검사 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작검사기관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25>

1.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3.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4.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검사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의2. 삭제 <2009.12.21.>

5. 지정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제작검사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제작 검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나) 제재요건

철도안전법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품질인증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결과 품질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33조 (품질인증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의뢰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표시정지 또는

제35조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성능시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성능시험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차량에 대하여 성능시험의 적합판정을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품질인증기관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②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제63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제69조(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제작검사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기관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차. 축산물

(1)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4) 제재요건 : 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28조의4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식육의 경우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로써 검사관의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① 제4조제3항, 제12조, 제15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토 또는 검사(이하 "축산물위생검사"라 한다)를 하는 기관(이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과 제1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평가 및 검사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재지정 신청을 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매년 축산물위생검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3. 검사 업무정지기간에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2.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5.2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국립축산과학원
 3. 식품의약품안전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관
- ② 검역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2.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 ③ 검역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따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나) 제재요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8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제11조·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 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4(검사업무의 정지 등)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의2와 같고, 법 제20조제6항제6호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별표 9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26.]

카. 항공

- (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2) 근거규정 : 항공법
- (3) 지정요건 : 법 제60조, 시행규칙 제201조
- (4) 제재요건 : 시행규칙 제201조의2
- (5) 근거규정 예시
 - (가) 지정요건

항공법

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①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 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장·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항공법 시행규칙

제201조(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 포장·용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설비 및 기기 일람표와 그 배치도를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시설·기술인력의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규정

- ②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의 포장·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 ③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Q 17020(검사기기 표준화 기준)을 준용한다.

여 그 내용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0.]

(나) 제재요건

항공법 시행규칙

제201조의2(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등)

-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1과 같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31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9.10.]

타. 생명윤리

- (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2) 근거규정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3) 지정요건 : 법 제24조
- (4) 제재요건 : 법 제25조, 시행령 제13조의2
- (5) 근거규정 예시
 - (가) 지정요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유전자검사기관 등)

- ①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검사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소재지, 기관장, 유전자검사 또는 연구항목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전자검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받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나) 제재요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유전자검사의 제한)

-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유전자검사의 제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10.4.]

2. 품질

가. 계량

- (1)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2) 근거규정 : 계량에 관한 법률
- (3) 지정요건 : 법 제20조, 법 제21조,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0조
- (4) 제재요건 : 법 제22조, 시행령 제24조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계량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정)

- 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 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검정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검정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정요원·검정설비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계량기 제작업자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를 자체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0에 따른 검정요원을 갖추었을 것
 2. 별표 14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었을 것
 3. 법 제22조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검정에 관한 업무 수행에 있어
서 독립성을 갖추었을 것

5.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

6. 검정업무규정을 정하였을 것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검정업무를 행하는 시간·장소 등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검정처리기간·검정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검정확인서의 발행 및 검정증인에 관한 사항

5. 검정요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6. 검정신청서의 보존 및 검정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검정요원의 준수 사항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계량기의 검정)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을 신청한 계량기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
량기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1. 기술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검정의 종류 및 검정항목에 관한 사항
3. 검정방법 및 검정절차에 관한 사항
4. 오차의 측정검사에 관한 사항

(나) 제재요건

계량에 관한 법률

제22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때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때
4.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검정기관 등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① 법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나. 석유

- (1)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 (2) 근거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3) 지정요건 : 법 제24조, 제25조, 시행규칙 제29조
- (4) 제재요건 : 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제34조
-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과학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
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
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5조(품질검사)

-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시설과 검사인력을 갖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로서 지
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자체검사자"라 한다)는 자체
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0.6.8.>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석유정제업자등이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
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④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1.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3. 지정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확보할 것
 2. 승인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체검사자의 승인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⑥ 한국석유관리원, 품질검사기관 및 자체검사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고, 해당 석유제업체등이 제29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4. 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6.>
-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

(나) 제재요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7조(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

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 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5. 제25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검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체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검사의 승인을 받은 경
우

2. 석유제품의 품질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정한 경우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제25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승인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25조제6항에 따른 검사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또는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승인의 취소와 검사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9조(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유사석유제품 제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2.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석유정제업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품질보정행위를 하는 경우
 3.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26조의2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경우
 4.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연료를 제조하거나 그 제조 연료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경우
 5. 경주용자동차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용도의 연료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6. 그 밖에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보급의 방법, 대상 및 절차 등을 고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9.1.30.]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의 중지 또는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의 공급·판매·운송의 중지를 명하거나 제조장·판매소·저장시설의 폐쇄·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철거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 ①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

에 관보나 공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16.>

1. 법 위반사실의 공표임을 알 수 있는 제목
 2. 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의 종류(석유 판매업의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종류를 말한다)
 3. 위반사업자(위반 석유제품의 공급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위반내용
 5.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6. 행정처분일 및 행정처분기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는 해당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공표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공표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16.>

1. 사업정지처분인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2. 과징금 부과처분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별표 1에 따른 사업 정지기간 이상

③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당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해당 공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정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1.]

제34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자의 승인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5.1.]

다. 에너지

(1) 소관부처 : 지식경제부

(2) 근거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3) 지정요건 : 법 제13조, 시행령 제20조

(4) 제재요건 : 법 제15조, 시행령 제21조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

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지식경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설비인증기관에 그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비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성능검사를 받은 후 그 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를 설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나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사업을 하는 자 중 설비인증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 ⑤ 설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설비인증을 신청받으면 성능검사기관이 발행한 성능검사결과서에 의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비 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⑥ 설비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설비인증의 절차, 설비인증의 사후관리,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설비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⑦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성능 검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설비인증기관에 대하여 지정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행정상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0조(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국가표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2. 지식경제부장관이 설비인증대상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검사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9.17.]

(나) 제재요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제15조(설비인증의 취소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① 설비인증기관은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설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에는 설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성능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3.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4.1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21조(성능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공고)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7.]

라. 건설

- (1)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2) 근거규정 : 건설기술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25조의2, 시행령 제90조, 시행규칙 제48조
- (4) 제재요건 : 법 제26조, 시행령 제91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 실시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평가기관의 지정, 관리,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0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기술표준원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항만청
 8. 국공립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시험·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시험·검사대행 실적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장비·기술인력을 보완하게 하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를 새로 등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3.] [제48조에서 이동 <2010.12.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등)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평가를 한 경우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0.12.20.]

(나) 제재요건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1993.6.1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1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등록 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연월일
2. 등록번호
3. 품질시험 분야
4.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5. 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농산물

- (1)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2) 근거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6조, 제14조의2, 제19조, 제26조, 제27조, 시행규칙 제15조의9, 제21조의5, 제36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 (4) 제재요건 : 법 제6조의2, 제14조의3, 제24조, 제27조의2, 시행규칙 제15조의12, 제21조의6, 제21조의7, 제39조, 제43조의4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관리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 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절차와 업무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9조(농산물의 검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 검사의 항목·기준·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4.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27조(농산물의 검정 등)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1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9(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①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1. 정관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계획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 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 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42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5. 유효기간

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외국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 기준과 심사 방법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17.]

제21조의5(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9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안전성검사 업무의 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보유한 분석장비, 인력 등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적은 검사업무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 기부 드보(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제36조(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3.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석전보의 고동이용을 통하여 벌이득기부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4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 평가기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정 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2009.12.17.]

제43조의3(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3.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품위·일반성분 분야 또는 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

-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한다.
-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 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정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검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고시한다.
- 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나) 제재요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2(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6.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실적이 없는 경우
 8.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업무를 잘못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제24조(검사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농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검사 결과의 표시 또는 검사증명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09.6.9.]

제2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12(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①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21조의6(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14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4의4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17.]

제21조의7(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① 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실을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12.17.]

제39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① 법 제26조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을 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17.]

제43조의4(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①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11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17.]

바. 수산물

- (1)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2) 근거규정 : 수산물품질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29조, 제30조, 제34조, 시행령 제32조의2
- (4) 제재요건 : 법 제35조, 시행령 제32조의5
-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이 맞는지와 위해물이 섞여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8>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 신청이 있으면 검사 인력이나 검사 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려면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04.12.31.>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1. 지정해역에서 위생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위생관리기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하거나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 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나.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만을 말한다)을 등록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종류와 대상, 검사의 기준·절차 및 방법, 제5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검사 업무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 업무 및 제42조에 따른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위생 관련 기관을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검사기관의 조직·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와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제34조(재검사)

① 제29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관이 아닌 다른 검사관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이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 채취나 검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2. 전문기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 관련 전문기관을 말한다)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같은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8.]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나) 제재요건

수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검사 판정의 취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에 따른 검사나 제34조에 따른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5(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8.4.]

사. 염관리

- (1) 소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2) 근거규정 : 염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2조의2
- (4) 제재요건 : 법 제10조의2, 제11조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염관리법

제10조(품질검사 등)

- ① 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 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농

<개정 2008.2.29, 2008.12.19, 2010.1.25.>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1.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을 갖출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3. 염제조업자가 아닐 것

③ 품질검사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과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④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19.>

⑤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및 품질검사기관의 검사기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인력과 검사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3.28.>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08.3.3, 2008.3.28, 2009.3.19.>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현황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3.19.>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하면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09.3.19.> [본조신설 2000.5.26.]

(나) 제재요건

염관리법

제10조의2(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검사 업무를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품질검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제11조(판매 등 금지)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염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사용·조리·저장·수입
또는 운반·진열할 수 없다.

<개정 2010.1.25.>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0.1.25.]

아. 먹는물

- (1) 소관부처 : 환경부
- (2) 근거규정 : 먹는물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43조, 시행규칙 제35조
- (4) 제재요건 : 시행규칙 제39조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습진의 출전·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한 수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⑥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⑧ 제5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 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⑨ 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수처리제 검사기관 및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9.25.>

②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 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3항 및 제8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바이러스 및 원생동물검사 분야는 제외한다)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연구소·수질검사소

⑤ 보건소와 시·군·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8.9.25.>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가목(1)·(2), 나목(1)·(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
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칙에 따른 검사하므로 한정하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⑦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검사기관의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검사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
3. 검사기관의 대표자
4.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⑧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08.9.25.>

⑨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품질검사에 필요한 적정한 기술인력과 검사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나) 제재요건

먹는물관리법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⑥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7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제7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제39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2항, 법 제35조제3항, 법 제43조제9항 및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8.9.25.>

3. 환경

가. 악취

- (1) 소관부처 : 환경부
- (2) 근거규정 : 악취방지법
- (3) 지정요건 : 법 제17조, 제18조, 시행규칙 제15조
- (4) 제재요건 : 법 제19조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악취방지법

제17조(보고·검사 등)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 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제1항에 따

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18조(악취검사기관)

① 제17조에 따라 채취된 시료의 악취검사를 하는 악취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화학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절차,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2.1.]

(나) 제재요건

악취방지법

제19조(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나. 유해화학물질

- (1) 소관부처 : 환경부
- (2) 근거규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 (4) 제재요건 : 법 제14조의2, 제16조

- (5) 근거규정예시

- (가) 지정요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령

경하려면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④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 지정의 기준과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연구기관)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등)

-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해성심사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시설 현황 명세서와 운영 현황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시험 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제재요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4.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5. 지정받은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에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
2.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

④ 제2항에 따라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항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27.]

제16조(신규화학물질의 판매 등의 중지)

- ① 환경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판매나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제조자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후에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다. 자원

- (1) 소관부처 : 환경부
- (2) 근거규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3) 지정요건 : 법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20조의4
- (4) 제재요건 : 법 제25조의4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품질·등급의 유지·관리, 제조·저장·사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③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절차, 품질·등급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4.7.]

(나) 제재요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인증의 취소)

- ①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품질·등급을 준수하는 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공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유통중인 고형연료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③ 인증기관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품질·등급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형연료제품을 제조·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검사결과 3회 이상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8.3.]

라. 대기환경

(1) 소관부처 : 환경부

(2) 근거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3) 지정요건 : 법 제74조, 제74조의2, 시행규칙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3조의2

(4) 제재요건 : 법 제74조의3, 법 제75조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개정 2008.12.31.>)

①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 제1항 제9호 제89조 제9호 및 제91조 제10호에서

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12.31.>

-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
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제조·공급
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 ④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
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⑤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12.31.>

- ⑦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74조의2 (검사업무의 대행)

-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7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 ③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122조(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7호서식의 자동차연료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제123조(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4.>

제123조의2(총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총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총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 규정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제1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1호서식의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14.]

(나) 제재요건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12.31.]

제75조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공급·판매중지 <개정 2008.12.31.>)

-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②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

4. 보건

가. 공중위생

- (1) 소관부처 : 보건복지가족부
- (2) 근거규정 : 공중위생관리법
- (3) 지정요건 : 법 제9조, 시행규칙 제15조
- (4) 제재요건 : 법 제9조의2
- (5) 근거규정예시

(가) 지정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의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공중위생영업소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거증을 공중위생영업자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1의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 험·검사기관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전문개정 2003.6.7.]

(나) 제재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나. 식품위생

- (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2) 근거규정 : 식품위생법
- (3) 지정요건 :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4) 제재요건 :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
- (5) 근거규정 예시
 (가) 지정요건

식품위생법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 ①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이하 "식품위생검사"라 한다)를 행하는 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사 업무범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제19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2. 자가풀질위탁검사기관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과 식품위생검사기 관의 지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3조(식품위생검사기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 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3.19.>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수산물의 검사에 한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능력의 측정 및 평가는 표준 시료(검사기관의 검 사능력평가를 목적으로 제조되어 검사능력관리 대상기관에 제공되는 시료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 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검사실 평면도
2. 검사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 내용
3.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 종류별 검사기간
2. 검사의 절차와 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
3.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에 관한 사항
4. 검사증명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검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검사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시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제재요건

식품위생법

제2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식품위생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7조(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다. 실종아동보호

- (1)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2) 근거규정 :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3) 지정요건 : 법 제11조, 시행령 제5조
- (4) 제재요건 : 법 제12조
- (5) 근거규정 예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과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 ②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및 유전자검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의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인 때에는 본인 외에 법

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는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나) 제재요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연구결과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간 인증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분야	방송통신분야 시험인증제도				
연구구분					
연구책임자1	소속	중앙대학교	직위 · 직급	전임교수	성명 이용규
연구책임자2	소속		직위 · 직급		성명
연구기간	2011. 04. 11. - 2011. 11. 25.				
주요활용 분야	전파법의 제도 개선, 아세안 국가 인증제도 분석 및 새로운 인정기구 설립				
국내외 공업소유권	구분	명칭	출원일	등록일	기타
학술지발표 현황	구분	학술지명	신청일	게재일	기타
타 연구로 활용계획					
기타활용 계획					

방송통신분야 아세안 국가간
인증협력에 관한 연구



140-84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원효로41길 29

발행일 : 2010. 11

발행인 : 임차식

발행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전화 : 02) 710-6664

인쇄 : 신성인쇄소

Tel. 02) 814-7655

ISBN : 978-89-93720-92-1 < 비매품 >